

현장에서 바라본 언론의 법적 환경 변화

이 희 용

연합뉴스 대중문화팀 차장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
□ 세계일보 종합교양부·생활부 기자
연합뉴스 문화부·여론매체부 기자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신문들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대에 접어들었다. 80년대 언론기본법 시대에서 90년대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 시대를 거쳐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시대를 맞은 것이다.

이번에 발효된 언론관계법은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오랜 논란 끝에 올해 1월 1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도 해보기 전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가 하면 발효를 전후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잇따라 개정안 발의에 나서는 등 제정과정 못지않게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입법 배경과 과정, 이를 둘러싼 정치적 시비와 법적 논란은 이미 여러 언론보도와 논문 등을 통해 비교적 소상히 알려졌다. 그러나 법 시행과 함께 언론

환경이나 관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일선 언론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 글에서는 언론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일선 언론인들이 법적 환경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언론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점쳐본다.

II. 언론중재법

1. 언론중재법이 주목을 끌지 못했던 까닭

언론들은 신문법에 대해서는 과열됐다 싶을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여 왔으나¹⁾ 언론중재법에는 무심하다 싶을 정도로 '외면'해왔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고 보도 가치도 크지 않다고

1) 아마도 '국가보안법'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치고 최근 몇 년 사이 신문 지면에 가장 많이 등장한 법률이 아닐까 싶다.

중재제도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
그러나 새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인해
언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돼

판단했을지는 모르나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신문법에 비해 훨씬 실생활과 밀착된 법률이다. 만일 신문들이 피해구제 절차가 쉬워지고 대상도 넓어진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언론중재법 제정의 명분을 확인시켜주는 일일 것이다. 혹시 피해자의 인격권을 존중하지 않았던 '원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어 잠자코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언론인들은 신문법 제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논조와 입장을 떠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지녀온 것으로 짐작된다. 처음에는 일련의 언론개혁 정책을 언론자유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언론들까지도 인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지 않았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언론에 미칠 파장이 알려지자 그동안 언론이 부려온 횡포를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해온 기자나 신문들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단지 불편해졌다거나 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취재의 의욕이 위축돼 감시 기능이 크게 약화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²⁾는 한동안 일부에서만 거론돼 메아리를 울리지 못하다가 시행령 제정 작업까지 모두 끝난 뒤에서야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신문협회도 발효 직후 회원사 관계자들을 불러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대처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현업 언론인 단체나 관련 학자들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속속 내놓고 있다.

1980년 언론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정식 재판절차

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반론보도 등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언론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 부담이 늘어난 것일 수 있겠으나 유죄나 패소 판결 혹은 손해배상 등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전에 피해자와 화해와 조정의 여과장치를 거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왔다. 중재위원의 상당수가 언론인이거나 언론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이어서 비교적 언론의 취재 보도 관행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거부감을 줄이는 데 한 몫했다.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기되면서도 언론중재제도가 정간법과 방송법 등에 분산 유지돼왔고, 이번에 단일법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언론계가 언론중재제도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을 제정하면서 언론의 취재 보도 현실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구제에만 초점을 맞춘 듯한 일부 조항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우려가 생겨나게 됐다. 신청절차가 간편해져 언론중재 신청이 남발되지 않을까, 전치주의가 폐기돼 조정 기능은 약해지고 소송이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겨나지는 않을까, 제3자가 시정권고 조항을 의도적인 흠집내기로 악용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등의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2.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무게

서울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지낸 윤재윤 서울

2) 언론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진영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반개혁적 움직임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했다.

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저서 「언론분쟁과 법」에서 “기자는 사건의 맨 앞에 한 다리를 들고 불안하게 서 있고 법관은 사건의 맨 뒤에 골치가 아파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다”고 표현했다. 언론보도는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드러난 최소의 불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실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 법관에 비해 숙명적으로 매우 불행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엄격한 증거만으로 재판을 하는 법관의 눈에는 ‘야생마’이자 ‘모험가’로 비치지만 이러한 언론 보도 없이 사회가 존립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일찍이 언론보도의 공익성과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을 세워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1988년 10월 11일 대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³⁾ 즉 공공성과 함께 진실성이나 상당성이 있으면 면책되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제5조는 “언론은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뤄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여기서 인격권을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

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진실성과 상당성에 대한 규정은 없이 피해자의 동의와 공익상 필요만으로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인격권을 명예뿐 아니라 상당히 폭넓게 정의하는 반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중대한’이나 ‘부득이하게’ 등의 표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격권 보호를 지나치게 앞세움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기우가 아니다. 이제는 계절 변화에 맞춰 거리를 오가는 시민의 표정을 담은 사진도 일일이 동의를 얻고 난 뒤에 실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멘소리가 나온다.⁴⁾ 이런 사진이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하게’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안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더욱 걱정스런 대목은 권력을 지닌 공인에 대해서도 취재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공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례가 확립돼 있고 법원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은 한계가 모호해 인격권 보호 논리가 힘을 얻을 경우 취재를 지레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지도 모른다.

3. 정정보도 청구권 확대가 지닌 위험성

언론중재법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정보도 청구권을 대폭 확대한 점. 종래에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때 손해의 배상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며”(제14조 제2항),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를

3) 대법원 1988.10.11. 85다카29 판결.

4) 미리 동의를 얻으면 자연스런 사진을 찍기가 어렵다.

새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 및 시정권고 조항은 언론 활동에 부담줄 수 있어

제기할 때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6조 제4항)고 규정해 별개의 권리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제14조 제1항)라면 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합법적인 보도”, 즉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보도라도 잘못된 보도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위헌 논란이 빚어지는 대목의 하나도 바로 이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 청구권은 그 자체가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도구인 것일 뿐 진실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합헌을 선언했다.⁵⁾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반론보도 청구권과 다르게 ‘진실을 발견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정정보도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독자적인 편집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26조 제6항에서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 제기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27조 제1항은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잘못된 보도를 신속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뒤늦게 정정보도를 해도 피해구제의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판단을 내려도 오판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터에 신속한 피해구제에만 초점을 맞춰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언론으로서의 역울한 일을 당하기 십상이다.

실제로도 각종 권력형 비리나 의혹사건의 진실은 정권이 바뀐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건이 보도된 뒤 핵심 관계자들이 진실을 은폐한 채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할 때 언론이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정정보도를 해야 할 일이 줄을 이을지도 모른다.

4. 시정권고 남발되면 언론사 이미지 실추

가장 위헌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언론사로서도 가장 부담스런 대목이 시정권고 조항이다.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으며 제2항은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비록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기는(제32조 제4항) 하지만 중재위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어(제32조 제5항) 신뢰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는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3항은 중재위가 시정권고 기준을 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발표된 규정에는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

5) 헌법재판소 1991.9.16. 89헌마165. 판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지 ▲범죄사건 보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유괴사건 보도 ▲범죄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보도 ▲마약 및 약물보도 ▲폭력묘사 ▲충격·혐오감 ▲재판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국가기밀 누설금지 등 대부분 수긍할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언론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과 풍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구석이 많고 일선 언론인에 대한 교육도 부족해 보인다. 피해자가 일일이 구제를 청구하기 이전에 언론 스스로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나 신문윤리강령 등에 이미 마련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3자가 방송위원회나 신문윤리위원회 등에 불만처리 형태로 제기할 수도 있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방송법이나 자율심의 조직을 통해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옥상옥 식의 기준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사법기관으로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중재위가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언론 현실에서는 보호해야 할 법익과 보도를 통해 이루려는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헌법이 사생활 보호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때는 예외로 인정하는 것처럼, 오로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사회적 법익이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침해당할 수도 있다.

한계가 애매한 표현도 있다. ‘상세히’,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문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표현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많다.

더욱이 특정 시민단체가 특정 언론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시정권고 신청을 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안티조선’ 운동을 하는 단체는 조선일보를 표적으로 삼아, 반복 친미 성향의 보수단체는 한겨레신문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사사건건 문제를 지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5. 언론이 타율 규제 자초한 측면도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중재위에 손해배상 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이뤄진 것이다. 언론중재법 자체에 반대해온 일부 신문은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에 관해 강제조정을 하거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재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표현이다.

중재위의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의 이의신청이 없을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23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결정도 쌍방이 이를 따르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제24조 제1항과 제25조). 이른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동원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적지는 않은 부담이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제30조 제2항에서 ‘법원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액이 이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하고 있다.

새 언론중재법에 대한 '운용의 묘'를
잘 살려 실질적인 약자를 위한
언론피해구제 수단이 되도록 해야

이와 함께 정정보도 청구 시한과 신청인 자격 등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절차가 완화돼 조정·중재신청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제22조 제4항)”는 조항은 언론사 관계자의 법원 출입을 더욱 잦게 만들 것이다.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삭제해 중재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강제성이 없는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다가 시간만 잡아먹는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역시 법원의 언론관련 소송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어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고, 중재위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고충처리인 제도⁶⁾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인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가톨릭대 법학부 박선영 교수도 임의조항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부담을 덜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타율 규제를 자초했다는 반성도 있다.

6. 언론이 신중함을 넘어 소심해진다면

적어도 80년대까지는 써야 할 기사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권력의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더욱 신장돼야 한다는 명제에 ‘감히’ 도전하지 못했다. 90년대 들면서 언론을 짓눌러온 권력의 족쇄가 사실상 풀리고 개인의 권리의식도 높아지면서 언론도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결과 언론중재법 탄생으로 빛을 본 것이다.

사실 그동안 언론은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힘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횡포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해왔다. 한번이라도 언론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를 구제받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절감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통명스런 반응에 기분이 상한 것은 보통이고 “앞으로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은근한 협박까지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기업이나 연예인 등은 언론과 사이가 틀어지면 상당한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

반대로 한번이라도 소송에 시달려 본 언론인들은 기사를 다 쓴 뒤 마침표를 찍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중재법은 지금의 언론 환경을 개선하고 취재 보도 관행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힘없는 개인이 아니라 힘 있는 권력집단 - 정치권력이 됐든 자본권력이 됐든 사회권력이 됐든 종교권력이 됐든 - 이 진일보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라 하더라도 법에 보

6) 언론중재법 제6조 제1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장된 피해구제 수단을 활용할 권리가 있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으로 남용한다면 언론중재법의 제정 취지를 빗바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만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법칙이 여기서도 통한다면 언론인들이 신중함을 넘어서 소심해지거나 비겁해지는, 그래서 언론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비판의 기능마저도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새 중재위에 운용의 묘를 간절하게 바라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Ⅲ. 신 문 법

1. 국제적 시빗거리로 떠오른 신문법

언론중재법과 함께 발효된 신문법은 국제적으로도 시빗거리로 떠올라 있다. 2001년 초 언론사 세무조사를 계기로 정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부터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WAN) 등이 꾸준히 반대 움직임을 보여왔고 지난 5월 30일 WAN 서울총회 때는 외국 언론인과 국내 정부 요인이 공방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개막식에서 환영사에 나선 계빈 오라일리 회장 대행⁷⁾은 “한국은 아직도 완벽하게 언론 자유를 얻지 못했다”며 신문법을 장애물로 지목했다. 이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언론 권력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은 더욱 컸다.

한국 정부와 세계 언론인들의 시각 차이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세계편집인협회(WEF) 회원들과 가진 오찬에서도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신문 발행부

수를 제한해 독자의 선택권을 막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 총리는 “독과점 언론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제한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문법을 둘러싼 갈등은 총회가 끝날 때까지 행사장 안팎에서 계속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성명을 통해 “WAN이 한국의 언론 상황도 모른 채 일부 족벌 언론의 시각을 그대로 담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신문법에 대해 찬반 입장을 보여온 신문과 인터넷 매체들도 지면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간법을 개정한 신문법의 골자는 ▲인터넷 신문 등록 규정 마련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1개사 30%, 3개사 60%로 강화. 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개사 50%, 3개사 75%)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 조항 신설 ▲신문발전기금 조성 등.

당초 여당은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해 신문사주의 지분 제한 규정을 법안에 담으려다가 철회한 데 이어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을 전국 발행부수로 완화하고 편집위와 편집규약도 임의규정으로 바꾼 뒤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을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은 “개혁성이 실종된 누더기 법”이라고 비난한 반면 조선·동아일보 등은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악법”이라고 공박하며 위헌 소송까지 제기해놓았다.

이러한 공방은 신문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도 재현됐다. 문화관광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과 편집위 구성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안을 5월 9일 확정하자, 이른바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입법과정에서 야당과 학자들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해 여당이 거둬들인 문제 조항을 되살려놓았다. 편집위 구성은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왜 정

7) 6월 1일 폐막식에서 회장으로 선임.

신문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막는 것

부가 간섭하는가”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반대로 한겨레신문·언론노조 등은 이에 대해 “언론의 방종을 막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며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하는 한편 신문발전위원의 자격 요건이나 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날 없는 칼’

보수 성향의 신문들과 단체 등이 문제 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독 신문에 관해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찬성 쪽에서는 여론 독과점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신문 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하며 여론 독과점도 전체 매체 시장을 놓고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문시장 구도에서 이 기준에 저촉될 신문은 없다. 제17조에서는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

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 제외) 가운데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 비율’을 따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독과점적 언론으로 지목받고 있는 조·중·동의 비율은 지방지와 전문지 등을 합치면 40% 남짓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은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설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더라도 신문법상 불이익은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제34조 제2항)뿐이다.⁹⁾

따라서 “정당의 지지도나 TV 드라마의 시청률도 높으면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몰아붙이는 일각의 주장이나 “특정 신문의 점유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독자가 신문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는 해외 언론인의 질문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다.

이런 조항을 두자고 한 배경에는 현재 서울에서 발행되는 전국 대상의 종합일간지 가운데 세 개 신문이 7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모두 보수 성향이라는데 있다. 이런 점이 반대로는 특정 신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악법의 근거로 거론되기도 한다.

8) 신문법 제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9) 신문법 제34조 (기금의 용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사업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비록 '날 없는 칼'이 되고는 말았지만 억강부약(抑強扶弱)을 통해 여론 시장의 다양화를 꾀하려는 취지가 비로소 법률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점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안게 됐다.

3. 조·중·동 기금 지원 걸림돌은 제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은 현재 시장구도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데 비해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규정(제33조 및 제34조)¹⁰⁾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신문시장 구도는 물론 전체 미디어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다. 문화부는 시행령 제28조에 ▲독자 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자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해 정기적으로 운용하는 자 ▲상업광고가

정기간행물 등의 연간 평균 발행면의 50%를 넘지 아니하는 자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에 경영투명성·공정성 등 위원회가 정한 우선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을 기금의 우선지원 조건으로 정했다가 일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우선지원 조건을 조·중·동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부에 비판적인 메이저 신문들은 배제하고 친정부적인 마이너 신문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도 하다. 일단 이들이 상대적으로 사주(社主)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광고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1월 미디어오늘이 18일치 지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면 대비 광고란 비율(돌출광고 제외)은 조선(53.52%), 중앙(53.02%), 동아(52.95%), 한겨레(39.20%), 경향(39.11%), 한국(36.45%), 국민(36.26%), 문화(36.17%), 세계(35.18%), 서울(34.12%)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신문개혁을 주장해온 진영에서는 ▲광

10) 신문법 제33조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신문 등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에 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신문법 제3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독자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
3.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4. 언론공익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사업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③위원회는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신문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에 있어 자금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고가 지면의 절반을 넘어서면 광고지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고 ▲여론 다양성을 위해 마이너 신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편집권 독립이나 경영투명성 등 언론개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명분을 들고 있다.

이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경영투명성 등 마지막 조항은 빠지고 나머지 4개 조항 중 하나만 충족하면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제27조)¹¹⁾ 바뀌었다. 이른바 조·중·동도 기금을 지원받는 데 1차적인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다.

4.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얻는 교훈

정부가 신문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정부를 향한 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매체간·신문간 균형을 위해서나 저널리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문에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영상세대의 증가, 인터넷의 확산, 뉴미디어의 등장 등으로 신문산업이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는 인식이 깔려있다.

만일 지원 자체가 대세라면 결국 초점은 신문발전기금 관리·운용을 담당할 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지원대상 심사의 공정성에 모아진다. 현재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신문업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할 수 없지만 일단 2004년 3월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2005년 1월 일부 개정)의 시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듯하다.

지역신문법은 지원 대상으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 ▲광고 비중 50% 이상¹²⁾ ▲한국ABC협회 가입 ▲발행인 등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 등 4가지(제16조)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정한 우선지원 대상 규정은 ▲편집규약 제정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제13조) 등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모범과 시행령 기준을 따진 뒤 ▲소유지분 분산 정도 ▲부채비율 ▲연수사업 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자율강령 준수도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 지난 7월 19일 일간신문 5개, 주간신문 27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역신문발전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때도 두 명의 위원이 물러나는 풍파를 겪었고 지원대상 선정이 끝난 뒤에도 위원장을 포함한 두 위원이 사퇴하는 소동을 빚었다. 문화부가 일간지에 대한 배려 부족과 지역간 형평성을 들어 재심을 요청한 것을 두고 전

11) 신문법 시행령 제27조(기금의 우선지원)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이하 “정기간행물등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자.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용하는 자.
3. 상업광고가 정기간행물등의 연간 평균 발행면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자.

12) 이때는 시행령도 아닌 모범에, 우선지원 대상도 아닌 지원 대상으로 못 박았는데도 조·중·동은 자신들이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문제 삼지 않았다.

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반발했는가 하면 전국지방신문협회는 선정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역신문법 제정을 주도한 신문은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신문이 선정돼 명암이 엇갈리기도 했고, 특정 연대 소속 주간지가 상당수 포함된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곳도 있었다.

어떤 선정결과를 내놓아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첫술에 배가 부를 리도 없겠지만,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지원 관행을 쌓아나간다면 지역신문에 힘을 북돋워주면서도 건전한 언론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우선지원 조건이 완화돼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훨씬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은데다 이념적 성향이나 정부와의 친소관계 등까지 얹혀 정쟁으로 번져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5. 공동배달체제 마련은 신문 산업의 인프라

신문법 제37조의 신문유통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 역시 신문발전기금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이를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신문유통원을 만들면 신문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질을 통한 경쟁이 가능해지며, 독자들도 신문을 비롯한 정기간행물을 골라서 받아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과전에서 공동배달제 시범사업을 펼쳤다가 쓴 잔을 마셨던 마이너 신문사들은 초기 자본이 없으면 전국 단위의 공동배달사업이 조기에 정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반대 진영도 신문유통원 설립의 취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예산과 인사권을 지닌 기구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중·동 입장에서 볼 때 수십 년 동안 투자와 관리를 통해 쌓아올린 배달망의 비교우위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도 깔려 있다.

그러나 조·중·동도 지국별로 위탁 계약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배달 원가를 건지기가 힘들어 공동배달체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광고와 구독료 수입이 보통 8대2 정도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신문사 입장에서는 뉴미디어의 잇따른 등장으로 광고시장의 몫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독료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기사에 미치는 광고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터넷과 무료신문 등에 뉴스가 넘쳐나는 마당에, 유료방송·휴대폰·인터넷 등 정보이용료는 갈수록 치솟고 있는 터에 신문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무가치나 경품을 받아가며 신문을 봐온 독자들을 설득시키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배달 원가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안정적인 정기구독자를 확보해야 하는 주·월간지 역시 마찬가지다.

신문유통원이 신문을 비롯한 오프라인 정기간행물 산업의 인프라로 자리 잡는 것은 저널리즘의 장래와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설립돼 운영되느냐에 따라 신문 산업의 촉매가 될 수도, 신문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벌써부터 공동배달제에 참여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문화부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금액 규모를 놓고 반목이 불거지고 있다.

국고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조

바람직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언론관계법 논의가 되도록 해야

기에 안정적인 수지구조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배달망이 취약한 시·군 단위부터 시작하는 것도 조·중·동의 참여를 유도해 갈등을 줄이고 공적 자금의 투입 명분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IV. 맺음말 - 언론법 개정 논의의 틀을 바꾸자

비록 제정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통과 이후에도 찬반 양쪽 진영에서 비판을 받으며 제대로 시행도 해보

지 못한 채 위헌 시비와 재개정 논의에 휩싸여 있기는 하지만 신문법이 발효된 것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이제는 신문도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 자유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게 됐다. 신문법 제4조는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신문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힘쓸 것을 명시하고 있다.¹³⁾ 사회적 책임 이론과 시민단체의 요구 등을 반영한 것이다.

독자권익위원회(제9조)와 편집위원회(제18조)¹⁴⁾ 설치를 명문화한 것은 임의조항이어서 당장 신문사

13) 신문법 제4조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

- 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여야 한다.
- ④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신문법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

일반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문법 제18조 (편집위원회 등)

- ①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편집위원회는 일반일간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편집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의 구성·권한·조직·위원의 임기·신분보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편집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4.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5.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6.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7. 편집·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8.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편집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독자권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독자의 권익보호, 독자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법 제정 이전에도 일부 신문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다. 법 조항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앞으로 언론사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법은 신문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대신 지원 대상으로서의 성격도 분명히 했다. 법의 이름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지만 세부 조항들을 보면 '출판진흥법', '영화진흥법', '뉴스통신진흥법', '지역신문발전지원법' 등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산업 진흥 차원에서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물론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정간법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도로 신문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인터넷 신문이 뒤늦게나마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매체의 역동적인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범(汎) 규범으로서 얼마나 효용을 가질지 걱정되기도 한다. 이미 신문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놓고 논란을 벌였고, 최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뉴스에 대해 6시간 이내에 반론권을 수용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¹⁵⁾

법률이 담고 있는 정신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미디어 빅뱅'으로 표현되는 융합과 변혁의 시대를 규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언론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는 물론 관련 이해당사자들까지도 수용자의 권익이나 미디어산업의 진흥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법령 개정이 늦어져 시대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정당한 타협의 산물로 어정쩡한 조항들이 뒤섞여 있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의 거울이자 목탁이어야 할 언론이 그나마 시대적 추세나 수용자 요구에 뒤처지는 언론 관련법의 변화 흐름마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언론은 언론을 둘러싼 법적 환경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한다.

이제 앞으로의 언론 관련법 논의도 소속사의 이해관계나 이념적 성향에만 매달려 해묵은 공방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

15) 일명 '그린박스' 제도. 그린박스는 인터넷 보도의 대상자가 원할 경우,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내용 보완', '경위 해명', '사과', '오류 정정' 등의 내용을 담은 당사자의 이메일 소명문을 기사와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소명문 게재를 요청받은 인터넷 언론사는 이로부터 6시간 이내에 소명문을 게재해야하며 소명문의 게재 위치는 기사 본문과 기사 하단 네티즌 댓글 사이에 박스 형태로 삽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관련 기사에 소명문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라 그 기사가 공급된 타 인터넷 매체(포털사이트 등)에도 동일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언론관계법의 언론 자유 침해 논란 고찰

김 병 국
원광대 신방과 교수

- ☐ 서울법대 및 동 대학원
문학박사(언론학)
- ☐ 교육개혁위원 역임
- ☐ 논문: 『반론권제도의 언론 제도적
특성 연구』, 『언론사상과 사회를
보는 눈』, 외 다수

1. 서 론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한 이래, 1987년 6월을 하나의 기점으로 우리 현대사를 구분한다면 그 이전의 민주화는 외형적 틀을 만들어 나가는 성장 위주의 양적 변화, 이후엔 내실을 기해 나가는 질적 변화라 하겠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언론과 권력의 관계가 재편되고 있으며 이것이 언론관계법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논쟁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언론과 법의 관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20세기에 들어와 급격히 발달한 통신기술 등의 발전에 따른 대중사회와 자본주의의 국제화, 정보화 진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언론기업도 거대 독점 집중화되는 현상이 가속되었고 이에 대하여 사회적 법적 대

응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¹⁾

그간 언론과 관련하여 본질적 명제로 여겨져 왔던 언론자유 문제만 하여도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법이 어떤 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제도화하느냐에 달려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보는 기본 시각도 그 시대적, 상황적 현실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즉, 고전적인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언론 출판활동에 대한 억압, 검열 허가제의 철폐 등을 주장한 이른바 국가권력의 간섭과 억제로부터의 자유보장을 의미하였으나, 대중매체가 양적·질적 면에서 급격히 발달하면서 언론의 자유문제는 단순히 '국가권력(정부) 대(對) 국민'이라는 양분적인 긴장관계로 논의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론 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이른바 '정부·국민·언론' 3자의 역할분담 문제로 발전한 것이다.²⁾

미국의 경우 언론자유에 관한 논의는 1910년대 말

1) William, E. Francois(1986). *Mass Media Law and Regulation*, Columbus, Ohio:Grid, p.585.

2) 堀部政男(1977), 『アクセス權』, 東京:東京大學出版會, p.34.

부터 헌법규정을 둘러싸고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1960년대까지는 2극 구조적 사상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언론의 자유방임의 논거인 '사상의 자유시장론'은 1913년 '에이브람스 對 미합중국 사건 (Abrams V. U. S.)'에서 Oliver Wensell Holmes 판사가 소수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사상의 자유시장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J. Milton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였다.³⁾

그러나 자본주의가 진행돼 나감에 따라 미디어는 대규모, 독점화 현상을 강하게 나타내었고, 국민 대다수는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되어 정보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는 2개의 계층으로 양분되어, 이는 마치 양자 간에는 오늘날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처럼 사실상 신분관계가 고착되어 입장의 변환은 없어져 가게 되었다. Barron은 "매스미디어의 발달이 '미디어 경영가' (media manager)라는 새로운 계급을 낳게 했으며, 그리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주로 그들만의 독점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⁴⁾

그런데 Barron이 지적한 이런 현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 하의 모든 국가의 일반적인 문제로 오늘날 새로운 언론규범에 대한 당위적인 요청이 있게 되며 법과 언론의 관계는 더욱 복잡적 양상이 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언론은 권력과 협조·갈등의 불연속적 반복이면서도 대체로 공생적 관계였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언론의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더니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언론의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그해 8월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결성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그 후 참여정부가 들어서자 방송까지 언론전쟁에 적극 개입하면서 모든 언론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사생결단식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변화하는 언론 상황에 맞는 실용적이고 살아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언론관계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새삼스레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적 논쟁이 되었으며 언론관계법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복합적 상황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헌법상 전통적인 언론자유의 이념을 전제하면서도 오늘날 언론의 사회적 성격이 <정치권력→언론→수용자 개인>으로 중심축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언론제도의 배경이 되어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철학의 변화를 전통적 자유주의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사용되는 사회적 책임이란 말은 용어적 측면에서는 현대적인 표현이지만, 'Four Theories of The Press' (Fred S. Siebert et al)의 후속판이라고 할 수 있는 'Last Rights'의 다음과 같은 구절⁵⁾에서와 같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미 Platon이나 Aristoteles는 물론이고 자유주의 이론의 주창자로서 인간의 이성을 전제로 한 Millton이나 공리주의 입장의 J. S. Mill의 저작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책임있는 행위는 자유방임 체제 내(內)-다시 말해 '프레스의 4이론'에서 개념 규정한 자유주의 이론

3) 팽원순(1990), 『매스커뮤니케이션 法制理論』, 서울:법문사, pp.109~111.

4) J. A. Barron(1973), *Freedom of the Press for Whom? The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Bloomington, Ind.:Indiana Univ. Press, p.5.

5) John C. Nerone(1995), *Last Rights, Revisting Four Theories of The press*, Urbana, Ill, Univ. of Illinois Press, pp.121~2.

언론을 각기 자기식의 개혁을 위한 도구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하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거시적 차원에서는 어떠한가. 물론 사회적 책임 이론은 이런 차원에서 주장되는 것으로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매체가 교육자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매체 자원에 대한 어떤 감독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구조적 변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구조적 변화(정부의 규제를 포함하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적 책임이론의 전망과 위험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는 이 개념에서의 필연적인 막연성 때문이다.”

새로이 시행되는 언론관계법들에 대해서는 언론을 각기 자기류의 개혁을 위한 도구적 차원의 시각에서 벗어나, 위와 같이 모든 개념은 실제 적용하는 데는 막연하고 포괄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학문적 차원으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언론관계법과 헌법적 논란

민주적 여론 형성, 언론의 투명성 확보, 언론의 건전한 발달과 질 제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제시하며 금년 7월 28일부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문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2004년에 제정된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과 함께 헌법상 언론자유 해석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언론자유와 관련,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신문법 제17조(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인데, 이는 특정신문의 비판적 언론활

동을 위축시키고 친(親) 정부적 신문을 키우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시장경제 원칙과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부정하는 언론통제법이라며 비판받기도 한다. 또한 신문사마다 독자권익위원회가 신설되고 신문사 바깥에는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이 만들어지며 신문발전기금이 조성되는 것도 큰 변화다. 일간 신문사들은 독자위원회를 두고 매달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독자들의 의견을 지면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각 신문사마다 노사협의 하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신문유통구조 개선, 구독료 지원 사업, 독자권익 보호와 언론공익 사업 등을 하는 문화부 유관기관으로 신문사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 및 광고수입 등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받고 검증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 구성을 보면 문화부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신문시장에 개입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

언론평해구제법의 경우 정정보도의 요건으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정정보도 소송제기 후 3개월 안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개월 만에 언론의 보도를 사실상 취소하는 정정보도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켜 권력비리에 대한 추적보도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중재위는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및 타인의 법익 침해 사항에 대해 광범위하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또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게 하였는바 특정목적 가진 단체들이 특정신문의 논조나 보도를 문제 삼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어 악용이 우려된다. 신문사와 방송사, 뉴스통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고충처리인을 두고 언론보도에 의한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 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업무와 자문 권고 등의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언론도 신문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신문·방송·통신사는 고충처리 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아예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개념조차 있지 않아 책임을 묻는 정도가 약해 특혜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현재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1항)와 평등권(제11조 1항)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두 법에 대한 위헌심사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개정안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삭제했으며 신문발전 위원회의 지위를 문화관광부 산하에서 재단법인으로 독립시켰고 일부 신문의 공동배달을 지원하기 위한 신문유통원 설치에 대한 조항도 없었다.

그러나 원래 신문법 개정은 거대 중앙일간지에 대한 신문시장의 실패를 방지하여 다양한 신문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언론피해구제법은 신문·방송 등에 의한 개인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법 자체가 정치·사회적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도 법 자체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예컨대, 인터넷 언론 특혜시비의 경우 오늘날 언론매체에서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며 타매체가 계속 등장하는바 신문에 의한 여론 독점 문제만을 규제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 이외에 이들 매체들의 정치적 편향성

으로 인해 법조항들의 불공정 논의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논란은 실은 법 적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보수와 진보 간의 논쟁으로까지 비화하여 근본적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바 단지 몇몇 법조항의 해석과 비판 문제 이상으로 헌법상 언론자유와 언론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신문 집중화가 언론자유와 다양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가 신문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그 조사보고서(1968)는 단일 기업에 의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20%이상이면 언론자유와 위함이, 40%이상이면 침해가 있다며 신문사간 격차 시정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신문발간지원, 시장의 평준화 도모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슈프링거 신문재벌은 신문의 자유는 일반법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헌법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되 그 정보원의 수에 관해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반론하였다. 그러나 그 보고 뒤에 신문 이외의 시장지배적인 수 개의 대규모 잡지들을 매각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반독점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허용하면서까지 공동운영협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보호법이 1970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소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언론의 독과점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즉 신문 산업은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한 것이자 다양한 의견이 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개입의 방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대도시에서 일간지들이 계속 문을 닫았는바(1970년 1,748개에서 2001년 1,468개로 감소)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⁶⁾ 즉 위와 같이 신문 집중화가 언론의 다양성을 해친다며 언론자유해석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6) 권재웅(2003). 미국의 언론시장에 대한 법제와 정책. 「세계의 언론법제(상권)」. 한국언론재단. pp.164~5.

**언론자유와 본질과 목적을
자유주의적 관점의 유용성과 한계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쟁점 언론관계법 조항을 이와 대비해야**

대응은 다른 방식이었다. 독일은 법적 개입이전에 어느 정도 자율적 조정이 있었지만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고, 미국은 법으로 지원을 유도하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는 언론자유 현실과 법적 적용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우리의 경우 정치·사회적 개혁과 연결되면서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되어 헌법학이나 언론학에서 이미 고전적 주제가 된 언론자유와 본질과 목적을 자유주의적 관점의 유용성과 한계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쟁점적 언론법 조항을 이와 대비하여야 한다.

3. 언론자유와 본질 및 이론적 고찰

현행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런 헌법상 기본명제가 언론의 실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는 간단할 수 없다. 예컨대 Merrill은 인간은 우리 자신의 양심에 지워진 임무를 결코 모든 사람에게 지워진 임무로 전가시킬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언론의 자유도 언론을 접하는 일반 국민들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과 언론인의 자유라고 주장한다.⁷⁾ 그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언론사의 과도한 조직화, 제도화 그리고 대중지향성은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위협요소이며, 기사를 글 쓰는 기계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중지향성에 대한 그의 입장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주장이 개

인의 상실을 가져오며, 기자들이 다수의 대중을 만족시키는데 치중하다 보면 기자 자신의 자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즉 Merrill은 언론인들이 자율과 자기존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적응과 협력을 피해야 하며, 오직 자신이 스스로 규정한 도덕적 의무에 따라 행위할 때 언론의 자유는 완성된다는 철저한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국민이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동일한 액세스(access)권과 참여권을 갖는다면 매체는 아무런 것도 달성할 수 없게 되며 매체는 여론과 대중의 노예로 전락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만민완전균일사상(egalitarianism)은 불가능한 개념이며 그것은 실익은 없고 언론자유에 해독만 끼칠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⁸⁾

용어상 '자유'와 '언론자유'는 하나의 개념일 수 있지만, 가치관이 개입된 철학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는 거의 상반된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부가되며 사회변혁의 동인이 되기도 한다. 어원상으로도 자유의 다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바 '자유'라는 말을 할 때 흔히 'freedom'과 'liberty'라는 말을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Berlin의 지적처럼 'liberty'는 '구속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소극적 자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freedom'은 '행위자로서 어떤 일을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자유' 개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⁹⁾

7) John C. Merrill(1974), *The Imperative of Freedom : A Philosophy of Journalistic Autonomy*, N.Y.:Hastings House, 특히 2장 참조.

8) John C. Merrill, 앞의 책, p.68.

9) Isaiah Berlin(1958), *Two Concepts of Liberty*, London:Oxford Univ. Press, p.37.

분명 헌법의 표현대로 언론은 자유로운 존재이어야 한다. 이는 언론이 국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보와 의견교환을 방해하는 어떤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자유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든 언론이 전체 공동체를 위한 기본질서로서 국가·사회적으로 근본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헌법 체계내의 사회적 제도로서 언론은 그 제도적 원리를 헌법상 원칙인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야만 한다. 또한 이런 전제 하에 언론은 국민의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이러한 임무는 국가권력에 의해서는 수행될 수 없으며 또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되며 사회·경제적 원칙에 따라 자유경쟁 관계 속에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자유언론제도로 보장받는 것이다. 언론 자유에의 근거로 진리 발견, 자아실현, 민주주의로부터의 주장 등의 범주로 나눌 수도 있지만 19세기 중반 Mill의 〈자유론〉으로 이어지는 이 진리발견의 관점¹⁰⁾은 이후 미국의 언론관계 판례를 통해 언론자유에의 이론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한 대표적 판례로 ‘Abrams vs. U.S.’ (1919) 사건에서 Holmes 판사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며, 그것들은 ‘시장에서의 경쟁’ 속에서 검증될 때 신뢰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미국 헌법이론이 함축하는 것이다”라는 소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리발견의 수단으로서 언론자유에의 정당성을 법률 속에 구체화시켰다.¹¹⁾

그러나 오늘날 개인의 이성적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개인의 표현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리라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표현권을 위임받은 소수의 언론인들 간의 ‘합의’ 일수도 있다. 그 결과 일반 개인들은 사건 자체로부터는 물론 그 사건의 진실로부터 더욱더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헌법적 이상인 사상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표현물의 자유시장이 점점 독과점화 되면서 매체를 소유 통제하는 특정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장시켰고 반대로 수용자라고 하는 또 다른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억압하게 되어 개인적 이익과의 충돌이 빚어지게 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회라는 언론환경에 있어서도 더욱 그러하다. 정보화사회에서의 언론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보아왔지만 정보화사회도 경제적이든 인종적이든 성적이든 간에 기존의 불평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보상의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¹²⁾

따라서 이제 언론의 자유는 새로운 관점에서 공익에의 봉사 또는 공적 책임 등을 떠맡아야만 하게 되었다고 M. Gourinat는 지적하는바 공적 책임 또는 공익지향 감정은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는 이성적인 숙고에 달려있지만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은 행위의 책임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대한 묘사는 서로 대립된 요소

10) 밀은 〈자유론〉에서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한 사람만이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인류에겐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킬 권리가 없으며, 반대로 가령 한 사람이 인류를 침묵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에겐 인류를 침묵시키는 권리는 없는 것 같다 ...”

11) 강상현, 윤영철 공역, 앞의 책, p.47.

12) John C. Nerone, 앞의 책, p.180.

언론에 대한 불공정 의식 문제는
사회 전반적 제도 개편 요구와 맞물려
민주적 참여 미디어 이론까지 등장시켜

간의 모순을 지니고 있다.¹³⁾

실제 오늘날 언론자유 관념을 보는 법적·철학적 시각의 범위차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도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낭만적인 관념 때문에 생겼지만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상의 자유 공개시장(open market place of idea) - 자동 조절되는 - 에 대한 신념은 남아있으며 신기하고 인기 없는 사상이 토론의 자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적 개입이 요청될 정도로 사정은 바뀌었다”¹⁴⁾고 한다. 따라서 자연법적으로 볼 때에도 공공의 이익에 해를 미치는 언론의 자유는 통제하지 않을 수 없고 사생활의 이익과 충돌할 때는 언론행위 자체가 재판에 회부되어 법관의 판결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언론 현실에 대한 이러한 분석이나 Barron의 액세스권 주장이 아니더라도 실제 오늘날 표현의 자유는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어버렸으며 또한 사회 일반에서도 이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Cassierer는 “신문, 영화 그리고 무엇보다 라디오와 TV방송은 모두 중심의 몇 곳에서 제작되어 주변(periphery)으로 배포”되며 “대중은 ‘소비자’ 또는 ‘표적관중(target audience)’으로만 파악”되고 “그들 수신자의 반응(response)은 오직 양적인 시청

자수, 독자수로만 파악될 뿐”이라고 비난하고 “이들 매체는 정보와 오락의 매체일 뿐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와는 동떨어져 있고 권위주의적 하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선전도구로서만 기능”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¹⁵⁾

그리하여 언론의 이러한 불공정 의식의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제도개편 요구와 맞물려 민주적 참여 미디어 이론까지 등장시켰다. 이 이론이 제기된 첫째 요인은 사유 미디어의 상업화와 독점화 그리고 사회책임이론의 규범에 따라 설립된 공영방송제도의 중앙집권화와 관료화에 대한 반발이라 하겠는데 McQuail은 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¹⁶⁾

- 개개의 시민들과 소수 집단들은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 즉 커뮤니케이트 할 권리와 그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미디어로부터 봉사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소규모이고 상호작용적이며 참여적인 미디어 형태가 대규모이고 일방향이면서도 전문화된 미디어보다 좋다.
- 커뮤니케이션은 너무나 중요해서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등

과거에 예상치 못한 언론 상황에서 새로이 공정성과 형평의 원칙을 기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헌법

13) Michel Gourinat, *De la Philosophie*, 송영진 역(1986), 『철학의 단계적 이해』, 서울:서광사, pp.210~3.

14) J. A. Barron, *Access to the Press : A New Concept of the First Amendment*; 팽원순(1990), 『메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서울:법문사, pp.110~2, 재인용.

15) Henry R. Cassierer, “It’s a Long Way to Communication” in L. S. Harms and Jim Richstad, *Evolving Perspectives on the Right to Communicate*, pp.53~64.; 추광영, 앞의 논문, p.455, 재인용.

16) Denis McQuail, *Mass Communication Theory - An Introduction*, 오진환 역(1990), 『메스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나남, pp.152~3.

상 언론자유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 의한 것이라 하겠지만 고전적 언론자유 개념이나 본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언론자유시장론과 현황

전통적으로 신문은 방송 등과 달리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중시하였으며 시장에서도 폭넓은 자유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동일 신문계 내에서는 물론 타 매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적자생존과 소유의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다. 우리 언론시장의 문제점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지방지 시장은 이미 약탈적 시장임이 드러나 있고(장호순, 2003), 중앙일간지 시장도 지난 10여 년간 마찬가지로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메이저 신문들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불공정행위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정연구, 1999). 발행부수 전체의 약 50% 정도가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해 뿌려지는 무가지라고 하면 시장은 파행적인 것이다. 더욱이 정권의 비호 아래 광고시장을 포획했던 한국 신문에 있어서 광고 단가는 광고주인 기업이 결정하기보다, 지면을 파는 언론사가 결정해 왔고,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광고주인 기업이 부분적으로 매체를 선택하고 광고단가를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상철(2002)에 따르면 한국 신문의 광고단가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뉴욕타임즈 전면컬러광고가 2만 8천 달러, 월스트리트가 약 1만 달러 수준인데, 한국 주요 일간지들은 7750만 원이라고 한다. 한편 방송시장은 국가의 후

견 아래 방송광고공사를 통해 광고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획득했던 두 공영방송사는 시장에서 안정적 위치를 확보했다. 여기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문제가 방송 3사의 시장지배와 관련해서 외주제작 문제와 케이블 및 위성방송 시장진출 문제이다.(윤석민·장하용, 2002)¹⁷⁾

사상의 자유시장론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J. Milton으로부터 Holmes 판사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자유는 사상의 공개시장과 자동조절작용을 전제로 하여 주장되어 왔다. 이들에 의하면 사상의 공개시장에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설혹 허위가 일시적으로 이기는 한이 있어도, 선악과 진위가 경쟁하는 경우 결국은 선(善)과 진(眞)이 자기수정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볼 때 근대 자유주의에서의 시장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며 자유·평등의 시장을 인간 삶의 중심부에 둬으로써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 다수의 개인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근대 자유주의에 있어 시장은 힘있는 소수로부터 힘없는 다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 공존의 공간이며, 그런 의미에서 근대의 시장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재라고도 할 수 있다. 사상의 자유시장론은 바로 이러한 근대적 자유주의에서 출발한 경제학상 자본주의 이론이 언론시장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아담 스미스적 자유방임주의는 기업가들의 경쟁이 보장되는 자연 경쟁 상태에서만 바람직한 것이고 경제적 독·과점시에 반(反) 독점법이나 공정경쟁법 등에 의한 정부 규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언론 기업의 집중 또

17) 강명구(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p.335.

현재 언론시장은
'규제를 하여도 야단, 하지 않아도 야단'인
딜레마에 빠져있어

는 독점의 경우에도 공익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명되어졌다.

오늘날 불공정한 언론시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개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필립스는 언론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 산업에는 모두 적용되고 있는 독점 방지법을 언론에도 적용하거나 아니면 언론을 법적으로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수도·전기·전화 사업 등과 같이 공익 사업규제법을 원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클린은 접근권의 보장을 위하여 방송은 모두 방송 시간의 1/10을 시민들에게 할애하고 신문의 경우에는 독점 상태에 있고 발행 부수가 10만 이상인 일간지들에게는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회의 관습인 소위 십일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배그디키언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보다는 훨씬 온건한 옴부즈맨의 설치, 각 지역별 언론위원회의 창설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모두 외부로부터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란 비난을 더욱 많이 받고 있고 필립스와 재클린의 규제 요구는 오직 비난의 대상으로서만 거론되고 있는 형편이다. 언론위원회와 옴부즈맨 제도도 외부 간섭이란 이유 때문에 거의 기피하고 있고 2~3개 신문과 지역에서 실험적으로만 실시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의 강한 반발의 결과일 뿐 아니라 사회책임이론의 내재적 한계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책임이론은 자유주의 이론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자유사상의 근간에 다 언론의 책임성을 접목시킨 일종의 비판으로 볼 수 있으며, 일견 이율배반적인 자유이다. 따라서 아직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천적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는 묘방을 찾지 못하고 있고 독점화의 문제도 적절한 대처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스톤이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규제를 하여도 야단, 하지 않아도 야단(damned if we do, damned if we don't)'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¹⁸⁾

그것은 1970년대 이후 새로이 등장한 신자유주의가 상당히 힘을 얻어 가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론과 현실은 복잡적이며 모순, 순환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인간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모두 시장원리에 의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의 시장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창출, 교환하는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시장 역시 단순히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다. 실로 시장은 부자유와 불평등을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순수한 공간으로 최대의 부를 창출하는 풍요의 원천이며 최적의 분배를 결과시키는 정의의 원천이 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 사회적 책임이론에 대항하여 언론에 대한 사상의 공개시장에서도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언론제도에 대한 상반된 논의는 실은 어떻게 언론개혁을 수행하여 좀 더 민주주

18) 추광영(1983). 언론의 독점화 경향과 사회적 책임, 「언론과 사회」, 서울 : 민중사, pp.34~5.

의에 적합한 언론구조를 만드느냐의 문제이며 그 개혁의 공통적 내용으로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 시장기능의 정상화 및 다양한 여론의 공론장 형성 등이다. 즉 언론시장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시장 규제적 입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탈규제정책으로 자유시장적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언론 통제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언론개혁과 관련해 두 가지 관점이 대립하고 있는바 하나는 시장중심의 자유주의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며 국가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는 개입주의적 관점이다. 시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은 언론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소비자인 독자나 시청자의 손에 달려 있으며 언론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장 기능을 정상화시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발행부수공사(ABC)제도와 같이 시장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언론개혁은 언론 스스로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개입주의적 관점은 현재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거대 보수신문에 의한 신문시장의 독과점과 사주나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언론 스스로에 의한 자율개혁은 적어도 한국적 상황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압력에 의해 정간법 개정과 같은 타율적 장치가 필요하며 왜곡된 언론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모두가 언론개혁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언론개혁운동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까닭은 이처럼 언론개혁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현재 언론개혁운동을 주도하는 진보적 매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개입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과 '빅스리' 보수신문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언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이념적 의도가 현재의 언론개혁운동에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¹⁹⁾

그러나 언론통제와 관련해서도 그 통제요인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치권력이, 민주화 시대에는 자본의 역할이 그 중심이 되었다. 그 비중 변화와 관련하여 언론인의 의식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⁰⁾

기자들은 정치권력이나 사주/사장의 '편집/편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 들고 있지만 이들이 '언론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단을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달라'는 질문에 1순위로 '광고주'(오프라인 20.3%, 온라인 27.5%)를, '소속 매체의 편집 또는 편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나 집단'으로는 편집·보도국 간부를 지적하였다(오프라인 60.4%, 온라인 50.0%). 다음으로 오프라인 기자들은 '사주/사장'(11.7%)을 지적한 반면 온라인 기자들은 '독자나 시청자'(16.7%)라고 답했고, '사주/사장'(8.8%)은 네 번째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꼽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정부나 정치권력'의 영향력은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2005년 조사를 2003년의 조사와 대비해보

19) 양승목(2004).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개혁, 「언론정보연구」,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pp.76~7.

20) 한국언론재단이 2005년 3~4월에 걸쳐 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언론자유 제한과 관련된 언론인 의식 조사임.

언론 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누구로부터 언론자유 지킬 것인가 변화,
여기에 언론 외적 요인 부가되면서 논쟁 확대

면 ‘정부/정치권력’의 영향력이 많이 낮아지고 ‘광고주’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편집·보도국 간부의 영향력은 늘어난 반면, 사주/사장, 독자 및 시청자, 정부나 정치권력의 영향력은 다소 줄어든 것이다. 이리하여 매체간 경쟁은 시장경쟁이 핵심으로 광고 수입을 위한 경쟁일 뿐 의견과 사상의 경쟁은 아니며 설사 의견의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극소수 독과점 기업가들의 경쟁이고 그 내용도 이들 특수 계층의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은 언론개혁의 목표를 점차 정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언론의 자유’에서 ‘언론인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경우 언론개혁운동의 내용 변화를 보면 1999년까지는 언론개혁운동의 핵심역량이 방송법 개정에 모아졌다가 2000년 초에 새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언론개혁운동 진영은 신문개혁운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처럼 운동방향이 바뀌게 된 것은 방송이 집권세력인 ‘국민의 정부’와 이른바 ‘코드’를 맞추어 갈 수 있게 된 반면에, 신문시장은 여전히 ‘빅 스리’ 보수신문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문개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문시장을 지배하는 ‘빅 스리’ 보수신문이 여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개혁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빅 스리’ 보수신문의 시장 지배는 신문의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과 우월한 판매망을 이용한 불공정 경쟁 덕분

이라고 본다. 따라서 ‘빅 스리’ 보수신문의 독점적 위치는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 보수신문의 시장 독점을 해소하고 언론의 ‘내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정간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언론개혁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²¹⁾ 즉 언론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언론 자유를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는가의 대상이 달라졌는데 여기에 정치·사회적 개혁 방향성이라는 언론 외적 요인이 부가되어 논쟁이 순수 시장론적 차원을 벗어나게 되었다.

5. 결 어

현재 우리 언론은 언론의 개념, 언론과 정부 및 국민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온라인 미디어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중소 신문들이 경영악화의 한계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도전을 펼치는 등 언론계의 전반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정부의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편과 이에 대한 기존 거대 언론의 대응에 따라 새삼스레 언론 자유와 통제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상 언론은 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유와 통제의 일직선상의 어느 한 점에 위치하여 왔다. 자유와 통제는 상호 모순된 개념으로 언론 현실에 적용할 때 갈등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의 조화된 합을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21) 양승목, 앞의 글, pp.70~71.

리한 조화된 합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로 그것은 자유가 통제를 보는 시각, 통제가 자유를 보는 시각 사이에는 물론이고 자유가 자유를 보는, 통제가 통제를 보는 눈에도 많은 편차가 있다. 또 이런 시각차가 국가 이념이나 정치철학과 결합될 때 그에 대한 입장이나 위치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것은 언론이 정치 사회의 구조적 차원에서 지배 헤게모니 전략과 필연적으로 밀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정치적 변화는 언론구조에 영향을 주고 언론구조는 당연히 정치구조 형성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된 언론 상황에 맞도록 해야 한다며 언론 개혁 자체에 대하여는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인 언론법 내용에 대하여는 상반된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바, 결국 정치적 협상에 의하거나 정치·사회적 결단에 의해서 합헌성이 제공된다고 하겠다.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와 구조개편을 주장하는 소마비아(Somavia, Juan)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개편은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나 경영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정치적 결단과 개편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정보가 기본적 욕구이며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 공공재이며 필수품이란 인식이 필요하며 상업적인 구조와 정치적인 권력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업과 국영 기업 둘 다 부적합한 형태이며 공사 형태의 공영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믿어져 온 언론 자유는 기업의 자유와는 다른 것이고, 정보에의 권리를 상업적 권리와 혼동하지 않아야 되며,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정보의

사적인 통제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제도는 사회의 복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여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공공 서비스, 말하자면 소수 기업가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닌, 공익에 입각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책임있는 제도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커뮤니케이트권 이론가들의 주장인 것이다.²²⁾

이러한 언론을 둘러싼 상호관계와 자유권의 변화는 사회현상으로서 변화해 나가는 언론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론 중 어떤 것은 어느 날 아래 위가 바뀐 것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를 예측한 듯 언론자유에 남다른 신념을 가진 Thomas Jefferson은 1789년 9월 6일 James Madison에게 보낸 서한에서 “어떤 사회도 영원한 헌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왜냐하면 죽은 자가 오늘 살아있는 자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땅은 언제나 살아있는 세대의 것이다”라고 기록했다.²³⁾ 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맞게 당연히 살아있는 법이어야 하며 살아있는 법이 되기 위하여 융통성 있게 확대 재해석이 행해지기도 하며 나아가 개정 및 새로이 제정되기도 한다. 언론관계법의 해석과 개정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정자본주의 이론에서는 물론이며 특히 언론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계되며 다양성과 다원주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의미를 갖게 된다. 예컨대 스웨덴에서는 1963년 이래 신문위원회가 발행부수의 나선형(spiral) 이론을 제시하며 열세에 있는 신

22) 추광영, p.42.

23) J. A. Altschull, *From Milton to McLuhan*, 양승목 역(1993), 『현대언론사상사』, 서울:나남, p.14. 제인용.

언론의 공적 책임 의식 회복과 정부·시민단체의
객관적 신뢰 확보 선행 통해 언론자유와
언론관계법에 대한 학문적 접근 계기 만들어야

문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보조, 정당을 통한 간접보조, 공동배달제 등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물론 직접보조는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고, 간접보조는 별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언론이 상업적 언론의 본질상 왜곡된 매체상황과 제도화되지 못한 시장을 스스로 규제하지 못해 시장의 실패로 이어진다면 헌법정신에 맞도록 사상의 공개시장을 회복하기 위하여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대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론법 개정에서 그 개혁이 순수 법적인 논리를 떠나 보수와 진보 간에 정치적 힘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매체를 자기 쪽에 유리하게 끌어들이기 위하여 헌법정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언론법 논쟁은 이러한 싸움에서의 승패가 우리의 정치지형도를 바꾸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은 새로이 제정된 신문법이나 언론피해구제법 등의 규정 그 자체로서 대립된 이해관계층의 어느 편이 절대적으로 유리·불리한 그런 내용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언론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간의 갈등관계로 인해 법 개정의 의도 및 법운용의 공정성을 불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의 저널리즘 본분을 이탈한 행태가 문재인바 언론 상호간에 매체 내용에 대한 비판은 헌법이 보장한 진정한 언론 자유를 위하여도 권장되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언론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편을 짜고 비방하는 양상으로 변한 것이다. 결국 언론 스스로의 공적 책임의식 회복과 정부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불신을 벗어나도록 객관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새삼스레 제기된 헌법상 언론자유와 언론관계법의 위헌성 논쟁을 좀 더 차분하게 이론적 학문적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 법적 검토

강 경 근
숭실대 법대 교수

- ☐ 고려대 법학과 조동 대학원 석사, 박사
-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부패학회장
- ☐ 저서 및 논문: 『헌법』,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와 법적·제도적 쟁점』, 『편집권 독립의 법제화의 논리와 실제』, 『언론관계법 개정의 방향: 언론발전론과 언론 개혁론』, 외 다수

I.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의 문제 현황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라는 논제는 언론사 내부에서의 언론의 자유의 실현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의제가 법적으로, 특히 헌법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론사 내부에서의 발행인 내지 편집 책임자의 영향력이 그 내적 언론의 자유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언론의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의 실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언론의 논리보다는 시장의 손에 더 힘이 주어지는 상황적 존재가 그것이다.¹⁾

그러므로 편집권의 법적 논의는 미디어의 내용 형성에 관여하는 언론사 종사자가 주체가 되어 그들이 근무하는 언론사의 발행인을 상대로 하는 주장이 헌법상 기본권 영역으로서의 언론의 내적 자

유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논의가 헌법적 의제로서 적극적으로 설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편집권 내지 언론의 내적 자유 등을 규범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 상황들이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기자가 발행인이나 편집 책임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담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일은 대개의 경우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언론사의 문화나 사시 또는 사주의 세계관과 일정하게 타협하고 적응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왔었다는 것이다. 규범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의 문제로 보아 온 것이다.

그렇지만 이같이 주로 사회학적 입장에서 언론사 내부에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한 사실의 개념으로서 일컬어지는 ‘편집권’이란 관념이 최근 그 논의의 지평을 달리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정에

1) 2005년 4월 한국언론재단이 실시한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기자들은 ‘소속매체의 편집 또는 편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나 집단’으로 편집·보도국 간부, 사주·사장, 독자나 시청자를 순서대로 꼽았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단을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달라’는 질문에 광고주, 사주·사장, 편집·보도국 간부를 들었다.

**편집권의 법적 논의는 언론 종사자의
발행인 상대 주장이 헌법상 기본권 영역으로서의
언론 내적 자유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느냐 하는 것**

처했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9호로 공포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때문이다. 본고는 이를 소재로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신문의 발행에 있어서의 편집의 일이 본질적으로 누구의 권한이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적절한 해소책은 무엇인가 하는 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개정 신문법의 편집권 조항과 헌법 소원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을 전문 개정한 이 신문법은 본문 6장 43조 및 부칙 5조로 구성되었고, 본문은 제1장 총칙(7개조),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4개조), 제3장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등록 등(15개조), 제4장 신문산업의 진흥 등(11개조), 제5장 보칙(1개조), 제6장 벌칙(5개조) 등으로 짜여 있다. 이중 ‘편집권’에 관련되는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신문법 제1장 제2조 제9호 “편집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신문법 제1장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

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 신문법 제3장 제18조(편집위원회 등)

①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편집위원회는 일반일간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편집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의 구성·권한·조직·위원의 임기·신분보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편집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4.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5.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6.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7. 편집·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8.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편집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독자권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독자의 권익보호, 독자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신문법의 이들 규정에 대하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그 시행일인 2005년 7월 28일 전에 이미 ‘신문법 시행으로 기본권이 침해된다’면서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²⁾

2) 동아일보는 2005년 3월 23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10개 조항(시장지배적 사업자, 경영금지, 자료의 신고, 신문발전위원회 등)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개 조항(언론의 사회적 책임, 인격권보장, 시정권고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어서 조선일보는 6월 8일 신문법 제3조 제2항 등과 언론중재법 제4조 등에 대해 위헌소원을 심판 청구하였다. 신문법 헌법소원 심판의 첫번째는 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가 2월 18일 청구한 것이 그것이다.

Ⅲ. 편집권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인정 문제

조선일보 등은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이유서에서 “신문 자유의 핵심은 언론의 외적 자유, 즉 ‘경향의 보호’ (Tendenzschutz)에 있고 그 주체는 발행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문법은 이러한 경향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편집권 관련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내적 자유로서의 편집권을 헌법상 권리인 기본권으로서 인정치 않겠다는 의미이다. 즉 조선일보 등의 주장에 따르면 신문법은 편집권이라는 말을 그 귀속 주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 확정이나 합의 없이 명문화하여 발행인의 권한을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언론의 자유, 영업활동의 자유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³⁾

규범적 논점이 명확해졌다. 헌법(제111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은 이를 헌법소원심판으로 규정하면서(법 제2조 제5호 및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5절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정하는 만큼, 편집권을 헌법상 권리 즉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번 헌법소원 심판의 당·부당을 가림에 있어서 결정적 기준이 된 것이다.

편집권을 기본권으로서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기본권이 무엇이나 그리고 편집권은 어떠한 성격의

기본권이나 등을 우선 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지니는 헌법상 권리로서 국가를 구속하는 힘을 지니는 공권(公權)이다.⁴⁾

즉 기본권은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다. 그러므로 편집권을 “언론사 종사자가 그 발행인을 상대로 주장하는 권리”라고 하는 언론학 쪽의 정의는 헌법학의 측면에서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본권은 발행인이라고 하는 사인(私人)을 상대로 하는 사인의 권리는 아닌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및 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편집권을 보통 언론의 내적 자유의 일환으로서 해석하여 이를 기본권으로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헌법 제21조에 근거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향유하는 소극적·부작위적 성격의 인권이다. 그런데 편집권 인정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권리로서의 성격 외에 공동체의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질서를 형성하는 기능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자유권적 기본권이 지니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 외의 그 ‘객관적 성격’을 적절히 인식할 때, 편집권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존재는 인정 가능할 것이다. 이 때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의 기능’이라는 문구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2, 신문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법소원) 심판청구서, 7-45면 참조.

4) 자세한 내용은 강경근(2004), 『헌법』(신판), 서울 : 법문사 참조.

편집권은 사인(私人)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권리

IV. 편집권의 기본권으로서의 인정 여부에 관한 몇 가지 논의

한 연구자는 편집권의 기본권으로서의 인정 문제는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본으로부터도 독립되지 않으면 진정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에 의해 편집 종사자의 편집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그 핵심이라 주장한다.⁵⁾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이 미디어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의 자유는 원래 국가에 대한 자유로서 이른바 언론의 대외적 자유(äußere Pressefreiheit)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하여 '내적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비국가적 측면으로부터 위협받는 경우에 논의되는 것인 바 그 가장 넓은 의미는 언론 매체와 그에 대하여 영향이나 압력을 행사하려는 광고주나 기타 사회세력 간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개개의 미디어를 포함하는 언론계 자체의 독점화 경향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언론 자유에 대한 영향과 대책, 마지막으로 가장 좁은 의미에서 개개의 언론기업 내부에서 발행인과 기자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발행인의 표현의 자유로서 '경향의 보호'(Tendenzschutz)와 기자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가 대립관계로 나타나고, 양자 간의 타협과 조화의 방안이 논의된다고 하면서, 편집권

논의는 이 발행인과 기자간의 관계에 관한 국면에 서 논의되는 문제라 한다.

그러면서, 발행인과 기자 사이에서도 기자에게 주어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발행인에 대하여 그가 소유·운영하는 신문에 기자의 의견을 신게 하라고 요구할 법적인 권리는 생겨날 수 없으며, 헌법상 신문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각 시민이나 그 종사원에게 공중에 대한 의견표현을 목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주관적 권리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원래 국가에 대한 자유(외적 자유)로서 성립한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국가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편집권의 문제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19세기적 관점에 치중한 것이며, 또한 편집권을 내적 언론의 자유를 구현하는 기본권으로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권리이지 국가가 아닌 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잊고 있다.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권을 사권(私權), 즉 사인(私人)을 청구대상으로 하는 '대(對) 사인적 권리'로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본권은 공권(公權)인 것이다.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은 '사법(私法)'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법' 이원 질서를 기초로 형성된 법치주의 법질서에 반하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사인간 적용이 인정되더라도,

5) 이하의 논의는 박용상(2001), 편집권 논의의 법적 조명, 「헌법논총」, 제12집, 5-228면을 참조하여 이를 요약한다.

사인(私人)간 법률관계에 원용되는 규범은 사권, 사법 일반조항(예컨대 민법 제103조, 제104조), 사법원리(소유권 존중, 법률행위의 자유, 자기책임 등) 등이지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이 사법관계에 원용되는 규범 즉 법원(法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의 효력을 확장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한다 해서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사권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달리 말한다면, 개인의 대국가적 청구권으로서의 기본권이 대사인적 청구권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을 지닐 뿐이다. 대사인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기본권이 아닌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이 개인과 국가 간의 공법적 질서 외에 사인간의 사법적 질서에 효력을 미치어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이 지니는 개인의 대국가적 권리라는 성격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다.⁶⁾

그러므로 예를 들어 “제3자 효력설에 의하면 기자의 표현의 자유는 그 본질에 관련되는 경우 언론기업주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렇게 고쳐서 말해야 할 것이다. 즉 “기자의 표현의 자유는 ... 언론기업주에 대하여서도 미칠 수 있도록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언론자유에 관하여 제3자 효력(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한다면 사용자, 즉 발행인에 대한 기자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한다”는 주장도 “... 제3자 효력(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 즉 발행인에 대한 기자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로 고쳐야 한다.

위와 같은 수정된 입장에 설 때에 비로소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규정하는 우리 헌법 제21조 제3항은 언론의 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침해뿐 아니라, 나아가 제3자로부터의 위해(危害)에 대해서는 물론, 언론계 내부나 언론기업 자체 내부에서 야기되는 침해가능성에 대처할 국가에 대한 헌법적 위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그것이 필자의 지금까지의 견해이기도 하다.⁷⁾

다만 필자는 이를 ‘국가에 대한 헌법적 위임’ 내지 ‘입법정책적 의무’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는 이 편집권이라는 기본권을 실현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차이점을 인정했었다.

위 연구자는 계속하여 독일에서 내적 언론자유기업 내부적 국면은 주로 발행인에 대한 기자의 종속성의 문제로서 논의되었고 그 해결방안을 상호적인 권한획정에서 시도하려 하였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사기업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언론기업에서 발행인의 재산권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공적 과업의 수행주체로서 발행인은 제외되는가 또는 공적 과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기자들이 충분한 자질과 교양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등 복잡한 법적·사회적 문제가 제기된다고 한다. 필자 역시 편집권의 구체적인 실현은 발행인과 편집인 기타 일선 기자들이 가지는 각각의 기본권의 형량관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하여지는 영역인 점을 이미 주장한바 있다.

전체적으로 편집권 논의에 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하여 위 연구자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을 중

6) 자세한 내용은 강경근(2004), 『헌법』(신판), 서울 : 법문사 참조.

7) 강경근(1998), 편집권 독립 법제화의 논리와 실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논문 이래 1994년의 『헌법』 교과서에서의 견해를 참조.

**발행인과 언론종사자 그리고
편집권과 내적 자유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각국마다 차이있어**

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신문 등 미디어 사업의 내부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영미에서는 언론의 자유는 발행인 개인이 갖는 자유라고 하는 점이 철저히 인식되고, 언론의 내적 자유라거나 기자들의 편집권이라고 하는 관념은 법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편집권이라는 개념이 따로 논해지는 일은 없었고, 대부분의 경우 신문사 소유자는 발행인이 되고 신문사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발행인의 결정권은 절대적이다. 발행인은 경영상 및 편집상 기본 방침을 정하여 소속 직원을 지시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를 따로 편집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며, 그러므로 ‘편집권’이라고 하는 구체적 용어와 함께 이 문제가 정면으로 다루어진 것은 2차 대전 직후 일본에서였다고 한다.

일본에서 편집권은 헌법상 신문의 자유를 근거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소유자, 경영자에게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경영 또는 편집 관리인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편집권에는 그 확보를 위한 인사권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주장되었으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편집권은 노동자가 가지는 모든 법적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같이 표명되었다. 그렇지만 신문사내에서 신문의 발행은 경영진과 신문노동자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편집권을 경영진에게 일방적으로 일임시킴으로써 야기되는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전반적으로 볼 때, 언론의 내적 자유는 독일에서 발전된 개념이었고, 이미 바이마르 헌법 당시부터 ‘편집상의 언론자유’ 내지 ‘경제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말로써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론의 내적 자유라는 개념은 헌법상 언론자유와 기본권에 ‘편집의 자율’(redaktionelle Autonomie, journalistic independence)이 함께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려는 입장이 표현된 것이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독일의 내적 자유를 논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헌법상 미디어의 자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특히,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창간하고 운영하는 발행인은 그 미디어를 통하여 그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펼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며, 그 때문에 각 미디어 기업은 헌법상 ‘경향의 보호’(Tendenzschutz)를 누린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신문의 경우 편집규약의 체결은 강제될 수 없고, 약정되는 경우에도 발행인의 신문의 자유의 구조적 우월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허용되게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례에 의하면 신문의 경향에 관한 결정과 변경에 관한 권한은 발행인만이 가질 수 있고, 정간물이나 신문의 경향의 변경은 필요한 인사개편(보직변경)에서 지시권을 행사함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위 두 권리는 상호 분리할 수 없는 내적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다.⁸⁾

그리고 경향과 관련한 발행인의 지시권은 언론기

8) Bernd Rüthers und Jürgen Bannica, a.a.O. S. 641. 박용상. 앞의 논문 소수.

업에서 미디어의 자유를 위해 헌법상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보다 확대된다고 한다. 이러한 독일의 논의 경향은 필자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와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상 미디어의 자유는 발행인에게 있고, 언론기업 내에서 기자들의 기능과 활동에 근거하여 기자들에게 내적 자유가 주어지는 것으로서 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 역시 필자의 견해와 합치된다. 다만 “국가가 내적 자유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양자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기자를 위해 발행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됨을 의미”한다는 견해는 필자와 차이가 있다. 이는 아래에서 정리한 필자의 입장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내적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면 발행인은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 생각이 공표되거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가 선택되는 것을 수인해야 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뉴스의 선택권을 관찰시킬 수 없게 되어 결국 발행인 측으로 보면 그의 핵심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게 된다⁹⁾”는 입장 역시 필자의 견해에는 반한다. 또한 “발행인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나아가 그의 기업주로서, 저널리즘적 통일체로서 기능을 보전할 수 있는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¹⁰⁾”는 입장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내적 자유는 기자와 발행인 간의 관계에서 발행인의 표현의 자유로서의 뉴스 및 의견 선택권이나 그 작업상 사용자

로서의 지시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천적 조화에 의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조정에서 유의할 점은 발행인이 가지는 경향 추구의 권리이든, 기자가 주장하는 내적 자유이든, 어느 일방의 완전한 보호와 타방의 전면적 희생을 가져오는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신문의 자유의 기본권이 양 주체에게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신문의 제작 및 편집과정이 ‘분업을 통해 노동하는 다양한 기본권 주체에 의한 공동작업과정’인 점을 인식하고 그 조정을 위해서는 기본권의 실천적 조화에 의해 해결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의 논의는 이러한 기본 입장을 전제로 진행된다”라는 입장은 필자가 이미 밝힌 견해와 완전히 일치한다. 다만 필자는 편집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논지를 전개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편집규약(Redaktionsstatut)은 언론의 내적 자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경영인의 언론 자유와 편집인의 언론 자유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해결 방법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었다는 점, 독일에서 편집규약은 발행인과 편집부문 간의 임의적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법외적 제도일 뿐, 어느 일방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체결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발행인의 신문의 자유의 구조적 우월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허용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체결된 편집규약은 발행인 측 또는 기자그룹 측 어느 일방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한때 편집권 독립의 모범적 국가로 여겨

9) Christoph Engel, Einwirkungen des europäischen Menschenrechtsschutzes auf Meinungsäußerungsfreiheit und Pressefreiheit - insbesondere auf die Einführung von innerer Pressefreiheit, Archiv für Presserecht, 1. Quartal 1994, S. 1, 박용상 앞의 논문 소수.

10) Christoph Engel, Privater Rundfunk vor der Europäischen Menschenrechtskonvention(Law and Economics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19) 1993, S. 445f, 박용상, 앞의 논문 소수.

**편집권은 '자유로운 언론제도의
형성을 위한 최소한'을 법·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

졌던 독일에서 편집규약 제도가 폐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용하고 있다.

V. 편집권의 헌법상 권리로서의 본질에 관한 필자의 견해

1. 편집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편집권은 언론의 자유가 지니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에 기초한 언론의 내적 자유를 실현하여 언론의 외적 자유, 즉 언론의 발행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자율적 '편집·편성권'이다.¹¹⁾ 헌법 제23조 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서 신문의 '기능'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언론제도

를 형성·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현하여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¹²⁾ 이와 같이 편집권은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¹³⁾ '자유로운 언론제도의 형성을 위한 최소한'을 법·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 즉 헌법상 권리다.¹⁴⁾

2. 편집권의 물적 독립 - 편집의 전문성

편집권은 언론매체가 언론 자유의 목적인 국민 개인의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공동체의 민주주의 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지니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물적 독립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¹⁵⁾

편집권의 물적 독립은 기사 작성과 편집 등의 일을 행하는 기자와 편집인 등의 내적인 언론의 자유의 보장에 의의가 있지만, 그렇다고 편집권은 편집인 등 편집종사자들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권리

11) 강경근, '언론기능' 개념은 편집 자유와 독립, 2000. 11.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언론 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중에서 주제 발표문.

12) 헌법은 통신과 방송의 시설기준은 법률의 유보영역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의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대해서가 아니라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 '기능'의 의미는 언론의 내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헌법 제21조 제3항 '신문'의 의미는 매체로서의 언론전체를 가리키는 광의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그 용어에도 불구하고, 이는 신문이라는 매체에 한정하지 아니 하고 방송·통신을 포함하는 언론매체 전체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의 내적 자유를 실현하는 조항으로 보는 것이며 이렇게 해석한다면, 특히 그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등의 언론매체의 경우에 한정하여서만 특정하여 법률로 보장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3) 헌재 1993. 5. 13. 91헌바17 음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한정위헌결정[판례집5-1 275-296] 특히 284-285면.

14) '자유로운 언론제도의 형성을 위한 최소한'이라는 조건은, 예를 들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의 규정은 지상파 방송과 같은 공영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문 등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15) 1996년 4월 8일, 1957년 4월 7일 선포한 '신문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하는 형식으로 '신문윤리강령',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제정하였다. 신문윤리강령은 제3조에서 언론의 독립, 제4조에서 보도와 평론의 공정성을 규정하고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1조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제10조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하면서, 총칙(제1항),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제2항),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제3항), 기고기사의 변경금지(제4항), 기사의 정정(제5항), 관계사진 게재(제6항), 사진조작의 금지(제7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 아니라¹⁶⁾ 언론사 경영자 등과 경합하여 지니는 권리다. 다만 편집종사자들의 편집에 관한 ‘일’이 경영자 등이 편집에 관하여 행하는 권한보다 직접적·본질적이며 전문적 사항일 뿐이다.

3. 편집권의 인적 독립 - 편집인의 보호

편집권의 인적 독립은 편집의 전문적 종사자인 편집자 등이 지니는, 언론사 경영자 등으로부터 독립을 가능케 하는 보호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편집인의 인적 독립은 현실적으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사기업의 형태로 설립·유지되며 편집인이나 기자들은 그러한 언론사의 피고용자라는 법적 신분관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VI. 신문법상 편집권 조항의 과잉규정성

1. 신문법의 명칭 자체가 상반되는 가치를 혼재하였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의 명칭 자체가 단절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문의 ‘자유’와 신문의 ‘기능’이라는 말은 상호간 긴장

관계에 설 수 있는 의미로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문의 자유라는 말은 언론의 경향성을 보장함으로써 그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의 신문발행의 자유를 그 의미로 포함하는 근거가 되는 용어다. 물론 헌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신문의 기능’이라는 말 역시 신문의 경향성 보호와 다양성 확보를 위한 언론의 내적 자유를 헌법상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편집권 법제화의 근거로서 원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¹⁷⁾

하지만 신문의 기능이라는 문언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방어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특히 신문의 경향성과 다양성을 내용으로 하는 신문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의 합헌적 의미를 살릴 수 있으려면, 그와 같은 ‘신문의 기능’이라는 문언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편집권 내지 언론의 내적 자유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신문 발행의 자유를 보장할 때 그 의미가 있다’라는 한계를 지키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문법이 헌법상 규정된 신문의 기능이라는 문언이 부여하는 편집권의 본래의 내용을 갖지 아니할 때, 그 법률은 오히려 언론의 내적 자유가 국가에 의하여 지시나 간섭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통로로 기능하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문의 외적 자유, 즉 자유로운 언론을 해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바로 그 점에서, 신문의 기능이라는 말은 신문의

16) 헌재 1996.8.29. 94헌바15 영화법 제4조제1항등 위헌소원 합헌결정[판례집8-2 74-89] 특히 86면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방법과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기업경영주체로서는 일반 사회법질서의 규율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언론·출판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간섭과는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본질적 자유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가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현출하는 매체가 하나의 기업으로서 객관적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일반 법질서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은 서로 구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17) 강경근(2004). 『헌법』(신판). 서울 : 법문사 참조.

신문법이 헌법상 규정된 '신문의 기능'이라는
문언이 부여하는 편집권의 본래 내용 갖지 않을 때
도리어 언론 내·외적 자유 침해할 수 있어

자유와 긴장관계에 서게 되는 것이다.

2. 신문법 제3조 제2항은 헌법 제21조 제3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신문의 자유'라는 말로서 표현되는 신문의 외적 자유, 즉 자유로운 언론 그리고 신문의 내적 자유를 말하는 '신문의 기능'이라는 문언이 긴장관계에서 그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편집권 규정의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이다. 제정 신문법이 편집권에 관련하여 규정한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의 기능'이라는 문언이 지니는 한계를 벗어난 과잉의 표현이다. 신문의 기능이라는 표현은 언론의 내적 자유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경향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자유로운 신문 발행이라고 하는 언론의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그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법 제3조의 규정은 그 본래의 헌법상 인정된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를 법률 자체 및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에 백지위임할 가능성이 큰 조항인 것이다.

신문법 제3조 제1항의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3항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확인하는 선언적 의미만 가진 조항이다. 문제는 이러한 확인 내지 선언적 규정에 더하여 부가된 동조 제2항과 제3항에 있다. 제2항은 "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

다"하는 데, 이는 방어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특히 신문 발행의 자유 및 그 내적 자유로서의 편집권이라는 헌법상 권리의 본질에 반하는 규정 내용인 것이다. 표면상 이 규정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반대해석에 따르면 '누구든지', 즉 국가는 물론 사인이라도 이 신문법이나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행할 수 있다는 일종의 백지위임의 규정이다. 이와 같이 해석되는 경우의 이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3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헌법 제21조 제3항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원칙을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신문의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은 필요성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에도 불구하고 그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규범적 내용을 지녀야 하는 것임은 물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원칙에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그것이 국가로부터이건 또는 언론사 사주로부터이건, 신문법 제3조 제2항과 같은 형식의 백지위임식의 규제와 간섭을 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무권한의 헌법위배적 법률에 지나지 않는다. 편집권은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가 지니는 '자유로운 언론제도의 형성을 위한 최소한'을 법·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 즉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이다.

3. 신문법 제3조 제3항은 헌법 제21조 제3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신문법 제3조 제3항의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는 이 강행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형식)은 동조 제2항의 “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함께, 헌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편집권의 본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규정은 다음의 취지로 수정되지 않는다면 편집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편집권이라는 기본권은 언론의 자유가 지니는 국민 개개인의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이라는 주관적인 측면 외에, 공동체의 민주주의 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지니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에 기초한 언론의 내적 자유 및 그를 통한 언론 발행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의미의 자율적 ‘편집·편성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신문의 ‘기능’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형성·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이를 법률에 ‘의하여’ 실현하여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 편집권은 그 핵심을 편집의 자유와 독립 자체를 보장할 수 있는 ‘물적 독립성’에 두지만, 그것은 기사 작성과 편집 등의 일을 행하는 기자 내지 편집인 등의 편집종사자들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는 아니다. 언론사 경영자도 이들과 경합하

여 편집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제21조 제3항의 무리하지 않은 해석이다. 다만 편집종사자들의 편집에 관한 ‘일’이 경영자 등이 편집에 관하여 행하는 권한보다 직접적·전문적 사항이 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위 신문법 규정은 편집권의 주체가 편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의 발행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임을 잊고 있다. 신문법은 정기간행물사업자를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라 하는데(법 제2조 제6호), 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성이 편집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 사업자에게도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인 점을 무시한 조항이며, 동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인정된다는 명문 규정에도 모순된다.

그런 점에서, 신문법 제18조 제2항의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 역시 발행인의 편집권을 부인하는 취지이어서 헌법에 반하는 조항이 될 것이다.

신문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고(안 제12조 제1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 취재 및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위촉한다”고 규정한다(안 제12조 제1항) 하는바, 이러한 규정은 신문의 내적 자유의 주체인 발행인과 편집인 등의 권리가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발행인의 편집에 관한 권리는 인정

신문법 제39조와 제3조 제2항 등은
불명확성 및 과도한 광범성으로 인해
위헌적 규정 될 수 있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행령안 역시 모법인 신문법에 반하는 규정이 된다.

동 시행령안이 신문발전기금의 우선 지원조건으로서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을 설치·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들어(안 제28조 제2호)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을 두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 신문법이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편집규약의 제정을 임의에 맡기기로 한 본지를 탈법하여 이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라면 그 위헌성은 피하기 어렵고, 따라서 당해 신문법 규정의 개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신문법 제18조는 동법 제3조 제3항이 있는 한
사실상 강행규정이 되어 헌법 제21조 제3항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일 가능성이 있다

신문법 제18조는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광범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 규정들을 문면상으로만 보면 임의규정이다(“할 수 있다”는 규정의 형식). 하지만, 이 규정은 신문법의 다른 조항과 함께 사실상 강행규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등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신문법 제39조는 제3조 제2항

의 “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서 명시한 “편집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른 명확성과 구체성을 지녀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내용을 정하는 등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void for vagueness)의 원칙¹⁸⁾ 및 ‘과도한 광범성’(overbreadthness) 원칙¹⁹⁾ 등에 반하는 등의 문언을 지닌다는 점에서, 신문법 제39조와 함께 제3조 제2항은 위헌성이 강하다.

신문법 제39조 및 제3조 제2항이 그 문언의 불명확성 및 과도한 광범성으로 인하여 위헌적 규정이 된다면, 신문법 제18조가 제1항에서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하여 이를 비록 임의규정으로 하였다 하여도 동조 제2항 이하에서 규정한 ‘편집위원회’ 규정

18)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이나 문구가 불명확할 때에는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void for vagueness)가 된다. 막연무효원칙의 근거는 법치국가적 명확성 원칙에서 구한다. 불명확한 법률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의 여지를 크게 함으로써 법률의 규율 및 제한 대상에 대한 사전고지의 기능을 저하시켜,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어 언론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게 하기 때문이다. 헌재 2002.6.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71조제7호중 제53조 제3항 부분 위헌확인 위헌, 각하결정[판례집14-1 616-643] 특히 617-618면 참조.

19) 표현의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는 바(헌재 2002.6.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 부분 위헌확인 위헌, 각하결정[판례집14-1 616-643] 특히 630면), 이를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재 1998.4.30, 95헌가16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호등 위헌제청 합헌결정[판례집10-1 327-355] 결정주문[제5조의2 제5호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 중 “음란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

및 ‘편집규약’ 규정 등은 언론의 발행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축효과를 준다.²⁰⁾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²¹⁾

그런 경우, 동조 제4항의 편집규약 내용으로서 거명한 10가지 사항들은 언론의 자유 전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주는 규제 조항들이 될 것인데, 이들 규정의 문언들(자율성·독립성 및 공정성,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양심에 반하는 취재, 편집·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등) 역시 불명확하고 상당한 광범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는 헌법원칙에 이들 신문법 규정들은 반한다는 점에서 그 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법 제18조 제4항 제10호는 편집규약에 들어가는 사항으로서 ‘독자권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독자의 권익보호, 독자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도 들고 있다. 이는 신문의 발행과 그 소비라고 하는 법률관계로부터 모든 법적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법치국가적 법률의 의회주의적 성격을 부인하는 민주주의적 성격

을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이 일반원리로 삼는 법치국가적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장에서 보기로 한다.

5. 신문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헌법 제21조 제3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언론의 자유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의사 표현·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상·정보의 형성·전파 등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다. 즉 언론의 자유를 ‘의사’ 표현의 자유라 할 때의 그 의사에는 가치평가가 내재되는 사실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가치평가로서의 의사의 개념은 널리 “일정한 표현의 의도”로 이해하는 것이 의사표현과 사실보도를 굳이 구별하지 않는 언론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

그런 점에서, 신문법이 제11조 ‘광고’의 제1항에서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이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하고 제2항에서는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편집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리광고’의 경우, 광고의 대상이 되

20) ‘위축적 효과’라 함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양태를 말한다.

21) 현재 1998.4.30. 95헌가16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호등 위헌제청 합헌결정[판례집10-1 327-355] 특히 341-342면(현재 1990.4.2. 89헌가113, 판례집2 49면; 현재 1996.8.29. 94헌바15, 판례집8-2 74면; 현재 1996.11.28. 96헌가15, 판례집8-2 526면 등도 참조).

**편집권과 언론 내적 자유를 합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의 경영권 등을
편집권 행사의 일환으로 쓸 수 있음을 인정해야**

는 물품을 사도록 타인의 의사에 형성에 작용한다는 점에 그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²²⁾ 언론의 자유의 규범영역에 넣을 수 있는 바,²³⁾ 광고표현의 자유가 그것이다.²⁴⁾ 이 점에서, 이들 규정은 정면으로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편집인의 편집권 즉 편집의 자유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

Ⅶ.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의 합헌적 실현을 위한 제언

그렇다면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를 합헌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먼저 신문 등 정기간행물 발행인 등의 경영자가 그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을 편집권 행사의 일환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편집의 권한을 편집종사자들에게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경영자 등에게도 인정하되 이를 '간접적', '보조적', '열위적' 권한으로 보는 것이다. 이럴 경우 편집을 둘러싼 갈등은 편집인 등의 편집종

사자들과 발행인 등의 경영진들이 각각 지니고 있는 편집권을 조정하는 문제로 볼 수 있게 된다. 즉 편집종사자들과 발행인 간의 편집을 둘러싼 갈등은, '편집권'이라는 기본권을 '각자의' 입장에서 국가에 대해 주장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조정되는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언론의 편집·편성의 자유가 실제 제작자인 편집인·편성인 내지 그 종사자들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 운영자가 향유하는 재산권 내지 영업의 자유 간의 상충관계로써 논의하는 것은, 언론사 사주나 경영자들은 경영권만을 전속적으로 부여받을 뿐 편집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는 논리가 되어, 헌법 제21조 제3항의 논리상 실재하기 어려운 반(反) 헌법적 해석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국가영역에 있어서 사법권 독립이 '재판'의 전문적 성격에 기인하듯 또는 국회의 자율권이 인정되듯 나아가 사회영역에서 대학과 같은 지식집단이 국가나 사립학교 경영자로부터의 자율성이 보장되듯, 편집행위의 '전문성' 내지 '제1차적 판단권'은 편집 종사자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발행인에

22) 광고가 일정한 의사의 표현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언론제도의 보장 즉 방송·출판의 자유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법적 성격을 근거로 보장될 수 있다.

23) 헌재 1998.2.27. 96헌바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합헌결정[판례집10-1 118-130] 특히 124면; 헌재 2000.3.20. 97헌마108 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 기각결정[판례집12-1 375-392] 특히 390면.

24) 헌재 2000.3.30. 99헌마143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위헌결정[판례집12-1 404-415] 특히 410면 "이 사건 규정은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는 것이다. 식품제조업자 등이 숙취해소용 식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그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업자 등의 직업행사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는 식품판매를 위한 상업적 광고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상업적 광고표현 또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므로(헌재 1998.2.27. 96헌바2, 판례집10-1, 118, 124) 이 사건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는 편집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기본적인 법 관계에 있어서, 편집인과 경영자의 관계는 근로계약의 양 쪽 당사자의 입장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로써 체결된 사법상의 계약관계라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구 정간물법이 "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법 제6조 제2항),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처벌 등의 강제 조항이 없었고(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참조),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제기하는 반론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였으며(법 제16조 제1항), 구체적으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인 발행인과(법 제2조 제10호)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편집인이라 한 점은(법 제2조 제11호) 그래서였다. 바로 그 점이 편집권 보장의 면에서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새로 제정된 신문법에 관련 조항을 두었지만 이번에는 과잉의 규정이 된 것이다.

따라서 발행인과 편집인 각자가 지는 책임에 상응한 권한을 자기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는 법이라면 규범의 체계조화성에 맞고 책임의 개별화라는 근대법 원칙에 합치되는 편집권의 법제화 규정이 될 수 있다. 편집 종사자와 발행인 간의 내적인 타협의 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편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편집인·편집기자 등의 편집 종사자들과 발행인 간의 갈등을 헌법의 전 취지에 비추어 편집에 실질적 직접성을 지니는 편집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선(先)과 우(優)의 관계에 두는 법제가 되도록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다. 다만 거기에 강제나 처벌을 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아니 된다. 편집에 종사하는 기자들 역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근로권(헌법 제32조)과 노동 3권(헌법 제33조)을 행사함으로써 편집의 독립에 관한 내용을 단체협약 체결에 의하여 이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노동쟁의를 하든지 또는 발행인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실현케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이에 부합하는 단계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인가

양 경 승
변 호 사

2005. 1. 1.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편의상 언론중재법으로 약칭하기로 한다)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고 2005. 1. 27. 공포되어 2005. 7. 28.부터 시행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위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 등으로부터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05헌마314호, 2005헌마555호)이 제기되는 등 그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언론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위 법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따라서 이 마당에서는 위 법의 내용과 그 입법적 연혁을 살피고 위 법률 내용에 과연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것이 위헌선언을 받아 폐기되어야만 할 만큼 현저하고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I.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입법연혁

1. 언론중재법의 내용

가. 실체적 내용

위 법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

법익이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법령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위 법은 이를 통일적·유기적으로 포섭·정립함으로써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획기적이고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위 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수단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에 의한 원상회복을 꾀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민사소송법과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왔던 침해의 정지나 예방 등 사전금지적 가처분과 표현물의 폐기청구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제까지 실정법으로 도입된 바가 없는 인격권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대한 보호 원칙을 선언하면서 위와 같은 원상회복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침해의 구제수단임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위 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예방과 자율적 구제 등을 위하여 정기간행물 사업자와 방송사업자 등에게 자체 내에 고충처리인(옴부즈맨)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사후적인 원상회복조치의 권고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침해에 대한 심의와 시정권고권을 부여하고 있다.

나. 절차적 내용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등의 침해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구제를 위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침해의 정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은, 법원의 소송절차 중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일반 본안소송절차가 아닌 가처분소송절차에 의하되 3월 내에 판결로써 재판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 항소만으로써 불복을 하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을 피하는 한편, 상소심에서 하급심과 달리 피해자의 청구를 배척하는 때에는 하급심 판결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정정보도 등의 비용을 피해자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상호 이익의 조정을 꾀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법원에의 제소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임의적이어서 피해자는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와 언론사는 미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 계속 중 그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고, 일정

비율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며, 일반 공무원이나 정당원, 언론사 소속 현직 언론인 등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고 법관과 마찬가지로 제척, 기피, 회피가 적용된다.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그 절차 계속 중 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병합하여 제소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2. 언론중재법의 입법 연혁

가. 언론기본법 제정 이전

1980년 언론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민법과 형법 외에 특별한 법 규정이 존재하였다. 즉, 제3공화국 정부는 1960. 7. 1.에 제정된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제553호)과 1961. 5. 23.에 발포된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11호에 대체하여 1963. 12. 12.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6호)을 제정·공포하고, 1963. 12. 16.에는 방송법(법률 제1535호)을 공포하였는데, 위 방송법에는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두었다.¹⁾ 그 내용을 보면, 국내의 모든 방송국을 회원으로 하여 방송윤리위원회를 조직하고(제4조), 동 위원회는 보도·평론의 불편·부당과 공평 보장에 관한 사항,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기타 공서양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방송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하며(제6조), 방송국은 방송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1) 3공화국 정부 이전의 언론 관계 법령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규정이 전혀 없었다. 미 군정 하의 신문 및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건(1946. 5. 29. 군정법령 제88호)의 경우 신문 등에 대한 허가제를 취하고 있었다.

주장하는 자나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방송이 있는 후 7일 내에 정정방송 요구를 받거나 스스로 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진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방송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판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 방송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정정방송을 하여야 하고(제12조),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제21조 제2항 제1호)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 규정에 의한 정정방송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64. 8. 5. 언론윤리위원회법(법률 제1652호)을 제정·공포하였다. 위 법률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방송국장을 회원으로 하여 언론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며(제2조), 위원회는 앞서 방송법과 유사한 내용(위 내용에 국가의 안전 및 공안의 보장에 관한 사항, 내외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 존중에 관한 사항,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의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되었다)의 언론윤리강령을 제정·공표하여야 하고(제3조), 위원회 내에 내부인사와 외부인사 등 9인의 위촉 위원으로 상설 집행기관인 심의회를 두어 스스로 또는 외부의 판정 요구에 의하여 보도내용이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여부를 심의·판정하며(제5조),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의하여 부당한 침해를 입은 자 및 언론 소관 부처 장관은 그 내용이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것을 이유로 심의회에 심의판정을 요구할 수 있고(제12조), 심의회는 심의판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15일 내에 이를 심의 판정하되 그 경중에 따라 권고, 경고, 해명·정정·사과 보도의 지시, 회원자격의 정지, 제명 판정을 할 수 있으며(제13조), 해당 언론사는 2일 내에 이를 무료로 보도하여야 하고 심의회의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7일 내에 심의회를 상대로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4조, 15조)고 규정하였다. 한편 언론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방송법 소정의 방송윤리위원회는 폐지하였다.

그러나 위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야당 및 언론사의 반발이 극심하여 실제로는 그 시행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었으며, 정부도 이에 굴복하여 1973. 2. 16. 방송법을 개정하여 방송윤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일반 개인의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²⁾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는 언론기본법 시행 이전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인 민법규정(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위 민법규정에 의하면 언론보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등에 적당한 원상회복처분으로써의 정정보도청구 등이 가능하였으나,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국민의 인권의식이 낮아 언론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나. 언론기본법 제정 이후

(1) 제1기

1980. 12. 31.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이라 하여 사실적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방송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위 법률에는 위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이나 그 요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부에서는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원상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법원의 실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규정의 모태는 반론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 프

2) 이와 아울러 방송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사과·정정·해명 또는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하며, 이 역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신부장관에게 그 방송국의 재허가를 유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

랑스 등의 언론법이었으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거부될 수 있고, 정정보도의 내용은 이의에 관한 사실적 진술과 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며,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는 반면 그 자수는 이의 대상이 된 원 보도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 및 그 행사에 관하여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한다는 언급이 없고, 민법상의 구체 수단과 달리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신문, 통신, 방송) 내지 1월(기타 정기간행물) 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종합해보면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아니라 위 법률에 의하여 새로이 창설된 권리로써, 원 보도내용이 진실(사실)인지 여부, 그 보도에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보도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가 그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해명, 보충의 내용이 담긴 반론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하여(위 '정정보도문'이라는 용어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보도할 수 없다는 규정이 마치 반론문을 언론사의 명의로 보도하라는 것으로 오해되어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 실무에서 피해자의 명의 및 피해자의 진술형식이 아닌 언론사의 명의로 그 진술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였다)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내지는 응답권으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³⁾

위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컬러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고 컴퓨터의 보급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도 정보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국민의 인권 의식도 이전과 달리 크게 고양된 데에다 언론

관련 법령에 명문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별 규정을 둔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전개에 기여한 것이 소송에 앞서 필요적 전치기구로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였다. 위 법률은 문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언론기본법 부칙 제2조는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과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폐지함으로써 방송윤리위원회와 언론윤리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로 대체되었다) 그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분쟁을 '중재'(실질은 조정이다)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무료로 업무를 처리하고 대 언론 광고 등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펼침으로써 국민들의 위 권리 행사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한편 위 법률은 위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소송절차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였으며, 국내의 모든 방송국장을 회원으로 하는 방송심의위원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심의규정을 제정·공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사과, 정정, 해명 또는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언론기본법 자체에 대한 언론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위 반론권 제도에 대한 언론의 반발 역시 매우 강하게 나타났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소환에 불응하여 조정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조정절차 밖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회유하여 중재신청을 취하게 하는 등의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고, 위헌시비가

3) 1980. 10. 27.에 공포된 5공화국헌법은 처음으로,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제20조 제2항)을 명문으로 도입하였고, 언론기본법 역시 이에 따라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제3조 제3항) 및 언론은 공표 전에 모든 공표 사항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제9조)을 두었는데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 역시 위와 같은 헌법규정에 연유한 것이다.

계속되다가 위 법률의 후신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위헌 심판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⁴⁾

하지만 대법원은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에서, 위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은 반론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및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의무로부터 도출된다고 선언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1991. 9. 16. 89헌마165 결정으로써 대법원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면서, 그 같은 권리를 피해자에게 부여한 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된다거나, 그 소송절차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합헌이라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에 따라 1987. 11. 28.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그에 대체하여 새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3979호, 이하 편의상 정기간행물법이라고 약칭한다)과 방송법(법률 제3978호)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위 ‘정정보도청구권’제도와 언론중재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오히려 언론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에 걸쳐 중재절차에 불출석한 경우 신청인의 요구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강화되어 언론사의 맹목적인 반발과 비협조에 대한 제재수단이 강구되었다.

(2) 제2기

언론기본법과 이를 대체한 정기간행물법 및 방송법을 통하여 ‘정정보도’ 청구제도와 언론중재제도가 크게 발전하고 정착되기에 이르렀으나(1989년 이후 특히 중재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 2004년 한국언론재단이 중앙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언론인의 97%가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구제율은 60%대에 가까웠다) 이들 법률상의 언론피해 구제제도 관련 규정은 매우 빈약하였고, 그 실제적·절차적 내용 역시 미약하고 협소하여 폭증하는 국민의 기대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과 개정요청이 제기되었는데⁵⁾ 이에 따라 1995. 12. 30. 위 두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그 일부가 수용되었다. 그 개정을 통하여 ① 종래 그 실질이 반론권임에도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본질과 법적 근거에 혼선을 일으켰던 것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용어를 정리하였고, ②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본래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이에 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임의적 중재(조정) 대상으로 포섭하였으며, ③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조정)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중재결정(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특히 직권중재결정 제도의 도입은 그 동안 양 당사자가 합의에 실패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 국민들로부터 제기되어 온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다. 언론중재법의 제정

언론기본법과 그 뒤를 이은 정기간행물법, 방송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및 반론보도청구권은 몇 차례 수정이 있었으나 언론기본법이 도입한 반론권과 민법에 근거한 정정보도청구권의 골간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고, 그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중재제도상의 문제에 대한 작은 부분의 개선만이 이루어진 채 2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

4) 이는 파스티르유업(株)가 중앙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신청하여 1심에서 인용판결이 선고되자 중앙일보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한 것이다.

5) 이에 관하여는 양삼승,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 개선방안, 언론중재 1993년 겨울호 참조.

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는바 그 대강은, ①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구제수단과 정기간행물, 방송, 통신 등 매체별로 근거법령이 민법,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에 분산된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규율을 꾀하고, ②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을 상대화하여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시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을 배제하며, ③ 언론활동 보호를 위해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민사적 영역에도 포섭하고, ④ 언론의 자율적 책임 확보를 위한 사내 옴부즈맨 제도와 같은 자율적·사전 예방적 장치를 강구하며, 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와 법원의 소송절차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피해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⑥ 언론중재위원회의 소송 외 분쟁해결 기능 및 전심절차 기능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분쟁 역시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포섭하며, ⑦ 반론보도청구권은 물론 정정보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분쟁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필요적 전치 절차화하고, ⑧ 고유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분쟁의 일회적·신속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등으로 모아졌다.⁶⁾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논의를 집약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필자가 1998. 4. 전문 45개조의 가칭 “언론피해구제법” 안을 성안하여 제출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축조심의를 거쳐

2002. 10. 국회와 각 정당에 배포하였다.⁷⁾ 한편 이 무렵 대전 및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김현철 씨와 한겨레신문 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 등을 둘러싸고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문제가 사회적 큰 관심사로 떠올랐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는 정파와 대립적인 언론사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의 개편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운동권의 요구가 빚발쳤다. 이런 가운데 2002. 2. 제16대 국회의원 27인이 정기간행물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⁸⁾ 2004. 6.에는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관련 시민단체도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기도 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법률안과 시민단체의 법률안은 단일 통합법 형식을 취한 반면 국회 개정안은 기존의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시민단체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사자의 인격권보호 등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제17대 국회가 개원된 후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법률안을 토대로 여야 간에 입법을 둘러싸고 장기간의 대치와 교섭이 진행된 끝에 2004년 세모에야 가까스로 합의가 이루어져 2005. 1. 1.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언론중재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정기간행물법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7369호, 이하 편의상 신문법이라고 약칭한다)로 개편되었다.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을 큰 틀로 삼고 여기에 시민단체의 안과

6) 이에 관하여는 양경승, 언론피해구제 관련법률의 입법론적 개선방향과 전망, 언론중재 1998년 겨울호 및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언론중재 2004년 가을호 참조.

7) 그 내용은 언론중재 2000년 겨울호 참조. 축조심의에 참여한 양삼승 변호사가 이를 해설하고 있다.

8) 그 내용은 언론중재 2003년 가을호 참조. 양삼승 변호사가 그에 대한 논평을 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안이 조금씩 가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그런데 이와 같이 국회의 회기 말에 정파 간에 나눠 먹기식의 막판 절충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법률의 내용이 전체적인 일관성과 체계 정합성을 잃고 여러 곳에서 다소 거칠거나 일견 모순·상반되는 내용이 끼어들게 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¹⁰⁾

II. 언론의 자유와 제한의 법리

1. 언론의 자유

가. 언론의 자유와 법적 근거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우리는 이를 언론의 자유 내지는 표현의 자유라고 부른다.

언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는 이유는 개개인의 생각과 사고, 지식, 정보를 자유롭게 타인에게 표현·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기 때문이다. 표현의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위 헌법 규정에서 언급된 출판은 표현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집회, 결사, 학문, 예술,¹¹⁾ 종교 등을 통하여도 표현행위가 이루어지나 이들에 대하여는 개별 규정으로 보장되고 있다(대법원 1996. 9. 6. 96다19246, 19253 판결 참조).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써, 사회공동체의 유지·존속과 그 속에서 각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그 가진 바 인격을 고양하는 데에는 자신의 의사와 정보를 자유롭게 전파·교류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여론과 국민의 의사에 기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함을 근본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는 그 사회를 떠받치는 사회제도로써 언론의 자유는 자유권에서 나아가 제도적 보장으로도 까지 이해되고 있다.¹²⁾

이에 따라 우리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기회균등의 보장,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등도 언론의 자유를 함께 보장하는 실정법적 근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위 법규로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이에 대하여 누구도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제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신문법은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제3조)을, 방송법 역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규정(제4조)을 두고 있다.

나. 언론의 자유의 내용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매우 넓고 다양하여 이를 일

9) 열린우리당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한나라당에서는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노동당에서는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제출하였는데, 열린우리당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법률안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이 안들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되면서 섞이게 된 것이다.

10) 작금 위헌시비가 제기된 연유 중 상당부분은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우리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11) 영화나 비디오물 등도 표현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04. 4. 13. 2001조472 결정 참조).

12) 김철수, 헌법학신론(2005, 박영사) 485면 등 통설이다. 특히 20세기 이후 상업적 언론 즉, 매스미디어가 크게 발전하면서 이들로 대표되는 언론은 사회제도로 굳게 자리 잡아 오늘날 언론의 자유는 곧 미디어의 자유로 대표되고 언론은 권력의 제4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며 사회 경제의 발전과 정보 기술의 변천을 통해 그 내용도 확대 변화할 수밖에 없다. 과거 언론기본법은 이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언어·문자·상형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적극적 언론의 자유와 소극적 언론의 자유를 명료하게 표명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아무런 간섭없이 전파하고 표현할 권리, 소극적으로는 아무런 간섭없이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적극적 표현의 자유에는 정보원への 접근과 정보의 수집, 가공, 편집, 처리, 전파의 자유와 권리가, 소극적 표현의 자유에는 이른바 알 권리로서의 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 자기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열람·공개와 그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자기 정보에 대한 일반적 통제권 내지는 결정권(이른바 액세스권) 등이 인정되고 있다.

2.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 언론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충돌

표현행위는 필수적으로 타인의 인격이나 그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 그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파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명, 초상, 사적 비밀(privacy) 등을 공개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함으로써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또한 개인의 인격적 법익 외에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이 같은 인격적 가치 등에 대하여도 언론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제17조,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 제18조는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제10조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적 보장을 받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 법익이 우선하는가.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상호간에는 실정법상 원칙적으로 우열관계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995. 12. 28. 95헌바3, 1996. 6. 13. 94헌바20 참조). 따라서 이 문제는 헌법 스스로 해결하거나 법해석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바, 우리 헌법은 이에 관하여 헌법 유보와 법률 유보를 두고 있다. 즉,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직접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법률 유보를 예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모든 기본권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공동체 속에서 타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자유와 권리의 상대성에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개개의 경우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¹³⁾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보호법익 역시 절대적일 수는 없으므로 무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

13)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로는 민법, 형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군사기밀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가사소송법, 영화진흥법 등을 들 수 있다.

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제한이 이 같은 한계를 벗어난 경우 헌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

위와 같이 언론의 자유와 다른 법익 간에 충돌이 불가피하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나 그에 대한 제한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과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명언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이 같은 한계원리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한 실정법의 해석·적용 단계에서는 물론 국회의 입법형성 단계에서도 작용하게 되어 이에 위반한 경우 위헌판단을 면할 수 없게 된다.

(1)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내용이 중대하여 언론의 자유가 갖고 있는 본질적 내용 자체를 유명무실화한다면 언론의 자유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냐는 때와 장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여 보호하려는 법익, 표현행위의 수단과 방법, 이에 대응한 제한의 필요성 및 그 수단과 형태 등 구체적인 개개의 사정에 따르므로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2)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

표현행위가 개인적 법익이나 국가·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도, 정보의 전파와 자유로운 교환은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의 발

현 및 상호 감시와 비판,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유지에 불가결하므로, 설사 그릇된 정보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라도 원천적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전 봉쇄나 검열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로써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도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허가나 검열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 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방영금지 가처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4. 13. 2001초472, 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가9, 2000헌바36 참조). 따라서 사법판단에 의한 표현금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¹⁴⁾ 이때도 법원은 여러 가지 충돌하는 법익 상호간의 형량 등을 거쳐 제한의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의 판례이론으로써 정립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Rule of a clear and present danger)은, 당해 표현행위로써 해악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표현행위와 해악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 해악의 발생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¹⁵⁾

(3) 명확성의 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법규는 그 내용

14) 그렇다고 하여 사법부에 의하지 아니한 사전제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규제가 아닌 준사법적 독립규제위원회가 중립적 위치에서 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영화진흥법 소정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의 등급분류와 그에 따른 관람자의 제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금지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사한 제작·판매·유통금지 등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대법원 위 2001초472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0. 31. 2000헌가12 참조). 다만, 등급분류를 유보함으로써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15) 명백·현존 위험의 법리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물론 사후적 제한에 대한 정당화 요건으로서도 작용한다.

이 애매모호하거나 지극히 다의적이어서는 아니 되며, 그 기준과 요건이 명확하여 행정권력 등에 의한 자의적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는 물론 다른 기본권 일반에 대하여도 통용되는 원리로서, 특히 형벌 법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요건과 적용 범위에 있어서 과도하게 광범위한 재량성(광범한 해석 재량)을 내포한 제한 법규는 법치주의의 원리 및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그러나 언어나 문자 역시 사회적 산물이므로 시대, 사회, 문화, 관습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 다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나 그 의미가 일률적으로 수용되는 언어나 문자는 거의 있을 수 없다.¹⁶⁾ 이에 따라 법규의 해석·적용은 그 사회의 통상적인 교양과 사고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해 법규를 문리적으로 연역하여 그 의미를 확정지를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법관의 법 해석은 일정 부분 보충적인 입법작용으로서의 법 창조 기능을 하게 되나 이는 부득이한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도,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원리임을 천명하고 있다(1990. 4. 2. 89헌가113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만 제한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2000. 12. 14. 2000헌마695 참조), 국가가 법률에서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8조 등에 의하여 다른 헌법기관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위임사항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포괄적인 위임을 할 수는 없다.

(4) 과잉금지의 원칙

표현행위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그로써 보호되는 법익의 보호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한도 내로 그쳐야 하고, 그 보호하려는 법익과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법익 사이에 비례적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이 같은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고 불필요한 제한을 할 경우 자칫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성 내지는 헌법 적합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와 대립하는 다른 법익의 형량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이와 같은 법익 형량에 관하여는 특히 독일과 미국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어떤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양자간에 가치체계상 우열을 정할 수 없다면 제한되는 법익과 이를 제한하는 법익이 각각 최적의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비례적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실제적 조화의 원리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도 구 정기간행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언론의 자유는 바로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16) 헌법재판소도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하여 처벌법규에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 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000. 2. 24. 99헌가4 참조).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우리 헌법은 ...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은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1991. 9. 16. 89헌마165 참조) 법익형량의 필요성을 수용하였다.

언론의 자유가 자유 민주사회에서 차지하는 우월적 지위를 중시하여, 이를 제한하는 법규에 대하여는 다른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 법규와 달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2중 기준의 원리(principle of double standards)나 다른 법익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언론의 자유에 의해 다시 제

한된다는 상호제한의 이론, 허위성을 알거나 거의 부주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의 책임을 진다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이론도 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언론중재법의 위헌논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언론중재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05. 3. 23. 동아일보사 외 2인이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05헌마314)을 제기한 데에 이어 2005. 6. 9.에는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사 기자인 이한우, 홍익대 법학과 교수 방석호 3인도 이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05헌마555)을 제기하였다.¹⁷⁾ 이들은 동시에 신문법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 글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상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들의 위헌 주장(특히 조선일보사의 주장)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그 타당성을 논증하고, 끝으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려고 한다.

1.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위헌 여부

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규정

(1) 언론중재법 제4조는, 언론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제1항),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17) 위 3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조선일보는 신문 발행기업, 이한우는 조선일보 미디어팀장으로서 기자 방석호는 일반 신문 독자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언론사, 기자, 독자라는 정보의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의 입장에서 위헌론을 제기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이 사건은 국회의 입법행위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이며,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은 박용상 변호사, 최광률 변호사 등이며, 위헌이 청구된 조항은 제4조, 제5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4항, 제18조 제2항, 제6항, 제25조, 제26조 제6항,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1조 후단, 제32조, 제34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이다.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 제4조와 제5조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조선일보사 등은 언론중재법 제4조 제1항과 3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리는, 민주사회에서 여론의 형성은 다양한 사익이 표출·제시됨으로써 조정과 타협을 통해 하나의 결정이 도출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 참여하는 신문이 자기의 입장이나 의견보다 공익만을 대변하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직업윤리로서는 통용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방송이 아닌 신문에 대하여 까지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언론중재법과 신문법의 위 규정들은 언론기본법에서 유래하는바, 동법은, 언론은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보도·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제3조 제2항), 언론인은 공익을 대변하며 그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할 수 없다(제15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방송은 특정한 이익·집단·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허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31조 제2, 3항)는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1987. 11. 28.의 방송법(법률 제3978호)은 이 같은 언론기본법의 내용을 승계하여, 방송은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보도·평론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제4조 제2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방송은 특정한 정당·집단·이익·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이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제1, 3항)는 규정을 두었는데, 그 뒤 이를 대체한 2001. 1. 12.의 방송법(법률 제6139호)에도 이전과 비슷한 규정(제5조, 제6조)을 두고 있다.

(2)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 민주사회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통합은 민주적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그 여론시장에는 사상과 의사 자유로운 발현 및 유통이 보장되어야 하고, 단순히 특정 시점에서나 특정한 또는 특정 계층의 관점에서 그 같은 표현행위가 무가치하다거나 유해하다거나 틀리다거나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파와 유통이 규제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론이란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각자의 개인적 주장과 견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교류·비판·반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당초에는 그 어떤 주장이나 견해도 사적이거나 개인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 계층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표현행위가 제한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적 여론의 귀결점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의견이 지배적 견해로 통합, 승화되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주장과 견해는 공동선인 공공의 이익과 객관적 타당성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유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표명하는 때에도 그것이 사회적 타당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가지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을 표방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언론기본법과 방송법은 물론 언론중재법은 언론으로 하여금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향할 것과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방송의 경우 그 전파 자원이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 허가제를 취할 수밖에 없는 데에다(방송법 제9조 참조), 그 전파에 있어 수용자에 대한 무차별성이 두드러져 이 같은 요구가 더욱 강하므로 방송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이나 통신, 인터넷신문 등과 달리 많은 면에서 훨씬 넓고 깊은 제한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며, 조선일보사 등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3) 조선일보사 등은, 언론중재법의 위 규정들이 신문에 대하여 그 보도활동의 내용에 대한 규제를 이루나 이를 정당화할 요건이 결여되어 있고, 국가가 신문에 대하여 각 신문이 취하고 있는 일정한 노선이나 입장에 따라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전파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고 특정한 경향(tendency)을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어서 여론형성 과정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에 반하며, 공익이란 과정적 통합물이고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법에서 요구하는 공익이 무엇인지 명확치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하여만 그 같은 법적 의무를 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이 위와 같이 신문을 포함한 모든 언론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의 대변을 주문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론의 역할과 그것이 귀결되는 특성에 주목하여 언론으로 하여금 사주나 발행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공정하고 사회공동체의 이익에 조

화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향할 것을 직업윤리으로써 주문한 것일 뿐, 개개 언론이 처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이나 그에 따른 노선이나 입장, 이익의 표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언론은 비록 특정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종교적 노선과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주장과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그 주장과 견해가 진실에 부합하고 사회공동체로부터 정당성을 승인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직업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¹⁸⁾ 이 같은 의무는 언론이 가진 사회 내에서의 제도화된 위치와 지위, 헌법 제21조 제4항과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복리 차원에서 당연히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대상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 같은 직업윤리적 요구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언론중재법 제4조가 언론에 대하여 과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은, 사회제도로써 자리 잡은 언론이 그 존재의의이자 사명인 공정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개개 언론의 정치적·사회적·종교적 신조나 입장을 무시·배제하고 공익적 의견만을 추구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며(다만 개개의 경우에 있어 각 언론사의 지위, 당해 언론이 지향하는 목적, 영리성 여부, 그 배포 대상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관적·개인적 의견과 견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18) 예컨대 상속세 문제에 관한 경우 상류층에서는 세율의 인하를 주장하게 될 것은 당연하지만 그 경우에도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실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세율 인하의 정당성을 근로의욕의 증진,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등 객관적 시각에서 주장해야지 상속세 제도 자체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거나 재산을 갖지 못한 사회계층이 상속세제를 통하여 부의 사회적 배분이나 균등을 주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비이성적·비합리적 주장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미국의 신문은 통상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는 사실에 서만 표현될 뿐이고 일반 기사에서는 양쪽의 주장을 공정한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에서 주장하여 다른 의견과의 교류·절충을 통하여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언론의 고유한 기능과 사명을 선언·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¹⁹⁾

따라서 언론중재법 제4조가 언론활동에 대한 내용적 규제를 가한 것이라거나 그 법규의 내용이 모호하고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인격권의 보장에 관한 규정

(1) 언론중재법 제5조는,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인격권)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제1항),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제2항)고 규정하여, 인격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보호 및 위법성 조각사유를 밝히고 있다.

인격권은 아직까지 실정법에서 정면으로 규정된 바는 없었으나 판례와 법학 이론상 일찍부터 인정되어 오고 있고, 이는 헌법과 민법 등 실정법규의 관련 규정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다. 그런데 인격권은 위낙 그 범위가 넓고 문화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동하는 성질이 강해서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가 매우 어려우며, 그러한 성질상 그에 대한 개별적인 보호수단 역시 아직까지 확연하게 틀이 지워지지 않은 매우 약동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언론중재법은 처음으로 그 입법적 정의를 두게 된 것이다.

(2) 조선일보사 등은 위 법 제5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는 모두 인간의 존엄에서 연원하는 권리로써 추상적인 권리의 위계체계에서는 우열을 정할 수 없고 헌법상 그 어느 일방 또는 타방에게 원칙적인 우위를 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양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추상적인 해결원칙이 존재할 수 없고 이른바 실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이를 제한함으로써 보호되는 인격권의 법익이 개개의 경우에 상호 적절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 최적의 실효성을 갖도록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위 제5조 제2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인격권 침해가 이루어진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전적·예정적으로 인격권에 우위를 두고 두 법익 상호간의 추상적 유형별 이익형량의 여지를 박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 형량에 있어서도 법원이 사안에 따른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형량할 권한을 박탈하고 있는 등 입법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기본권은 상호간 대립·충돌을 피할 수 없고, 그 모든 기본권은 정당성과 존재의의를 갖는 만큼 양자가 충돌할 경우 언제나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19) 조선일보사 등은 언론중재법 제4조 등이 그에 위반한 경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으나 언론활동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나, 헌법을 비롯한 법규에는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사회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나 사회, 개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는 이른바 프로그램적 규정(예컨대,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헌법 제4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에 관한 헌법 제5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에 관한 헌법 제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등을 들 수 있다)이 다수 존재하며, 이 같은 프로그램적 규정으로부터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추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없으며, 부득이 두 기본권의 본질적 최저한을 보장하는 가운데 양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같은 조화를 이끌어내는 원리로서 법익(이익)형량 이론이 널리 수용되고 있는바, 그 이익형량은 우선 충돌하는 두 기본권이 내포하는 개별적 법익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본질적 최저한을 도출하는 과정인 일반적·추상적 이익형량에 이어, 어떤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침해의 수단, 방법, 그 같은 수단과 방법 외에 다른 대체수단을 갖고 있는지 여부, 침해의 주체와 객체, 침해로써 얻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종류²⁰⁾와 크기, 침해되는 이익의 수인한도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개별적 이익형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형량의 결과, 침해를 피할 수 없고 다른 대체수단이 없으며 침해되는 법익의 본질적 존재의의가 무시되지 않은 채 필요최소한 내지 비례적 적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면 침해행위는 적법성을 부여받게 된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당화 요건 즉, 위법성 조각사유는 위와 같은 이익형량을 배제하고 법관에게서 판단의 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선 위조항 중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불법행위법 이론에서 이의없이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자살방

조죄, 동의낙태죄 등과 같이 일정한 법익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에서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인격권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우선 인격권의 침해 대상이 공적인 관심사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 내의 것이어서 그에 관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침해되는 타인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침해로써 얻는 이익이 없거나 극히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됨을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나,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²¹⁾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20)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인격권을 유형화하여 각각의 유형에 따라 그 보호가치와 정도를 다르게 취급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바, 독일에서는 인격적 법익의 소재에 따라 이를 ① 개방적 영역, ② 사회적 영역, ③ 사사적(私事的) 영역, ④ 비밀 영역, ⑤ 내밀영역으로 나누고, 그 침해의 유형을 ① 초상이나 대화 등 자신의 인격적 표징(表徵)에 대한 묘사·공개 여부에 관한 결정권 침해, ②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스런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의 부당한 폭로, ③ 허위적인 묘사, ④ 생명과 신체의 자유 등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폭로와 표현으로 나누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① 사적 공간이나 사사(私事)에 대한 부당한 침입, ② 사사적 사항의 부당한 공개·폭로, ③ 허위적·왜곡적 표현, ④ 성명·초상 등의 부당한 도용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21)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4. 2. 27.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판시를 하였다(2002. 2. 11. 99도3048 판결). 또, 위 ‘진실한 사실’의 의미에 관하여는, 형법 제310조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1993. 6. 22. 92도3160 판결).

한편 민법에는 형법 제310조와 같은 규정이 없는데, 대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 영역에도 형법상의 위 정당화사유를 그대로 적용하여,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²²⁾(1988. 10. 11. 85다카29 판결).

그러고 보면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정당화사유(위법성 조각사유)는 형법 제310조의 그것과 표현방법만 다를 뿐 그 본령과 기본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은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와 각 그 본질이 같다. 다만, 언론중재법 제5조는 명예권뿐만 아니라 이른바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 명예권과 그 성질 및 침해의 수단, 태양이 다른 포괄적인 인격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관계로 명예훼손에 관한 정당화사유만을 규정한 형법 제310조와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²³⁾

따라서 형법 제310조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 태도를 종합하여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을 해석할 때, 명예나 초상 등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그 침해의 대상이 공적인 관심사로써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명예훼손적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화사유가 있거나 초상권 등 다른 인격권의 침해가 객관적으로 보아 부득이하게²⁴⁾ 이루어져서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 즉,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22)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와 같은 요건 외에 당해 명예훼손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화 사유인 정당행위를 명예훼손죄에도 적용하고 있다(1989. 2. 14. 88도899 판결).

23) 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에 관하여,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1996. 4. 12. 94도3309 판결 참조).

24) 여기서 부득이하다는 것은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는 모든 사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20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그 전형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위 대법원 88도899 판결 및 사과를 절취 당한 피해자가 앞으로 그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과수원 관리자와 동네 새마을 지도자에게 각각 그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소유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간 사실을 말한 경우 통상적인 사회생활면으로 보나 사회통념상 그 같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86도1341 판결 등을 참조. 그리고 여기서는 위법성과 책임성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는 없다.

해석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이런 태도는 입법자가 정한 법률을 되도록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는 법률해석 원칙에 비추어서도 옳은 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서 언급된 ‘공적인 관심사’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문구에 형식적으로 얽매어, 동 규정이 인격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표현의 법익과 인격적 법익 간의 이익형량을 배제한 것이라거나, 법관으로 하여금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그에 따른 조화적 해석 및 법익형량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 문구 중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어의(語意)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와 같은 의미로써 마치 법익형량에 있어 인격적 법익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이는 그 침해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형법 제310조와 대비할 때 그 같은 문구가 기본권 제한 법규가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명확성의 원칙이나 광범한 재량권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자와 언어 역시 사회적 산물인 만큼 그 의미는 사회통념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법원은 그러한 1차적 법 해석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²⁵⁾

다. 고충처리인에 관한 규정

(1) 언론중재법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신문법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것)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제6조 제1항),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으로 하며(제6조 제2항),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6조 제3항),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사항과 변경사항, 고충처리인의 연도별 활동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제6조 제4, 5항),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때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34조 제1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²⁶⁾

(2) 조선일보사 등은, 뉴스통신이나 방송의 경우 고충처리인 제도를 두는 것이 그 공공성 때문에 가 능하나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대하여까지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언론은 국가적·제도적 영역 밖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남겨져야 한다는 헌법적 명제에 반하고 신문의 제도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그와 같은 제도를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 내지는 제한에 해당하고 재산권에 대하여도 부당한 제한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옴부즈맨이라고도 불리는 고충처리인 제도는 원래 반관반민의 신분을 가진 옴부즈맨이 행정관청과 시

25) 대법원이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의미를 위와 같이 폭넓게 해석한 것이라든지 이를 민사적 영역에까지 도입한 것 역시 법원이 그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써, 이 같은 법 해석은 사법을 통한 법 발견으로써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26) 신문법은 일간신문의 경우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다(제9조, 제10조 제1항).

민 사이에서 시민의 고충과 민원 사항을 수집하여 행정관청에 전달하고 그 민원을 직접 처리해주는 것으로써 스웨덴에서 시작된 것인데, 스웨덴은 언론사와 시민 사이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1969년 자율규제기구인 언론평의회(Press Council) 내에 언론옴부즈맨(Press Ombudsman)을 도입하였다. 스웨덴 언론은 이미 1916년 자율규제기구로서 언론 공정실현위원회(Press Fair Practices Commission)를 설치하였고 이 기구가 위와 같이 언론평의회로 발전하였는데, 자율규제기구라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언론평의회 형식의 자율규제기구는 스웨덴 외에도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활동 중이며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 내에 설치된 프라이버시감독관(Privacy Commissioner)도 옴부즈맨과 유사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1967년 켄터키주 루이빌쿠리어지에서 사내 옴부즈맨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타임스 등에서도 이를 도입하였으나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²⁷⁾

우리나라에서는 1961. 9. 언론계 스스로 자율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윤리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언론피해자의 불만이나 권리 구제와는 거리가 멀었고, 일반 국민들은 그 존재조차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뒤 아사히신문사 등 일본의 여러 언론사가 사내에 자율적 불만처리기구를 설치한 것을 본받아 1993년 조선일보사가 이와 유사한 형태인 <옴부즈맨전화>라는 것을 설치하였고,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도 뒤를 따라 <독자

의 전화> 등을 설치하였으나, 그 신분과 직무가 독립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기능도 미약하여 충분한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중재법은 이 같은 국내 언론계의 미약한 자율규제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이 규모가 크고 피해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방송과 일반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에 한해 우선적으로 고충처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분과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사 등은 위와 같이 신문에 대하여까지 법률로써 언론사 내에 의무적으로 고충처리인을 두어 자율적 규제와 피해구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율적 규제기구로써 언론사 내에 두는 것이고, 그 운영과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및 임기와 보수, 대우 등에 대한 사항 역시 언론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언론활동의 내용에 대한 규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는 전혀 없다. 다만 이로 인해 언론사가 그에 따른 경제적 지출이 요구될 수 있으나, 무보수로 고충처리인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이를 유보수로 하는 경우라도, 언론보도 역시 일종의 상품으로써 그 하자에 속하는 왜곡, 부정확, 편파, 누락, 과장, 축소 등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그 같은 하자는 제조자인 언론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예방, 제거하여야 하는 것임은 제조자 책임의 원리 및 위험을 지배·관리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자가 그 위험을 예방, 제거하여야 한다는 위험영역 지배이론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이

27) 그러나 미국 언론이 자율규제 기능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언론에 대한 사법통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로 각 언론사는 재송을 피하고 재송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를 여러 가지 형태로 강구하고 있다.

는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21조 제3항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로 인해 언론사가 입는 불이익과 국민이 얻게 되는 이익의 크기,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그에 따를 경우의 비용과 효과, 언론사가 그로써 입는 제약이 언론활동의 본질과 기능에 미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비교衡量 할 때,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나 과도한 제한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

(1)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법익침해 사항에 대한 심의기관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제7조 제1항), 그 중재위원은 40인 이상 90인 이내로 하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머지는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3항).

위 규정은 중재위원의 숫자가 늘고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위원 정수 등의 변화만 있었을 뿐,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은 언론기본법 이래로 큰 변동이 없다. 언론중재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정기간행물법에서는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고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고만 하고 있었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을 추천할 때 5분의 1은 현직 법관을, 5분의 1은 변호사를 추천하였었다.

(2) 조선일보사 등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과 시민 간의 민사적인 분쟁에 있어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고,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거치는 사전 구제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는 민사적 법률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기관으로써, 사법기관에 요구되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의 독립성 및 중립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고, 그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법권의 주도적 관여가 없는 등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부여한 권한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침해에 대한 심의와 시정권고이다. 그리고 이미 본바와 같이 조정은 임의적 전치절차이며,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법에 의하여 국가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므로 당연히 국가기관이며, 합의제 관청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국가가 그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²⁸⁾ 중재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당연히 직무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다.²⁹⁾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수행하는 위와 같은 기

28) 언론중재법 제12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을 방송법 제36조에 의한 방송발전기금(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징수하는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인 것은 아니라 하겠다.

29) 언론중재법 제13조는 중재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능과 권한에 비추어 언론중재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³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신분과 직무상 독립 및 보장이 당연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 정당원,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후보자 등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해촉되며(제8조 제2, 3항),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제7조 제5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제7조 제4항),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수당과 실비보상만을 받을 수 있으며(제7조 제10항),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제8조 제1항),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과 마찬가지로 중재위원과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하여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따라서 언론중재법상 언론중재위원회는 비록 행정부 소속인 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해 위촉이 되나 그 신분과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이 같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하여 그 구성 및 기능 수행에 대하여 사법권(법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기능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일종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구성 및 기능 수행에 있어 사법부가 이를 직접 주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절차의 준용은 그 업무 수행자의 신분 보장 및 직무상 독립과 절차의 중립성 및 공정한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 기회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구성과 기능 수행에 있어 법원의 주도적 관여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바8 참조).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 외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각급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청(제결청)이 위촉 또는 지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선거관리위원회, 노동위원회,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등 그 성격이 유사한 준사법기관의 구성 및 기능 수행에 있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수행에 있어 사법권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위헌이 될 수는 없다.³¹⁾

(3) 한편 조선일보사 등은,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한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계속 중 그 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제18조 제6항에 대하여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은 법관에 준하는 자격과 독립성 및 중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30) 조선일보사 등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사법적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 우리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사법권이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무엇이 법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권능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원과 같이 사실관계의 조사·확정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권능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사법적 기관이라 함이 옳다.

31) 과거 정기간행물법의 시행령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제32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옳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시행령은 이를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만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다(제8조).

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언론중재법은 중재위원의 자격과 신분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손해배상청구라 하여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주장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전혀 이유가 없다.³²⁾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문자 그대로 당사자 간에 화해와 조정을 권유하는 것에 그칠 뿐 법원과 같이 분쟁에 관하여 중국적인 판단권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반드시 법관과 동일한 자격과 독립성, 중립성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24조에 의하여 중국적인 판단작용인 중재도 할 수 있으나, 이는 분쟁당사자 간에 먼저 중재에 따르겠다는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중재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도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으로써³³⁾ 처음부터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그 중재인에 대하여 법관과 같은 자격이나 신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한편 언론중재법은 중재결정에 대하여 중재법(제35조)과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제25조).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사 등은, 중재결정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중재법 제36조와 같은 중재결정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 언론중재법에 없는 것은 사법권에 의한 구제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입법적 실수에 해당하고, 이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문제로써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중재법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분명히 입법의 불비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나,³⁴⁾ 중재결정은 중국적인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취소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느냐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일 뿐 그 같은 입법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재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게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마.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

(1) 언론중재법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에게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4조 제1항),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단). 아울러,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제2조 제13호),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 제15호), 반론보도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6호)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사 등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배상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위법성요건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써 위헌이라고 주

32) 국가배상심의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등도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고 있다.

33) 중재법은, 중재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제3조 제1호), 중재인의 수와 그 선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되 그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법원이 간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2조).

34) 필자의 초안과 언론중재위원회의 법률안에는 중재결정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입법과정에서 무슨 이유로 빠졌는지 알기가 어렵다.

장한다.

(2) 사실관계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에 이는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명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다시 그 보도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객관적 사실에는 부합하나 전체적인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갑남과 을녀가 모년 모월 모시에 어느 호텔에서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나온 사실이 목격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보도내용에 언급된 사람이 갑남과 을녀가 아니거나 그 일시와 장소가 다르거나 팔짱을 끼고 나온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다는 진실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위와 같은 보도내용은 모두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나, 갑남과 을녀가 부녀관계라거나 그 같은 행동이 영화 촬영을 위한 연기이거나 다른 이유 때문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보도내용은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때 피해자의 입장에서선 전자에 대해서는 그 같은 사실이 없으며 보도내용은 진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보도를, 후자에 대해서는 그 같은 사실은 있지만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성 보도를 희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자를 정정보도, 후자를 반론보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하여 을녀와 연인

관계에 있다는 보도로 인하여 명예 등에 피해를 입은 갑남(피해자)은 어느 정도 원상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함이 없이 그와 다른 주장을 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도내용을 취소, 정정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그에 대한 부인이나 해명, 보충, 반박을 할 권리가 알 권리 및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바, 이 경우에도 반론보도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의 제정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 제764조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본법이나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에서 근거를 구하였고,³⁵⁾ 민법 제764조는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언론사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당연히 요구되는 반면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해서는 이 같은 요건은 물론 원 보도내용이 진실한지³⁶⁾ 여부를 묻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않느냐 여부 및 언론사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 그것이 위법한지 아닌지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양자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원 보도내용이 사실과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같은 보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표현행위자인 언론사가 스스로 그 명의를 이를 취소하고 정정하는 보도를 하여야 하고, 원 보

35)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이설이 없었으며 1995. 12. 30.의 정기간행물법은 명문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것임을 규정하고 있었다.

36) 양삼승 변호사는 사실과 진실의 개념을 구별하고 원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는 원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닌 사실 여부를 묻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2005년 봄호 참조), 그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다. 언론중재법이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하여 진실 여부에 관계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진실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언론사가 원 보도내용이 명백히 진실함을 입증한 때는 반론보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도내용이 사실에는 부합하나 설명의 부족, 일부 왜곡, 윤색, 상황의 과장 또는 축소 등의 방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진실을 위협하거나 진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 스스로 그 명의를 해명·보충하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작성하여 언론사에게 보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원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같은 보도내용은 당사자에게 크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도 이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정보를 계속 유통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단지 그 같은 보도에 언론사의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통한 원상회복을 거부한다는 것은 인격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인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사로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진실 여부가 불확정한 보도에 대하여는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고 반론보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지는 데 반해, 그보다 침해가 중대한 경우 이면서도 단지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정보도의무를 면제한다면 크게 형평의 원리에 반하게 되고, 또한 원 보도내용의 사실 및 진실 부합 여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손해의 정도 및 정정보도를 통해 언론사가 입는 피해 정도, 표현행위의 대상자가 가지는 자기에 관한 그릇된 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로서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 또한 언론사에게 부여된 표현의 자유와 똑같이 중요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언론사에게 비록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도³⁷⁾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원 보도내용을 정정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케 할 의무를 지운다고 하여 언론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과잉금지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인격권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익형량을 거쳐 헌법이 입법자에게 부여한 입법재량권 내지는 규범형성권에 기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독립시켜 그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한 것이 위헌이 될 수는 없다. 프랑스의 경우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는 물론 의견 등 가치평가적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허용되고 있고,³⁸⁾ 독일의 판례³⁹⁾는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그 보도 후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그 같은 침해 상태의 제거(취소, 정정)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원 보도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언론사의 진술형식으로⁴⁰⁾ 원 보도내용을

37)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를 상정해보건대,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언론사가 그 보도에 있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될 것이다.

38) 우리 대법원 1999. 2. 9. 98다31356 판결 및 2001. 1. 19. 2000다10208 판결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9) NJW 60, 672 Lachatte - Entscheidung

40)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그 본질을 반론보도청구권과 같은 것으로 보고 피해자 본인이 그 진술 형식으로 원 보도내용을 취소·정정하는 형태의 보도를 구하는 권리로 이해하나(김재협,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언론중재 2005년 봄호 참조), 정정보도청구권을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옳바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피해자의 진술 형식으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규정의 연혁과 입법취지를 옳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같은 정정보도는 가능하지도 않다. 이 같은 혼선은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법률안과 같이 그 보도의 주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취소·정정하는 것으로써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른 권리이고, 제16조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원 보도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⁴¹⁾ 원 보도를 보충, 해명, 반박하는 것으로써 역시 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른 권리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3) 또한 조선일보사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타인의 표현행위를 인용·전파한 경우 등에는 위법성이 없어 당해 언론사가 이를 정정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해 보도내용이 인용의 형식이든 직접적인 주장의 형식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고, 인용 보도의 경우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만 언론중재법은 언론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제15조 제4항 제5호), 이는 국회나 법원의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의 발언 내용 등에 대하여는 면책특권이 인정되거나 그 절차 내에서 당사자의 반론, 반박이 충분히 허용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같은 예외를 둔 것이다.

바.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

(1)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당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4조 제1항), 이를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제16조 제3항, 제17조 제3항). 법문에는 위 기간의 성질에 관하여 언급이 없으나 종래부터 이는 소멸시효기간으로 이해되어 왔다.⁴²⁾

한편 위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그 신청기간 역시 위와 같으나, 다만 피해자가 언론사에 먼저 그 청구를 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 간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제18조 제3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조정신청 역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제18조 제2항).

그리고 법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제외) 역시 보도를 안 날로부터 3월,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26조 제3항).

(2) 조선일보사 등은,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위와 같이 3월, 6월로 규정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에 비해 이를 현저히 단축한 것은 부당한 차별로써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이 규

41) 언론중재법에는 정정보도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반론보도의 진술 주체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언론중재위원회의 법률안에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 본질상 당연한 것이다. 과거 언론기본법이나 정기간행물법, 방송법에서도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 대신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다는 규정만을 둬으로써 실무상 많은 혼선을 가져왔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반론보도의 본질상 반론의 주체는 언론사가 아닌 피해자이므로 그 진술 주체가 피해자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다는 의미는 그것이 원 보도에 대한 반론인 취지를 알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42) 다만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 전의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있는 날로부터 6월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언론중재법은 안 날로부터 3월로 그 기간을 연장하였다. 이 기간은 언론기본법 이래 꾸준히 확대·연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⁴³⁾ 그 논의의 출발점을 불법행위책임에 두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설사 위 정정보도청구권을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경우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인 정기간행물, 통신,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 한하여 위와 같이 단기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데에는 그 보도가 독자 등의 뇌리에 존속하는 기간, 언론활동의 신속성, 안정성, 권리구제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등 여러 가지 법익을 고려하고 양자의 법익을 조화하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그것이 부당한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3) 조선일보사 등은 또,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조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배려함이 없이 법원의 제소기간을 언론사에 직접 청구한 때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정절차 진행 중 또는 그 절차 종료 직후 위 기간이 도과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제소할 기회를 잃게 되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만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직권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제소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었다. 언론중재법

은 종전과 달리 정정보도청구권은 물론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도 조정을 임의적 전치 절차화하면서 종전과 같은 유예기간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그 정확한 이유를 알기가 어렵다.⁴⁴⁾

위와 같이 유예기간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은 조선일보사 등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크게 부담스럽고 소제기에 상당한 제약을 주게 될 것이 사실이나, 이는 입법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위헌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입법자가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행사를 위와 같이 3월, 6월의 기간 내에 하도록 한 것은 위에서 본 바대로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데, 조정절차를 임의적 전치 절차화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굳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도 곧바로 제소할 수 있게 한 이상 피해자는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조정을 신청함이 없이 곧바로 제소를 함으로써 그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그러함에도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조정이 지연되어 소멸시효 완성이 우려되는 때에는 조정절차의 결과와 관계없이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 되므로, 피해자에게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케 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현저한 불이익을 가하여 재판청구권 행사를 무의미하게 하거나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⁵⁾

43)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은 피해자가 동법에 의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민법 제764조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언론중재법이 규정한 위 3가지 청구권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것임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민법 제764조를 근거로 위 3가지 권리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그러나 사죄광고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으로 위헌이 선언되었고,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진 후 민법 제764조에 의한 다른 청구를 하는 경우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대부분 그 청구가 배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44) 언론중재위원회의 법률안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두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고 제소기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조정신청 각하결정, 기각결정, 중재불성립결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동 법률안 제30조 제1항).

45) 모든 국민은 법의 무지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미리 그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고 조정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률이 이를 모르는 사람까지 가정하여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 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침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같은 문제는 조정신청 접수 단계나 조정절차 계속 중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적절히 고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제22조 제4항), 조선일보사 등은 이 경우에도 조정신청시가 아닌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야 제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이 있을 때까지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버리는 때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역시 향후 입법적 개선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⁴⁶⁾

사. 가처분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1)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에 관한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77조와 본안제소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제26조 제6항). 한편 동법은 위 청구에 관한 재판은 접수 후 3개월 내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며(제27조 제1항), 이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로써만 불복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이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6조 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본안소송절차가 아닌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그 판결 선고 기간도 3개월로 한 것은, 원 보도가 있을 때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정정보도 등을 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의 기억에 원 보도내용으로 인한 인식이 고착되기 전에 이를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신속한 원상회복을 꾀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2) 종래 언론기본법 이래 정기간행물법에 이르기까지 반론보도청구의 소에 관하여는 가처분 재판절차가 적용되어 왔고,⁴⁷⁾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1991. 9. 16. 89헌마165, 1996. 4. 25. 95헌바25 참조).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 정기간행물법 등에서 인정한 고유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재판절차는 당연히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본안소송절차에 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 규칙인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1996. 6. 27. 대법원규칙 제1432호)은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신청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2조 제4항).

언론중재위원회의 법률안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 계속 중 그 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허용하면서, 이 모든 소송절차는 본안소송절차에 의하도록 하되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소명만으로써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접수 후 3개월 내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되 소송의 신속 등을 위하여

46) 이 같은 소멸시효의 문제는 민사조정법 제35조와 같이 언론중재법에 조정신청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나, 언론중재법 제19조 제9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조정법 제35조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경우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최고)에 해당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민법 제174조에 의거 그로부터 6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곤란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기 어렵다.

47) 1995. 12. 30. 개정 전의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 언론기본법에서는 단순히 가처분 재판절차에 의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실무에서는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열 경우에는 판결로써 재판을 선고하였는데, 1995. 12. 30.의 개정 법률에서는 그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로써만 불복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변론을 열어 판결로써 선고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규칙은 종전에는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에는 심문을 하도록 하였던 것을 그 후에는 필요적으로 변론을 열도록 하였다.

필요한 경우 변론을 분리하여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조 제2항, 제34조 제2, 3항). 그리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는 의무적으로,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선고를 붙이도록 하였다(제34조 제4항).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상호간의 병합과 청구변경만을 수용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일반의 민사본안소송절차에 의하도록 하면서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는 가처분소송절차에 의하도록 하였다.

종래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가처분재판절차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합헌판단의 이유로써, ① 반론권 제도는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복잡한 실제적인 권리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 있고, ②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전치요건으로 규정하여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③ 또한 원칙적으로 반론권제도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진실 발견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면, 위와 같이 중재를 필요적으로 거친 후의 정정보도청구권(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심판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유별나게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부당한 규정으로 볼 수가 없고, ④ 정정보도 청구사건 심판규칙에 의하면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하되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쌍방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고, 또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의 제공만으로 소명을 대신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

하여 민사소송법 제70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칙의 각 규정은 보도내용의 진위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취소, 제소명령기간 도과에 의한 취소, 소환신청기간 도과에 의한 취소가 본안소송이 따로 없는 관계로 성질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복절차의 제한은 법리상 당연하며, ⑤ 피해자는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하여 즉시 반박을 함으로써 실효성있게 자신의 인격적 침해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가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만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이 그 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바, 반론이 너무 늦게 집행된 나머지 현안성을 상실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반론의 전제가 되는 원래의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반론권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인 공정한 여론 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데에도 반하는 것이 되고, ⑥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자체가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도구인 것일 뿐 진실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은 비교적 형식적인 사유에 기한 제한적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도록 완화되어 있으며, 또한 예외사유도 법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판단이 가능한 경우들이므로 반론권을 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한 그 심리를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본안절차에 따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처분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이 제도의 본질에 적합

하다는 것을 들었다(위 89헌마165, 95헌바25 참조).

(3) 조선일보사 등은,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 가처분절차에 의해 심판하도록 한 것은 변론과 증거조사 등 실체적 권리관계의 판단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심적(對審的) 변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반론보도청구의 소 공히 가처분재판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양자에 있어서 심리할 사항은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원 보도내용에 대한 허위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 외에는 전적으로 동일하다.⁴⁸⁾ 그런데 이때 원 보도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하느냐가 관건이다.

우선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재판을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필요적으로 변론을 열어 판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⁴⁹⁾ 조선일보사 등이 지적하는 대심적 변론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이란 재판기일에 양 당사자가 공개된 법정에서 출석하여 말로써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 즉,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인바, 가처분절차의 경우에도 이 같은 변론절차를 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언론중재법이 가처분절차를 취하면서도 필요

적으로 변론을 열게 하고 판결로써만 재판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결정으로 재판할 경우 이의신청에 의하여 불복을 하게 되어 원래의 재판을 하였던 법원이 다시 재판하게 되어 절차의 신속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는 본질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재판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므로 비록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가처분재판절차를 취하면서도 변론을 열어 언론사에 게도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누가 어느 정도까지 원 보도내용의 허위성(반대로 정정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도록 하느냐의 문제이다. 언론중재법의 법문대로라면 피해자는 원 보도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소명만 하면 되고 반대로 그 청구의 배척을 구하는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래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정기간행물법상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결과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었다.⁵⁰⁾ 그러나 이는 '명백히'라는 문구, 반론권의 본질과 의의, 소명에 의한 입증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한 사정을 종합할 때, 특별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사회 일반 보통의 교양

48) 언론중재법이 원상회복청구에 있어 정정보도청구권을 원칙적·주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원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아니 한다는 것 외에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론보도청구권에 준용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를 공히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청구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 보도내용에 대한 허위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언론사가 반대로 그 진실성 즉, 정정보도청구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것을 그대로 정정보도청구에 적용한 때문이다.

49) 언론중재법의 법문에는 변론의 요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판결로써 재판하고 이에 대하여 항소로써만 불복하게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34조는 판결로써 재판할 경우 필요적으로 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으며, 종래 대법원의 반론보도 청구사건 심판규칙에서도 필요적으로 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었다.

50) 한편에서는 '명백'이라는 문구와 반론권의 본질, 소명 등에 중점을 두어 별다른 증거조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사회통념상 보통인의 시각에서 보아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취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입증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을 가진 사람 누구라도 쉽게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¹⁾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소명만으로 언론사로 하여금 정정보도를 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내지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 것인가. 사실 언론중재위원회의 법률안을 성안할 때 정정보도청구권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독립시켜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한 것은, 원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이상 이를 정정하는 것은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원 보도내용의 허위성이 입증된 이상 언론사로 하여금 그 정정을 하도록 명하더라도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비례를 벗어나거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 또는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토대 위에 선 것이었다. 다만, 원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원 보도내용에 대한 보충, 해명, 반박에 그치는 반론보도와는 달리 언론사의 진술형식으로 원 보도내용을 취소·정정하는 이상 원 보도내용의 허위성이 전제되므로 이를 통상의 본안 소송절차에서 소명이 아닌 증명으로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로 입증케 하기 위하여 그 재판절차를 본안소송절차에 의하도록 하였다.⁵²⁾

기실 증명과 소명의 차이는, 전자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입증을, 후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개연성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럴 것이라는 정도의 입증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명의 경우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보증금을 공탁케 하거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적 수단이 허용되나(민사소송법 제299조), 법원의 소송실무상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아닌 변론을 열어서 심리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입증의 정도가 소명으로 완화되어 있는 때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증명이나 전혀 다름없이 처리되고 있다.

원칙에 충실하게 한다면 소명의 경우에는 변론을 연 때에도 재정증인(在庭證人)의 신문에서 나아가 증인의 소환·신문을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거나 외부 기관에 대한 조사촉탁,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법원 밖에서의 검증, 감정 등을 행할 수 없게 될 것이나, 현재 법원의 소송실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의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소명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선서로써 갈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⁵³⁾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재판을 변론을 열어서 판결로써 하는 이상, 비록 가처분재판의 본질로부터 그 입증의 정도가 소명으로 완화된다고 하여도,⁵⁴⁾ 소송실무상 실제

5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9. 6. 선고 93가합792 판결은 이에 관하여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정정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판시하였다.

52) 거기에도 손해배상청구까지 병합하여 한꺼번에 같은 소송절차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더욱 그 같은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도 종래 변론을 열고 판결로써 재판해온 사정을 고려하여 본안소송절차에 의하되 그 입증 정도는 소명으로 완화하는 예외를 두었던 것이다.

53)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및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은 명문으로 구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내지 제4항,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소명에 갈음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앞으로 언론중재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정시 위와 같은 증거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4)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절차에 관하여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제301조), 가압류의 이유와 그 청구채권은 소명하여야 한다(제27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 가처분의 이유와 그 청구권원도 소명을 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로는 증명과 다름없는 입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입증(소명)의 한 계에도 불구하고 원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소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⁵⁵⁾ 소명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언론사가 그 반대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탄핵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언론중재법이 정정 보도청구권에 관한 재판절차를 가처분절차에 의하게 하면서 그 입증의 정도를 소명으로써 족하게 한 것은 피해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적절치 못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신속성을 위하여 부득이 가처분절차를 취하면서도 언론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변론을 열게 하여 당사자 쌍방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서 대심적 소송구조 하에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등 자유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사로 하여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에 대한 심문만으로써 원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정정보도를 명하게 하는 대신 충분한 방어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법원의 소송실무상 이 같은 변론절차에서는 충분한 입증의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입증의 정도를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하게 하였다는 것만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 또는 과도한 제한이라거나 부당하게 언론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

(1)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

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고(제30조 제1항),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제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 제1항은 헌법 제21조 제4항과 같은 내용이다.

(2) 조선일보사 등은, 제30조 제1항의 규정이 모든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그 보호를 베푸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침해된 법익이 무거운 것이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가 있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것이 경험칙상 쉽게 추단될 수 있는 경우로서 행위자의 귀책사유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허용하는 등 신중하게 해석되어야만 하며, 이와 같이 해석·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합헌적이므로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함에 있어 행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법리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그 밖의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써 법원이 개개의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의 유무, 그 손해의 정도 및 침해의 동기와 경위, 수단, 회피 가능 여부와 주의 의무의 정도, 가해자의 자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의 여부 및 위자료 액을 정하게 될 것이며, 제30조 제1항의 문언이 다의적이거나 광범위한 등으로 특별히 헌법적 해석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정위헌 선언은 전혀 필요 없다.

55) 소명에 위와 같은 입증방법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소명이 오히려 증명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1회의 변론 기일에 모든 증인을 제정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외부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야만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소명만으로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3) 조선일보사 등은 또, 언론중재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전보적 기능에 머물던 손해배상에 경고적·예방적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론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특히 위자료 배상액의 고액화가 예상되는바,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의 위자료 인용 등 과도한 제재는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을 재량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여야 함에도, 제30조 제2항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자료의 산정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위와 같은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법원이 위자료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과 법익을 형량하고 손해와 배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내지는 비례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은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당연히 요구되며 이는 사법권에 부여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법원이 자의적이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써 당연히 허용될 수 없으므로 굳이 법원에게 그 같은 한계를 설정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⁵⁶⁾

자. 시정권고에 관한 규정

(1)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제32조 제1항),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32조 제2항),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나(제32조 제4항),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고(제32조 제5항), 언론사는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정당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32조 제6, 7, 8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기본법 이래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써, 언론중재법에는 피해자와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과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만이 추가되었다.⁵⁷⁾

(2) 조선일보사 등은, 위 규정이 법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언론에 대한 일반적 감시·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표현 및 언론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사 형성에 관한 헌법상의 여러 질서원리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위 법규정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적·공적 이익이란 극히 막연하고 자유 민주제제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여론의 형성은 국가적 영역과 무관한 사회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편파적인 언론에 대

56) 자의적이거나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배상이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하여 사실상 위 법 규정의 해석·적용의 지침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대법원은 일찍부터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는 한정합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부인하고 있다(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조).

57) 재심에 관한 사항은 종래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것을 법률에 포함시킨 것이다. 종래의 정기간행물법시행령에서는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두고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언론중재법시행령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 외에 이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소위원회규칙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하여는 대응언론에 의해 시정될 수 있을 뿐 공권력에 의해 시정되거나 국가적·공적 이익이라는 막연하고 획일적인 개념에 의해 재단될 수 없음에도 국가가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간섭함으로써 헌법상 미디어의 자유와 여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그것이 언론의 내용에 대한 규제임에도 이를 정당화할 요건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주권원리를 기본으로 대의제적 의사결정 체제를 취하는 헌법체제에서 공익에 관한 유권적 판단 내지 언론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심사·판정과 시정은 오로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수권받은 대의적 헌법기관만이 행할 수 있을 뿐 한 시점에서 다수파의 지지를 획득했음에 불과한 정권이 주도적으로 구성에 관여하게 되는 국가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또한 언론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다른 법익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사법부에 의해 행해질 수 있을 뿐 다른 어떤 기관도 이를 대신하거나 무력화 할 수 없고, 언론사의 청문청구권 등 적법절차가 보장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등 과잉규제로써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우선 언론중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정권고는 어디까지나 사후적 심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언론에 대하여 사전 규제 등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조선일보사 등은 시정권고 그 자체로써 언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시

정권고 사례가 쌓일 경우 방송허가의 갱신 등의 평가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나,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아닌 다른 어떤 기관(방송심의위원회 등) 내지는 시민단체 등이 같은 기능을 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써 과잉우려라고 할 수 없다. 언론 역시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그 정도의 감시와 비판까지 언론에 대한 규제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와 시정권고는 사전적 심사가 아니라 사후적 심사에 불과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언론활동으로 초래된 법익 침해에 대한 조정자적 지위와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자(언론중재법 제11조 제1항 참조), 교육자적 지위를 가지며 그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활동에서 자칫 초래될 수 있는 법익 침해의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언론보도시의 준수사항이나 고려사항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립하여 제시하고⁵⁸⁾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사후예방 차원에서 시정을 권고하는 것 역시 일종의 행정지도 작용일 뿐 언론활동의 내용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설사 이를 언론활동의 내용에 대한 규제라고 본다고 할 경우에도, 그 규제의 주체, 시기, 방법, 효력, 방송에 대하여 방송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또는 과잉규제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한편 언론에 의한 법익침해의 유형은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유형화하기 어렵고, 따라서 법률에서 직접 시정권고의 기준과 요건을 정할 수는

58) 언론중재법은 이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제32조 제3항), 그 내용은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지, 범죄사건 보도시 주의사항, 소년보호사건 및 가사사건, 성폭력 사건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나 사건본인의 공표 금지, 특정 종교에 대한 부당한 비방이나 지역감정의 조장 금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선정성을 부추기는 보도 금지, 자살·타살·마약·유괴 사건 보도시 주의사항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편파 보도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언론에 대하여는 대응 언론에 의해서만 시정될 수 있다는 조선일보사 등의 주장은 일면적 타당성밖에 없다.

없으므로, 위 법률규정에서 그에 대하여 세세히 규율하지 못한 것도 법률 유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국회가 법률로써 일정한 기준과 한계 내에서 다른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법 집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나 현실적 필요상 당연한 것인바, 국회나 사법부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여 기본권제한의 법리나 권력분립 및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국회와 법원의 통제 하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제를 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도 모두 국회나 사법부와는 독립한 기관으로써, 이들 기관에 의한 권한 행사가 국민주권주의나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고 시정권고 전에 해당 언론사를 심문하거나 청문의 형식으로 해명이나 자료를 제출받는 절차가 언론중재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시정권고는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청문절차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심절차에서 이 같은 기회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⁵⁹⁾

차. 소급효에 관한 규정

(1) 언론중재법 부칙은, 동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되(제1조), 이 법 시행 전에 행

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며, 다만 언론사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 및 조정·중재신청 기간⁶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제2조), 이 법 시행 전 이미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하여도 종전 규정에 따른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선일보사 등은, 헌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형벌 및 참정권, 재산권에 대한 소급입법의 금지 외에 일반적으로 행위시의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에도, 언론중재법은 동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구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제재를 가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언론중재법 부칙에 의하여 소급효가 적용되는 언론보도는 동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아직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계류 중이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바, 조정 및 중재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부분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인격권의 보호 및 그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의 요건, 인격권의 보호와 그 위법성 조각사유, 손해배상 문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의 법률규정에 비해 피해자나 언론사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미 종전의 법제도에 의해 형성된 신뢰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권의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을 요하지 않게 되어 언론사

59) 시정권고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 행정지도임을 감안하여 언론중재법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바, 조선일보사 등의 주장대로 그것이 실질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60) 법원에 대한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규정이 누락되었으나 이는 입법의 불비로써 이에 대하여도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되었지만, 소급입법이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 위 내용은 헌법 제 13조에서 금지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물론 헌법 제13조 소정의 형벌 및 참정권, 재산권 외에 기타의 권익의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상 무제한의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법의 개정시 소급효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이미 구법 하에서 형성된 법률관계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을 것이나, 개개의 경우에 있어 그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시(1995. 6. 29. 94헌바39 등 참조)와 같이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정도로 언론사에게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위헌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

가. 관련 법규와 이론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 등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위헌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근거는 국회의 입법작용에 의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여(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함과 동시에 그 심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제청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외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제107조 제1항과 동일한 규정(제41조 제1항) 외에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심사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당사자에게 위헌심사를 위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8조 제2항).

이로부터 우리나라 헌법은 위헌법률심사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한하여 이를 심사할 수 있고(구체적 규범통제) 일반적·추상적으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추상적 규범통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68조 제1항 본문) 국가기관의 공권력적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이나 대법원규칙에 대하여도 그 내용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위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를 긍정한 바 있고(1989. 3. 17. 88헌마1, 1995. 2. 23. 90헌마214, 2001. 5. 31. 99헌마431 등), 이에서 더 나아가 국회의 입법 또는 입법부작위 역시 공권력적 작용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위헌심사를 허용함으로써(1989. 7. 21. 89헌마12, 1996. 11. 28. 93헌마258, 1997. 6. 26. 96헌마148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판사건과 관계없이 직접적인 위헌심사를 해오고 있다.⁶¹⁾

입법자가 법률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것은 행정부의 처분이나 사법부의 재판 등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효력을 갖는 것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사법심사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정할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국회의 입법권 행사나 불행사를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뜻이 실정법상 분명치 않은 반면,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를 헌법적 보호 대상 밖에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헌법소원으로써 법률에 대하여 직접 위헌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성질상, ① 청구인이 당해 법률규정과 직접 관련되어야(자기관련성) 하고, ②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권리침해를 받아야(직접성) 하며 ③ 그 침해가 현재 발생해 있어야(현재성) 한다(헌법재판소 1989. 7. 21. 89헌마12, 1997. 6. 26. 96헌마148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충성의 요건은 필요 없다(헌법재판소 1989. 3. 17. 88헌마1 참조).

나.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부

(1) 자기관련성에 관하여

청구인인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 및 이한우, 방석호 등은 정기간행물사업자인 언론사와 기자,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바, 그 청구의 대상인 언론중재법 규정 가운데는 언론사 또는 일반국민에 대하여만 개별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 타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있다. 예컨대 제6조의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사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만 관련이 있고,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조정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인 방석호 등과만 관련이 있다. 조선일보사 등은 언론중재법의 각 청구 대상 조문을 각 청구인별로 특정하지 않은 채 그 전원이 그 전부에 대하여 공동청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기술적 편의를 위해 그리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각 청구인별로 자기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져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⁶²⁾

(2) 직접성 및 현재성에 관하여

청구의 대상인 언론중재법규 중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제4조, 고충처리인 제도에 관한 제6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제7조 제3항 등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제5조 제2항은 장차 구체적인 언론 보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있거나 형사상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위법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비로소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아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현재성과도

61) 최근 전 국민에게 대통령탄핵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가장 선명하게 알린 사건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심판(헌법재판소 2004헌마554)의 경우 동법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한 경우에도 그 주문은 직접 당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선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심사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

62) 즉, 같은 조항을 두고 어떤 청구인에 대하여만 각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관련이 있다.⁶³⁾

조선일보사 등은 이에 관하여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1997. 7. 16. 97헌마38) 및 “형법상의 법률조항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재량행위의 하나인 형법 조항의 적용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지만, 국민에게 그 합헌성이 의심되는 형법조항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우선 범하고 그 적용·집행행위인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1996. 2. 29. 94헌마213, 1998. 4. 30. 97헌마141) 등을 인용하여, 언론중재법의 각 해당 규정들이 청구인들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위축효과를 야기함으로써 직접성·현재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에서 재정신청의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소원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회정화위원회에 고발장

형식의 서면만을 제출하였을 뿐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직접성 및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1989. 7. 21. 89헌마12), 청구인이 자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바 없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항 등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제2조 제1항과 함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규정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며 이를 각하한 바 있다(1989. 9. 29. 89헌마53).⁶⁴⁾

만약 조선일보사 등의 주장대로 직접성 및 현재성의 요건을 대폭 완화할 경우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추상적 규범통제화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이 취하고 있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 법제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우리 법제가 표시된 입법자의 의사는 그 문자적 의미만으로써는 일의적으로 확정되기 어렵고 법원에 의한 법 해석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지며, 법규에는 입법자의 의사가 투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대적 변천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법규의 의미가 변화하는 수도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탄력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해 법적 타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제도를 이용

63) 법 시행 전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성이 문제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에 시행이 되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시행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부에 대한 논쟁은 필요 없을 것이다.

64) 물론 이 경우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아닌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한 것이지만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심사의 요건만 충족되면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하여 입법(법률)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위헌심사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이 같은 입법취지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의 원칙 등은 몰각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령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여(1989. 3. 17. 89헌마1, 1996. 11. 28. 93헌마258)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존중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조선일보사 등이 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언론중재법 조항 중 제4조, 제6조, 제7조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직접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써 부적법하다고 생각된다.⁶⁵⁾

IV. 결 론

언론중재법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를 위하여 종래 언론기본법 이래 반론보도청구권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20여년에 걸쳐 시행해온 피해구제제도의 경험과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언론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나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과잉금지라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 다소 입법적 불비와 체계적 정합성에 관한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아니 하나, 이 같은 점은 향후 법원의 해석과 판례 집적, 점진적인 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 사이에 갈등과 알력도 있었으나, 어쨌든 여야 합의로 법률이 제정·공포된 만큼 그 기본정신을 존중하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발현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언론과 국민, 정부 등이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절대다수의 의사로 제정한 법률을 그 시행도 해보기 전에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의 권위와 안정성은 물론 자칫 국가의 체면까지도 손상할 우려가 있다. 아무쪼록 모든 관계 당사자가 자중할 일이다.⁶⁶⁾ □

65) 또한 나머지 조항들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직접적·확정적으로 국민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조항이라거나 형벌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6) 언론기본법에 의해 반론권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도 언론으로부터 극심한 반발과 위헌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현재는 그에 관하여 누구도 이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격세지감이 있다.

X 파일 사건 보도를 지켜보며

박 형 상
변 호 사

I. 들어가며

최근 이상호 MBC 기자가 입수해 공개한 일명 'X 파일'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997년, 국내 굴지의 기업 책임자와 거대 언론사 사주가 나눈 이야기들이 담긴 도청테이프는 연일 모든 언론매체를 뜨겁게 달구었다.

X 파일 사건은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파장을 만들어 내며 번져나갔다. X 파일 보도 초기에는 도청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일부 언론들이 도청 자체의 불법성을 강력하게 거론하면서부터 논의가 양분되기 시작했다. 이 논의는 과연 도청테이프를 증거로 삼아 도청테이프에 언급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의 보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또한 초유의 국가정

보원 압수수색, 도청 특별법 혹은 특검법 논란,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검사 실명 공개 논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휴대전화 도청 가능 발언 등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짚어 볼 점이 있다. X 파일을 둘러싼 불법도청 범리논쟁 또는 정치권의 연쇄반응은 논외로 하고 언론보도 자체를 기준삼아 살펴보는 이야기다. 과거 그 어느 사건보다 언론이 깊숙이 개입한 X 파일 사건에서, 과연 우리 언론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논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고급 정보를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나는 질문에 쉽게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의 인격권 보호 간의 충돌을 다루면서도 정작 이에 관한 진지한 접근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쉽게 풀

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번 X 파일 사건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에 관한 '법리적인 측면'¹⁾ 보다는 위 사건개요를 소개하면서 언론매체중심의 '미디어 비평'이라는 측면 이른바 최장집교수사건, 소설가 장정일사건, 만화가 이현세 사건등도 법리적 측면과는 별도로 미디어비평 측면에서에서 언론보도 관행의 제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가처분신청사건의 판단개요

먼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내린 '2005카합1743호, 방송금지가처분사건 2005. 7. 21.자 결정'부터 살펴보자.

'신청인 - 홍석현·이학수, 피신청인 -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1) 이 사건은 피신청인의 이익신청에 따라 2005. 9.경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다.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사건에 관한 최근의 판례 기준으로는 '대법원 2005.1.17.자 2003마1477결정'을 들 수 있다.

최문순'을 당사자로 삼은 위 신청 사건의 결정주문은 다음과 같다.

〈주 문〉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아나운서, 기자의 육성이나 자료, 화면, 자막 등을 이용하여 (1) 별지목록 기재 테이프의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2) 별지목록 기재 테이프에 나타난 대화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3) 별지목록 기재 테이프에 나타난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5. 7. 21. 저녁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이나 그에 따른 후속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을 각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그 위반한 행위 1건에 대하여 각 금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별 지〉

"지난 1997년 대선직전 삼성인사가 일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나눈 대화라며 불법도청테이프를 매입한 것을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내용"

그런데 위 가처분사건에서 신청

인들이 구한 원래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신청취지〉(신청인)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저녁 9시 '뉴스데스크'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각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위반한 행위 1건에 대하여 각 금 3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결국 위 남부지원의 결정내용은 신청인들에 대해 '일부인용, 일부기각'을 내린 셈인바, 피신청인에게도 그 보도를 전면봉쇄시킨 것은 아니었기에 일정부분 숨통을 그나마 터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가처분신청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그런데 위 사건 신청일이 2005. 7. 21.자이고 그 결정 역시 그 신청당일에 곧바로 내려졌는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셈이다. 신청인은 그 신청당일의 조간신문, 즉 조선일보 2005. 7. 21.자 기사들을 그 소명자료로 삼았다. 조선일보의 신청일자 조간지면에서 "안

기부, YS 정부 때 비밀조직 운영, 정·재·언 인사들 대화 불법도청, '모 재벌·중앙일간지 고위층, 대선자금 지원논의' 담긴 MBC가 최근 확보한 테이프도 안기부 작품 드러나"라고 1면 톱으로 대서특필하였다.

피신청인 MBC는 위 신청사건에 상관없이 그 같은날 저녁 오후 7시 무렵에 '홍석현 테이프 입수에서 오늘까지'라는 제목으로 경위 보도하였으며, 그 결정이 내려진 후 2005. 7. 21. 오후 9시 뉴스데스크 시간에 "도청진상조사"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의 미립팀에 관한 상세한 보도를 하였다. MBC는 위 1심 결정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했는바, 그 이의신청서에서 "조선일보와 KBS 등에 의하여 이미 못볼 터지듯 구체적 보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유독 피신청인에게만 이견 결정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보도를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MBC는 이미 2005. 7. 초순경부터 "MBC 권·경·언 유착 이상호 X 파일 보도 불가 논란 - MBC 거대자본에 굴복하나"라는 외부 비판을 받고 있었다.²⁾

여기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2) 미디어오늘 2005. 7. 6.자, 기타 보도 초기시점의 사정에 관하여는 주간조선 2005. 8. 8.자 '두 기자, 한국을 뒤흔들다' 참조.

또다른 의문점이 생긴다. 위 신청 당일의 2005. 7. 21.자 조선일보 조간이 이미 대서특필했으며, KBS와 동아일보 등이 그 독자적인 보도로 앞서갔던 상태였기에 신청인들이 그 가처분신청을 구할 바에야 '조선·동아 등 주요일간지 및 KBS 등에 대한 속보금지'까지 포함시켜야 그나마 합당했던 것 아닐까. 바꾸어 말하건대 여타 주요언론에 의하여 공론화된 상태에서 MBC만을 겨냥한 방송보도금지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한 것 아닐까.

3. 이른바 사건의 본질론에 대하여

주요 신문·방송매체들 간에 이른바 집단적 공방전이 이루어졌는데, 사건의 본질을 놓고서 "사생활 보호, 인격권, 불법도청" 쪽으

로 파악한 집단³⁾과 "알 권리 및 보도의 공익성, 정·재·언의 돈과 권력의 결탁" 쪽으로 본 집단⁴⁾으로 양분되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의 2005. 7. 25.자 성명은 '불법도청과 불법 대선자금 제공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그 중간적 입장이었다.⁵⁾

문화일보 2005. 7. 28.자는 "X 파일 최대문제는 정경유착 - 45.8%, 도청행위 잘못 - 37%, 검찰수사해야 - 77.9%"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70%가 도청자료공개를 원했다는 여론조사내용이 발표되었으나, 그것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알자면 당신들 개개인이 그 도청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그 공개를 용인할 것인지를 함께 묻지 않으면 국민의 올바른 판단결과를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었다.⁶⁾

4. 전문가조언부분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의 '증거사용금지'에도 불구하고 'X 파일 도청테이프와 거기에 실린 또다른 범죄내용, 그에 관한 취재보도 행위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를 몇 마디 말로 단언하기는 쉽지 아니하다. 형사증거법과 언론법적 쟁점에 정치공학까지 겹쳐진 이번 일에는 어떤 전문가라도 상당한 강박감을 느낄만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이라도 국민 전체를 위한 중대한 공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조화로운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중하게 숙고해야 할 난제임에 틀림없어 보인다.⁷⁾⁸⁾

한편 이번 사건보도에서 대부분 언론이 여러 전문가와 외국사례

3) 중앙일보 2005. 7. 28.자. 윤평중, '감시사회와 민주주의 위기'; 중앙일보 2005. 8. 10.자. 송호근, '참여연대의 적은 불법도청세력'; 문화일보 2005. 8. 9.자. 박성조, '프라이버시와 민주주의 가치'.

4) 한겨레 2005. 8. 3.자. 안병욱, '테이프 공개가 해법이다'; 경향신문 2005. 8. 11.자. '정·재·언 유착 간데없고 정쟁만'; 한겨레 2005. 8. 26.자. 도정일, '사회는 어느때 실패하는가-도청사건에서 경악한 것은 권력과 돈의 결탁부분'.

5) 조선일보 2005. 7. 22.자. '불법도청과 불법적 대선자금 지원논의'라는 사설은 '도청문제는 도청문제대로 또 도청테이프 속의 대화내용은 그것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문화일보 2005. 8. 8.자. 박용상 변호사, '도청자료 공개 특별법은 위헌이다'.

7)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대로 전부 공개할 수도 없겠으며, 또한 무작정 전부 폐기해버려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청행위 수사와 도청내용 수사는 분리해야 할 차원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증거사용금지)는 당해사건의 피고인을 위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검찰로서는 위 4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증거를 따로 확보할 수 있다면 현행법 체제 내에서도 그 독자적 판단에 따른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후 재판절차에서 우리 헌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법관이 제시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기준 및 한계에 관한 중구적 판단에 승복하면 족할 일일 것이다. 즉 이번 사건을 디딤돌삼아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기준과 한계를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입법적 보완의 계기도 될 것이다.

8) 박종보 헌법학 교수는 중앙일보 2005. 8. 8.자, '도청행위 수사와 도청내용 수사'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에서도 찬반논쟁이

를 내세우고 있었으나, ‘형사소송법·증거법 분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전문가’를 정작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지 일부 기자들의 귀동냥식 식견에 의하여 ‘미국의 독수과실의 원칙(독수독과의 원칙)’만 소개되었다.⁹⁾ 그리하여 ‘미국식 자동적·의무적 증거배제법칙’만 소개되었을 뿐 한국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현황은 물론이고, ‘영국·캐나다의 재량적 배제법칙’이나, ‘일본의 상대적 배제법칙’은 아예 언급되지 아니하였다.¹⁰⁾ 우리나라 대법원이 “영장없이 수색·압수·검증한 증거에 대해서도, 즉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취득한

증거물이라도 조작된 것이 아닌 한 그 증거가치가 여전하다”라는 이른바 ‘성질·형상불변론’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일절 소개되지 않았다.¹¹⁾

즉, 한국법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를 ‘자백관련부분’과 ‘기타 증거물관련부분’으로 구별하고 있음에도 단지 미국식 독수과실의 원칙을 위주로 하여 비법률전문가들끼리의 제반 논쟁이 이루어졌다.¹²⁾

한국대법원의 ‘성질·형상불변론’ 자체¹³⁾를 객관적으로 소개해 주는 것 자체는 ‘성질·형상불변론’의 포기(즉, 판례변경)를 통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확대적용’을 주장하는 비판적 개선론과도 또 다른 차원이라 할 것이다. 필자도 개인적으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살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원칙적 확대적용을 주장하는 바이지만, 다만 ‘국기문란 수준의 공익침해적 중대범죄’라면 그 예외적 사정을 따로 취급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쪽이다.¹⁴⁾

여하튼 이번 사건에 관한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는 ‘쟁점분야별 심층전문가 현황’을 상시 파악해 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개인적 친분과 연고에 의지해서는 기껏 ‘구색갖추기용, 바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하여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수사의 단서로 삼는 것도 허용된다. 불법감청내용을 근거로 법원이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주 법원판례도 있다. 그러므로 검찰이 도청내용을 수사할 수 없다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미국법을 인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9) 동아일보 2005. 8. 6자 사설, ‘국가기관 도청, 독수의 뿌리를 뽑자’.

10) 법률신문 2004. 12. 9자. 조국,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조국(200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서울: 박영사.

11) 대법원 1987. 6. 23. 87도705,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32호등 판결. 우리 대법원은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른바 성질·형상불변론을 말하였다.

12) 만약 어떤 법률가가 ‘성질·형상불변론’ 판례를 의도적으로 숨긴 채 미국식 법적 원칙론만을 고집한다면 사악하기조차 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여부를 도외시 한 채 ‘중대한 인권침해’, ‘공익적 알 권리’차원에 머물고만 일부 법률가들의 진부한 논의 역시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었다.

13) 다음 판결들은 이른바 성질·형상불변론의 연장선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도3161판결은 ‘사인에 의하여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부여조건’에 관하여 “사인에 의하여 촬영된 비디오테이프가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첫째,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사본일 경우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소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13979판결은 ‘보험사의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증거수집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보충성 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내에 속하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4) 그 도청내용에 ‘국가원수에 대한 암살모의나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조직적 매수행위, 대선·총선방해 행위’ 등이 들어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그럼에도 그냥 폐기해버려야 하는가?

람잡이용 전문가'를 급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X 파일 보도에서는 '한국적 상황과 법적기준에 중립적인 형사법 전문가 조언'이 없거나 크게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물색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언론사가 현재 운용중인 '섭외담당 전문가' 제도를 전향적으로 일반화시킬 만하다.

5.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일부 언론에서는 절차적 정의론까지 등장하였다.¹⁵⁾ 그러나 우리 언론에 등장했던 그간의 사례, 즉 이른바 양길승 청와대부속실장 몰카사건을 비롯하여 '몰래카메라, 지문생체감식기, 함정수사, 지문날인, DNA 채증,

강제채뇨, 약물검사, 거짓말탐지기, 정맥인식기'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대로 기울여오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논의를 제기하기에는 그 설득력에 의문이 간다 할 것이다.¹⁶⁾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기문란 수준의 중대범죄자에게 형제'¹⁷⁾를 주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여긴다. 한편 '성행위를 해서라도 성매매 증거확보하라'라는 대검의 '함정단속지침' 논란¹⁸⁾이나 '경남교육청-교내사망 축소은폐지침' 논란¹⁹⁾ 등을 1회성 단발보도로 끝냈었던 것이 우리 언론보도의 현실이다.²⁰⁾

예컨대 DNA법에 의한 강제채혈이 미국에서는 위헌인 반면에 영국에서는 합헌인바, 우리 언론도 이런 사정에 대한 성찰적 안목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 공개에 대하여

'떡값의혹'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는 대세 속에서도 '이를 그대로 옮겨 전파 보도한 언론매체의 실명공개태도'를 두고서는 찬반²¹⁾이 엇갈렸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우리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익명보도의 원칙을 우선 존중하되 그 객관적 수사진척 또는 자료확보 상황에 맞추어 특정·공개하여도 뒤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쪽이나,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전형적 공인이라 할 검사의 공적 직무의 엄결성 문제가 이미 공론화되어 의심받기에 이른 만큼 노회찬 의원의 공개적 발표에 관련하여 우리 언론이 그 당사자 검사에 대한 직접

15) 문화일보 2005. 8. 29.자. 홍정기, '절차적 정의가 정법이다'. 그러나 한국 헌법은 미국 헌법처럼 '적법절차조항'을 직접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하위실정법 해석적용에서 미국과는 일정부분 편차가 생긴다.

16) 이번 X파일의 불법도청사건과 지난번 양길승 부속실장 몰카촬영사건은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이른바 양길승 몰래카메라 사건과 이번 X 파일 불법테이프 사건의 본질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절차적 정의론이 더욱더 적실성 있게 될 것이다.

17) 조국 교수는 "특히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범죄인이 누리는 형제가 너무 크다면 그 증거능력을 자동적으로 배제시키는 경우 형사정의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재량없는 배제법칙'보다는 '개별화된 정의'를 주장하는데, 그 역시 '성질·형상불변론' 자체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8) 동아일보 2005. 6. 7.자.

19) 경향신문 2005. 4. 30.자.

20) 기타사례 - 쓰레기투기방지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설치를 비롯하여,

동아일보 2003. 8. 1.자. '양길승 부속실장 청구술자리 몰카촬영, 누가 찍었을까 의혹 커져'.

조선일보 2003. 10. 27.자. '미8군 카지노서 도박 중인 의원님 - 송모 의원으로 추정되는 남자몰카사진'.

서울신문 2004. 2. 28.자. '선관위 정당행사에 녹음기 설치 물의'.

경향신문 2004. 2. 12.자.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 적발목적 몰카정당판결 - 보험사 파파라치 용인 논란'.

21) 동아일보 2005. 8. 24.자. '도청내용 공개는 관음증 부추기는 일'.

미디어오늘 2005. 8. 24.자. '떡값검사 실명보도 문제없다'.

적 취재를 통한 반론·해명기회 등을 배려해주면 그 보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7. 중앙일보와 삼성측의 사과표명에 대하여

중앙일보 2005. 7. 25.자는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하겠습니다”라는 사실을, 중앙일보 2005. 8. 5.자는 “중앙일보 기자들은 다점합니다(중앙일보 기자일동)”라는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일보의 ‘이재경 교수의 움부즈맨 칼럼’은 “중앙일보의 반성문에는 치열한 자기반성이 없었다”라고 지적하였다.²²⁾ 미국 뉴욕타임스의 반성내용 및 방식과 구체적으로 비교·비판한 위 칼럼은 유념해 새겨들 만하다. 한편 삼성그룹은 ‘삼성그룹 임직원 일동’ 명의로 대국민 사과²³⁾를 했는바, 여기에 대

해 “개인 홍석현과 개인 이학수가 그 신청인임에도 그들을 대신하여 중앙일보와 삼성그룹이 왜 나서느냐”는 반론²⁴⁾이 있었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사과문·사과사설(또 그 시점의 MBC의 돈받은 기자 등 징계사과문, 알몸공연사고에 대한 사과문 사례, 아동학대 수경사 미담 오보 사건에 관한 방송 3사 사과문 등)을 지켜보노라면 ‘언론사를 상대로 사죄광고문 게재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언론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죄광고문 게재청구’를 전면봉쇄하고 있는 우리 헌법재판소 태도²⁵⁾ 역시 이제는 달리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²⁶⁾

8. 취재기법 및 윤리측면에 대하여

MBC의 이상호 기자가 취재원

에게서 그 테이프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즉 ‘취재윤리 및 취재경위의 정당성’을 놓고도 논란이 생겼다.²⁷⁾ 그러나 이 부분은 이상호 기자가 불법도청을 직접 감행한 당사자도 아니기에 통상적·의례적 수준의 사례금 정도로 그 취재자료를 구했다면²⁸⁾ 비교형량론에 의하더라도 문제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가정적 상황이지만 이번 MBC의 취재방식 및 보도방법이 ‘국가정보원 쪽의 내부고발자’²⁹⁾에 의지한 ‘고발보도형식’을 취했다라면 이번 사건은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와 아울러 ‘취재원 보호 및 압수·수색의 문제와 언론의 자유’의 상관관계 논쟁으로도 옮겨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에게도 미국의 ‘리크게이트’ 사례처럼 취재원 보호권 여부 및 기자의 증거거부의 문제도 생겼을지 모른다.³⁰⁾

22) 중앙일보 2005. 8. 19.자. 움부즈맨 칼럼

23) 한겨레 2005. 7. 26.자.

24) 한겨레 2005. 7. 27.자. 사설.

25)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 160호.

26) 일본 NHK의 사죄사례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태도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27) 미디어오늘 2005. 8. 3.자. ‘이상호 기자 소환은 본말전도’; 2005. 8. 10.자. ‘현직기자 직무상 취재행위 조사 자체가 이례적’. 기자협회보 2005. 8. 31.자. 설원태, ‘취재기법과 언론윤리’.

28) 이점에 관련하여 미디어오늘 2005. 8. 3.자는 ‘박씨, 공개해야 한다는 확신에 대가없이 체보 - 박씨 변호인 주장’이라고, 중앙일보 2005. 7. 29.자는 ‘MBC 박인회 씨에게 비행기표 제공’이라고 보도하였다.

29) 경향신문 2005. 7. 27.자. ‘최신 X 파일을 얻으려면’에서 고승덕 변호사는 “내부자 고발을 장려하고 공익을 위하여 공표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 우리 헌행 소송법체제(형사소송법 제149조, 민사소송법 제315조)에서는 기자의 증거거부권 자체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구 언론기본법 입법선례에 비추어 입법론적으로 보완해 볼만하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15조 2호의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의지하여 기자의 증거거부권을 입론하는 견해도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언론인의 증거거부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9.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대하여

한편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에서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관련한 여러 지적과 더불어 다른 한편에서는 국정원의 미래나 국정원 안보수사의 노하우를 걱정하기도 하였다.³¹⁾ 한편 우리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1항의 비밀이라 함은 ...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그 비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한바 있다.³²⁾

10. 특별법·특검법 논란에 대하여

‘여당의 특별법 원칙’과 ‘야당의 특검법원칙’을 놓고 그 위헌논란이 생겼는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구체적인 법안내용이 아직 제시·상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찬반논란은 무의미한 측면이 있다. 거기서 전제되는 ‘공개’ 개념의 구체적 기준과 ‘공개의 한계(예외)’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도 아니한 상태이기에 아직은 전면반대하거나 전면찬성하기에는 이르다 할 것이다. 결국 ‘테이프 처리에 관한 특별법 또는 특검법’ 정도가 되겠는바, ‘그 처리의 기준과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그 실질적 관건이 될 것이다.

III. 나오며

-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이제 필자의 관전기를 정리해 본다.³³⁾

첫째, ‘언론사 내부 시스템’ 부분이다. MBC가 먼저 취재했다지

만 막상 조선일보가 터뜨리고 말았다. 쫓기는 듯 서두르다 엉거주춤 한 MBC 태도를 보면, 과연 기획·취재·보도단계에 걸쳐 일관성있는 사전 검토 작업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복잡다단한 사회적 이해관계 앞에서 ‘어깨너머 결눈질’이나 ‘나홀로 감투정신’, ‘한탕식 한건주의’로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사내 상근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예상되는 상황전반을 체크해 두어야했다. 가처분신청을 아예 앞지르거나, 가처분인용이라는 법원결정에 대한 우회로를 마련해두거나 ‘언론사 간 공조체제’도 생각해 볼만했다. 그 보도방법에 있어서도 ‘제2·3취재원’을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거나, ‘내부자 고발형식’을 강구해 볼만했으며, ‘MBC의 입장’이라는 공식적·공세적 발표문도 미리 준비해 둘만 했다.³⁴⁾

둘째 ‘심층적 탐사보도’ 부분이다. 기실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면 톱 대서특필³⁵⁾이

31) 중앙일보 2005. 8. 2.자. 제성호,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겨레 2005. 8. 12.자. 한상희, ‘국정원 개혁의 해법’.

문화일보 2005. 8. 18.자. 김상겸, ‘불법도청과 국가정보원의 미래’.

동아일보 2005. 9. 1.자. 이강혁, ‘국정원 안보수사 노하우 살려야 한다’.

32) 대법원 2003. 11. 28. 2003도5547.판결.

33) 경향신문 2005. 8. 29.자. 미디어비평, 박형상, ‘X파일사건 관전평’.

34) 그레도 기자와 언론으로서 제 ‘밥값’을 했다고 본다. 부분적으로 깔끔치 못했어도 이번 ‘역할’이 아니었으면 ‘저 야비한 국가 폭력과 막가파식 재벌의 횡포를 어찌 알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다.

35) 동아일보 2002. 1. 25.자, ‘국정원, 첨단장비 50대 투입, 요인 휴대전화 광범위 도청’.

한 두 번이 아니었다.³⁶⁾ 그럼에도 매번 일과성 소나기이자 용두사미 식이었다. 후속보도는 일절 없었고 어떤 기자도 확인추적하지 아니했다. “정통부 장관이 거짓말했다”고 질책하기에 앞서 취재기자들 스스로도 머쓱해야 할 일이다. 출입처 보도자료를 베껴 쓰거나 정부발표문을 옮기기에 바빴던 그간의 직업적 타성을 반성해야한다. 차제에 탐사보도팀을 위한 ‘사내 아카이브(자료지원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고발기자나 시사 PD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지금의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셋째, ‘언론의 정파성과 조급성의 폐해’ 부분이다. ‘외부칼럼진 구성 및 필자동원방법, 사실보도와 논평보도의 혼재’ 속에서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날로 짙어만 가고 있다. 자사지면을 ‘사회적 공론장’으로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어보인다. ‘관계자, 고위관계자, 당국자, 핵심당국자, 소식통’을 빙

자한 무차별적 익명보도의 경향도 이런 정파적 공세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동아일보 2005. 8. 5.자는 “검찰 ‘내용수사 안 한다’ 확정”이라고 1면에서 대서특필보도하고 있으나 정작 그 인용된 취재원이라야 고작 ‘검찰, 검찰고위간부, 검찰관계자’ 등에 불과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말이 다 달라서야’라는 조선일보 2005. 7. 27.자 사설도 너무 성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사회라면 적어도 사건초기에 있어서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기본시각은 서로 다를 수도 있겠는바, 원칙정립 후 집행단계에서의 혼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넷째, 공인과 사생활의 보도한계이다. 평소 ‘공인에 관한 알 권리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공기로써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던 언론인이나 관련학자들이 이번 X 파일 논쟁과 관련하여 그 견해

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아니한 점도 아쉬운 일이다. 아마 정파적 언론으로부터 그 인터뷰 자체를 요청받지 못했을 것으로도 짐작간다. 이번 X 파일 사건은 우리 사회가 ‘공인의 사생활 한계’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논의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³⁷⁾을 말해준다. 조선일보는 “2005년도 미국의 폴리처상(탐사취재부분)은 ‘전 주지사의 30년 전 성학대 사실’을 파헤친 무명주간지 기자가 수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일부언론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한국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욕구가 한국이 본받고 있는 미국의 프라이버시보호 욕구보다 훨씬 더 높게 부풀려져있다고 여겨질 정도이다. 공인 및 공적관심사에 연루된 사생활 보도를 일절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결단이라거나 법적기준이라고는 추호도 여기지 않는다.³⁸⁾ □

36) 동아일보 뉴스플러스 1998. 5. 21.자. ‘별거벗은 사생활 도청천국’.

조선일보 1998. 10. 17.자. 김대중, ‘대형이 너를 엿듣고 있다’.

조선일보 2001. 9. 3.자. 김주덕, ‘도청공화국’.

조선일보 2001. 12. 3.자. 사회면 “첫... 도·감청 공포확산, 김경간부도 타인 휴대전화 사용, 대기업 회장 ‘도청노이로제’ 호소”

37) 조선일보 2005. 7. 23.자. 사설,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될 공익보도의 원칙’.

경향신문 2005. 7. 26.자. 이대근, ‘한국언론은 죽었는가’.

38) 박경신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법제를 비교검토한 후 “한 사회가 상충하는 타법익에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얼마나 보호하여 줄 것인가는 순수하게 소셜엔지니어링의 문제이며 공공의 결단, 국민의 결단의 문제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경신(2005), 명예·초상·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헌법실무연구」 제5권.}

“시대처럼 울 아침”을 기다리던 독립운동가의 복권

신 찬 균

서울중재부 중재위원, 전 세계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

유신치하에서 수차례 옥고를 치렀던 리영희 선생은 6.25참전 예비역장교다. 그 공로로 화랑은성훈장까지 받았으니, 이른바 역전의 용사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민주화운동이나 군사정부가 조작한 필화사건으로 구속될 때마다 리 선생이 뒤집어쓴 혐의는 으레 반공법 위반이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다.

어느 날 기관에 연행되어 심문을 받을 때였다. 진술조서의 상훈란에 곧이곧대로 훈장 이름을 적었더니 앞에 앉아 있던 젊은 수사관이 몹시 놀라더라고 자서전은 전한다. 아마도 수사관은 이른바 ‘반체제’ 인사인 리영희 선생이 구속되기까지는 나라를 위해 도무지 일한 적도 없고, 오히려 반국가적인 경력만을 지녔으리라고 지레짐작 했던 것 같다.

그 훈장에 대해서 리영희 선생은 평소에 상훈번호나 받은 날짜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육군본부에 문의해 확인해보려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그 훈장이 나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입증하는 데는 아무 효과도 없다는 사실은 민간인 생활에서 내가 여러 번 겪은 국가 권력의 조사과정에서도 분명했다”. 리영희 선생의 훈장에 대한 소감이다. 훈장이 애국정신을 입증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훈장은 정부가 나라와 사회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표장이다. 건국 이래 많은 사람들이 훈장을 받았다. 당연히 받아야 할 애국지사들도 많았지만, 때로는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둔갑되어 버젓이 받기도 했고 정작 목숨을 내놓고 일제와 싸웠어도 그 노선에 따라 서훈이 보류되기도 했다.

우리 현대사는 과거 청산이 된 적이 없다. 최근 KBS가 일제치하에서 그 앞잡이가 되어 동족을 사지로 몰아놓은 대가로 훈장을 받았던 친일파의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기이하게도 당대의 본인은 물론 그 후손들까지도 해방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평평거리며 살았고 오늘날까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하고 민족을 배반하고 친일을 하면 자손 대대로 온갖 호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의 현대사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광복 60년. 그 길고도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가로 받들기는커녕 좌파계열이라는 이유로

우리 역사 속에서 외면되어 왔던 사회주의 계열인사에게 서훈이 내려졌다. 님 웨일스의 소설 '아리랑'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김산과 조선노동당 책임비서를 지낸 김철수 등 47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동안 이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은 남과 북의 다른 이념의 잣대로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오직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면서도 잊혀져야만 했던 이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의 복권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훈장을 받을만한 역사적인 인물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욕과 불의의 역사 속에서 무분별하게 주어진 서훈도 이번 기회에 치탈되어야 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수많은 시민을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학살한 최고위층이 국가 기틀을 공고히 했다는 이유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사실이 국회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적이 있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시위군중을 살상하던 신군부세력은 이를 가리켜 '충정작전'이라 명했다. 원래 작전이란 적과의 직접적인 교전행위일 때만 사용되는 군사용어인데 진압군은 시민 학살행위를 작전이라고 위장한 것이다. 국민을 짓밟고 권력을 찬탈하는 만행을 저지른 인사들이 광복 이후 안중근, 김구, 안창호, 조만식 선생 같은 당대의 애국지사들이 받았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어떤 공로를 들어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자기 가슴에 달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나라에는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현 등 5등급의 무공훈장이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무력진압에 나선 관련자 가운데 훈, 포장 및 표창을 받은 사람이 많다. 이 무공훈장은 당시 출세가도를 달리는 데 큰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그 때 총칼을 휘둘렀거나 지휘를 한 신군부 세력에게 주어진 훈장은 지금까지도 회수되거나 치탈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상훈법에서는 "서훈공적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할 때는 서훈을 박탈할 수 있다"고 했다. 당연히 훈장은 박탈되어야 한다. 파란만장의 역사가 굽이쳤던 우리 현대사에서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며' 불의와 싸우다가 희생되고 영어의 몸이 되어 고난을 겪었던 인사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을 탄압했던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 역시 적지 않다.

우리 주위에는 청산되어야 할 역사의 찌꺼기가 수없이 널려 있다. 어찌 훈장뿐이겠는가.

일제 치하에서 앞잡이가 되어 애국지사를 잡아 가두고 훈장을 받았던 친일파나 광복 후에도 여전히 고관대작이 되어 불의의 역사를 거침없이 만들었던 그 후손들은 지금도 건재하다. 수년 전 이완용 처벌문제가 국회에까지 갔으나 호지부지됐던 아픈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다. 민족의 정체성 문제는 소급입법에 얽매일 수 없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 절대적 명제가 될 수 없다. 법이 역사의 장애일 수는 없지 않은가. 일제 앞잡이로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반성은커녕 더 큰 소리로 역사를 왜곡하는 친일파를 청산하는 일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 온 나라, 온 국민이 불법이고 군사반란이라고 규탄하는 군사반란 주동자들의 사법처리 역시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우리 시대의 과제다. □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할 필요성을 긍정한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일본 오사카고법 독물카레사건 판결 -

집단적 과열취재(미디어스크럼)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편집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 채용 등 취재보도의 방식을 둘러싸고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일본 와카야마시(和歌山市)의 독물(毒物)카레사건에서 살인 등의 혐의를 받았던 林眞須美 피고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일본 오사카(大阪)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6월 28일 사형을 언도한 1심·와카야마 지방법원 판결(2002년 12월)을 지지,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할 필요성을 긍정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서지방의 민방 6개사와 NHK 오사카 방송국은 즉각 판결을 비판하는 견해를 발표했으며 林 피고는 상고했다.

1998년 7월 와카야마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여름제사 모임에서 카레를 먹은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비소(砒素)중독을 일으킨 데서 비롯되었으며, 동년 12월 카레를 조리한 냄비에 비소를 섞어 넣었다는 이유로 林 피고가 살인죄로 체포·기소되었다.

이 사건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민방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편집한 비디오테이프의 일부를 林 피고의 진술증거로 신청하고, 와카야마 지법이 이를 채용한 것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고법에서는 새로 증거로 제출된 비디오테이프는 채용하지 않으면서도,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보도의 자유는) 본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헌법상의 다른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자유가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는 일도 하는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도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7월 5일자)

□

만화책의 노골적인 성표현은 실사표현물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더라도 외설로 인정될 수 있다

- 일본 도쿄고등법원 판결 -

노골적인 성표현을 한 만화를 판매하여 외설도화(猥褻圖畫) 반포(頒布)혐의를 받은 출판사 '松文館' 대표 貴志元則 피고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일본 도쿄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지난 6월 16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언도한 2004년 1월의 1심·도쿄지방법원 판결을 파기, 「본건 만화책이 노골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사(實寫)표현물이 갖는 외설성의 정도에 비하면 양자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형하여 벌금 150만엔(약 1천500만원)을 언도했다.

1심·2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동사 편집국장, 전속계약의 만화가와 공모하여 2002년 성교장면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만화책 약 2만부

를 판매했다. 피고 측은 ① 외설물 반포 등의 죄를 규정한 형법 제175조에 의한 표현규제는 위헌이며 ② 만화책의 성적자극의 정도는 실사표현물보다 강도가 약해 외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헌주장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과거의 최고재판소 판례 등을 답습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외설물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만화는)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성적자극을 완화할 수 있으나 본건 만화책의 경우 묘사가 지나치게 생생하여 독자의 정서나 관능에 작용을 주고 있어 사상성·예술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 외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만화책이 외설도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에서 처음으로 다투어진 케이스로 많은 주목을 받아 왔었다.

(신문협회보 2005년 6월 21일자)

□

약해(藥害) 에이즈 보도로 피소된 두 언론사중 마이니찌 신문사는 승소, 新潮社は 패소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

약해(藥害)에이즈 문제를 고발한 일련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安部英 전 帝京대 부학장(2005년 4월 사망)이 마이니찌신문사를 상대로 4천 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지난 6월 21일 安部 씨의 상고 수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기사의 진실성과 진실 상당성을 인정하여 安部 씨의 청구를 기각한 2심·도쿄고법의 판결(2003년 3월)이 확정되었다.

1심·2심 판결에 의하면 문제가 된 것은 「가열혈액제제(加熱血液製劑)의 개발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혈우병(血友病)환자에게 에이즈 감염피해가 확대되었다. 지연의 한 원인은 安部 씨가 연구가 지연되고 있는 메이커를 위해 임상실험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정(調整)'을 한 데 있다」고 지적한 1988년 2월 5일자 마이니찌신문 조간.

이어 이 문제를 다시 취급한 1996년 3월 12일자와 16일자 각 조간과 선데이마이니찌(17일호) 기사도 문제가 되었다.

2심은 모든 기사에 대해 진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安部 씨가 자신의 성과가 아님에도 혈우병 치료에 관한 성과를 가로채기 했다고 논평한 선데이마이니찌의 보도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학회 제1인자인 安部 씨가 신랄한 논평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표현의 적절성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위법성에 저촉될만한 인신공격이나 인격비난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6월 16일 마이니찌신문사에 대한 승소결정과는 달리 같은 문제를 둘러싼 週刊新潮의 보도로 인해 安部 씨에게 피소된 新潮社(발행원)에 대해서는 3백 만엔(약 3천 만원)의 지불을 명한 1·2심 판결을 지지,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언론사 측의 패소를 확정시켰다.

(신문협회보 2005년 6월 28일자)

□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논평도 면책될 수 있다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

약해(藥害)에이즈 문제를 둘러싼 잡지기사와 단행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安部英 전 帝京대 부학장이 저널리스트인 사쿠라이 요시코를 상대로 1천 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6월 16일 사쿠라이 씨에게 4백 만엔의 지불을 명한 2심·도쿄고법 판결(2003년 2월)을 파기하고 安部 씨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저널리스트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중앙공론」(1994년 4월호)에 게재된 「내가 방청한 '도쿄 HIV 소송' 재판(최종회)」 제하의 기사와 이 기사 등을 근거로 집필한 단행본 「에이즈범죄 혈우병환자의 비극」(초판 1994년 8월 발행).

필자 사쿠라이 씨는 安部 씨가 ① 가열혈액제제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던 「ミドリ十字」(당시)에 맞춰 임상실험을 늦췄다 ② 임상실험시기에 재단설립을 위한 기부를 제제(製劑) 메이커로부터 모금했다 ③ 제제 메이커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열제제의 승인에서 뒤처지는 메이커가 생기지 않도록 임상실험을 지연시켰다는 등의 사실을 지적한 다음,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安部 씨는 메이커에 대해서는 절대적 우위에 있었으며 그러한 입장에서 기부를 강요했다면 큰 문제이다. 安部 씨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금전에 매혹되어 의사의 정신을 팔아버렸는가」등의 의견과 논평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사쿠라이 씨가 취재를 통해 ① ~ ③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하는 의견이나 논평의 표명도 그 범위를 일탈(逸脫)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6월 21일자)



소년범죄보도에 대한 미·일 언론인 비교조사에서 실명·익명의 판단에 현격한 차이 나타나

소년범죄보도에서 관련 소년의 이름을 실명(實名)으로 하느냐 익명(匿名)으로 하느냐는 문제는 오늘날 각국의 사회사정, 문화 등에 의해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언론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현안 중의 하나다.

지난 2004년 12월에 실시된 미국과 일본의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소년범죄보도 의식비교 조사 결과, 양국의 언론인들 간에는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소속사의 실명보도 최저연령 방침에 대한 질문에서 일본 언론인들은 소년의 실명보도를 금지한 소년법 61조 규정대로 20세라고 답변한 반면 미국 언론인들의 회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하고 있는 탓인지 최저연령을 18세로 한다는 회답(25%)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10여 개의 회답으로 갈렸다.

둘째, 최저연령에 대한 개인 의견에서는 양국

언론인들 공히 최저연령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 59%, 일본 24%)는 의견을 비롯하여 11세부터 20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미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소년범죄 8건 (미국 3건, 일본 5건)에 대한 소속사의 실명보도 여부 방침을 묻는 질문에서는 일본이 “회사는 실명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일치된 회답을 보인 반면 미국은 전체적으로 “실명보도를 한다”와 “모르겠다”는 2개의 회답으로 갈라졌으며, “익명보도를 한다”는 회답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수로 나타났다. ‘회사방침’에서는 미·일간에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실명보도를 한다”는 회답이 과반수를 넘은 것은 「17세의 소년이 연설 중인 국회의원을 칼로 살해한 사건」, 「17세의 소년이 고속버스를 납치하여 승객 1명을 칼로 살해한 사건」, 「16 ~ 18세 소년 6명이 여고생을 납치·감금하여 쇠약사(衰弱死) 시킨 사건」 등 3건이었다. 특히 「국회의원 살해사건」은 8건 중 가장 많은 69%가 실명보도를 한다고 회답했다. 가해자가 11세의 소년인 사건에서는 실명보도해야 한다고 판단한 회답자가 2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개인의견’에서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실명보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일본인의 회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16~18세 소년 6명이 여고생을 납치·감금하여 쇠약사시킨 사건」에서는 48%가 「실명보도를 해야 한다」고 회답해 「익명보도」의 39%를 상회했다. 이 사건 외에는 실명보도 지지가 익명보도 지지를 상회한 회답은 없었다.

한편 미국 측의 ‘개인의견’에서는 2개 사건을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실명보도 지지가 많았다. 특히 「국회의원 살해사건」과 「여고생 납치·감

금사건」에서는 91%가 실명보도를 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11세의 소녀가 교내에서 동급생의 목을 잘라 살해한 사건」에서는 실명보도 지지가 44%로 과반수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익명보도 지지의 38%보다는 많았다.

(신문연구 2005년 5월호 pp.44~48)



제한된 조건에서 가능한 한도의 입증취재를 했다면 취재결과는 모두 믿을만 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일본 히로시마고등법원 판결 -

초등학교 교내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찔다는 등으로 아시히 신문에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본 히로시마고법 제3부는 지난 5월 25일 「기사의 주요부분은 충분한 입증취재가 되었다고 하겠으며 기사에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신문사에 1백 만엔의 지불을 명한 1심·야마구찌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시히신문은 2001년 6월 14일자 조간에서 「업자(業者), 세 어린이를 차다」 등의 제목으로 남성이 6학년 여학생 3명에게 「귀엽게 생겼구나」라고 말을 걸면서 엉덩이를 가볍게 찼다는 등의 내용을 익명으로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가 원고를 특정할 수 있어 명예를 훼손했고, 기사에 진실성의 증명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1심의 판단을 따랐으나,

진실 상당성의 점에서 「기자는 취재 당시의 제한된 조사방법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한도의 입증취재를 했고, 여학생들의 설명의 신용성을 검증하고 있다. 취재결과는 모두 신뢰할 가치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교장이나 보호자 등) 각 진술이 모두 여학생들의 설명에 의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신용해서는 안 되며, 입증취재가 불충분하다」고 진실 상당성을 부정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6월 7일자)

□

회계법인의 영구보도금지 청구 기각

- 영국 대법원 -

Accountancy Age가 회계 회사인 Deloitte & Touche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보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대법원은 Deloitte & Touche가 낸 'VNU title' 영구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월, Accountancy Age은 Deloitte & Touche가 청구한 임시 보도금지령으로 인해 산업 감시 기관인 Joint Disciplinary Scheme(JDS)에서 발견한 자료를 'VNU title'을 통해 보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대법원은 Deloitte & Touche의 영구보도금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Accountancy Age는 Deloitte & Touche가 1990년대 중반, 카지노 회사인 Capital Corpo-

ration의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JDS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을 기사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Capital Corporation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던 Deloitte & Touche 측 관계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과 Capital Corporation에서 발표한 시장 보고서가 의심스럽다는 점 등이 기사에 포함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Deloitte & Touche와 Accountancy Age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Deloitte & Touche 측은 “이 기사가 회사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어 Deloitte & Touche 측은 “5년 동안의 JDS의 수사이후 Capital Corporation의 재정 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에서는 아무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며 “법정 절차를 밟기 전에 대중에게 증거가 없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발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Accountancy Age의 편집장인 Damian Wild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가져올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만약 회계에 관한 업무가 대중의 눈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보여야 하는 것이라면 확고하고 독립적인 감시자가 외부로부터의 방해 없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Damian Wild는 “우리는 만약 보도금지요청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언론 전반에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가져왔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하고 “판사가 우리와 동의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

(Press Gazette 2005년 5월 6일자)

□

“경찰의 취재 자료 압수 결정은 정당” 유럽재판소 판결 논란

자신의 취재결과와 자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날을 꿈꾸던 저널리스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수사 기자인 Hans-Martin Tillack가 European Commission(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하 EC)이 1년 전 벨기에 경찰을 통해 그의 브뤼셀 사무실과 집에서 파일, 컴퓨터 디스켓, 이메일 기록, 노트북을 압수했던 것에 대해 반발, 소송을 제기했으나 European Court of Justice(유럽재판소)은 EC가 기자의 취재자료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인정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Stern지의 브뤼셀 특파원이었던 Tillack은 지난 2002년, EC와 통계 부서인 Eurostat 내의 부정행위를 내부서류를 통해 폭로했었다. 그러자 EC내의 반(反) 부정행위 기관인 Olaf가 소송을 냈고 이에 브뤼셀의 경찰은 Tillack의 자료를 압수한 것이다. Olaf는 Tillack이 자료들을 구하기 위해 공무원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Tillack은 이 소송내용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럽 기자 연합의 총 사무관인 Aidan White는 “이 사건은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불충분한지 보여주고 있다”며 “EC는 기자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그의 기밀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것은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dan White는 “이번 판결은

기자와 그들이 수집한 자료에 대해 공정한 판결이 아니며 충격적이기까지 하다”고 전했다. 또 Olswang의 미디어 소송 담당원인 Dan Trench는 Press Gazette지를 통해 “유럽 재판부는 너무나도 편협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Trench는 “법원은 실제로 자료를 가져간 것은 벨기에 경찰이며 Olaf는 신고서만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Trench는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부당한 공권력 개입에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Trench는 “당신이 만약 EC를 취재하는 기자이고 그들의 부정을 폭로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면, 수집한 자료를 확실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역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영국으로 가져오면 비록 어떤 사람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자료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조언했다. 그는 또 “EC의 부패에 관한 자료는 유럽재판소에서 별로 지켜줄 용의가 없는 것 같아 좀 실망스럽다”며 “자료는 보호되어야하고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기자가 수집한 정보들이 되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Tillack은 그의 자료를 돌려받기 위해 Strasbourg에 있는 인권 재판소에 벨기에를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유럽 기자 연합은 최근 벨기에의 법이 저널리스트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Tillack의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Press Gazette 2005년 5월 6일자)



언론중재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만이 노동3권을 보장받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19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노동부 (장관 김 대 환)

피신청인 : 헤럴드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5. 5.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 『노동부의 실언장담』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29일자 14면)

내 용 :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당장 노조를 결성할 것이라는 단정은
기우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주가 고용계약을 1년
씩 갱신하는 방식이어서 노조를 결성하면 계약 연
장이 안 돼 당장 강제 출국 될 텐데 쉽게 노조를 결
성하겠습니까”.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노동부 관
계자가 호언장담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호언장담은 1년도 안 돼 ‘실언장담’이
돼버렸다. 최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
조합이 결성돼 노동부에 허가서 제출을 앞두고 있
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노조원’들이 모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들이라고 볼 순 없지만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만이 노동 3권을 보장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연성은 아주 높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로 입
국한 근로자 그리고 불법체류자. 이 중 노조 결성
을 보장받는 부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불법체
류자뿐이다. 결국 이번 이주노동자 노조는 고용허
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
다. 작년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밀어붙일 때 중소
기업들은 임금상승보다 노조 결성을 더 우려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위 3D 업종의 사업
장은 대부분 고용인원도 많지 않고 영세한 관계로
국내 노동자의 노조도 없다. 조그만 회사에서 노
사분규가 날 경우 그야말로 벼랑끝이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헤럴드경제 4월 29일자 14면에 『노동부의 실언장담』 제하의 기사에서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만이 노동 3권을 보장받는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연수 1년 후 2년간 근로자로 취업하는 연수취업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기타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노조 결성을 보장받는 부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불법체류자뿐’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국내 체류 및 취업 자체가 불법인 불법취업자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대한 보호가 아닌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3권 행사의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조 결성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원의 상당수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일 개연성이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지난 4월 29일자 14면 『노동부의 실언장담』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입국한 연수취업자 등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만이 노동 3권을 보장받는다를 것을 전제로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

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헤럴드경제 2005년 6월 16일까지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바로잡습니다)는 중재대상 기사의 제목(노동부의…)크기로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헤럴드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16일자 13면)

내 용 : 지난 4월 29일자 14면 『노동부의 실언장담』 기사와 관련, ‘노동부는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입국한 연수취업자도 노동 3권을 보장받는다’고 밝혀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만이 노동 3권을 보장받는다를 점을 전제로 보도한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건축자재를 빌린 후 이를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제주중재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CTV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CTV : 「뉴스」 프로그램 (2005년 6월 2일 19:00, 21:30, 23:00)

내 용 : 제주경찰서는 지난 2003년 제주시 OO2동 46살 김모 씨의 건축야적장에서 1천 3백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빌린 후 가로채ن 복제주군 OO읍 45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6월 2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건축자재 사기 40대 검거” 제하의 방송을 3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김모 씨는 건축자재를 가로채 사실이 없으며 또한 1천 3백만 원이라 주장했던 건축자재도 약 3-4배 정도의 금액이 부풀려 전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모 씨는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하였고, 건축자재는 이미 오래전에 반납하여 인수증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2일 건설자재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복제주군 OO읍 45살 김모 씨는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했고, 이에 따른 인수증까지 갖고 있는 상태로, 건설자재를 임대 한 뒤 이를 가로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CTV 2005년 6월 16일 오후 7시, 9시 30분, 11시 ‘뉴스’ 프로그램 중에 제목(반론보도문)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

시하고, 진행자가 본문을 통상의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CTV : 「뉴스」 프로그램 (2005년 6월 16일 19:00, 21:30, 23: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기업대표를 협박해 호텔경영권을 뺏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196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여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여○○ “난 조폭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5월 6일자 5면)

내 용 :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여○○ 씨(51)가 자신은 “조직폭력 사범이 아니다”라며 서울구치소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여씨는 소장에서 “조직폭력과 관련없는 경제사범 인데도 10여 년 전 전과가 적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근거로 2001년 9월부터 각 구금시설에서 나를 조폭사범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3년8개월 동안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여씨에 따르면 조폭사범은 일반사범과 비교해 ▲가족접견 기회 박탈 ▲서신검열과 상시 감시 ▲독방수감 등의 제약이 가해진다.

여씨는 지난해 복역 중 채무가 있던 기업 대표를 협박해 호텔경영권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또다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가 지난 5월 6일자 5면에 『여○○ “난 조폭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에서 “여씨는 지난해 복역 중 채무가 있던 기업 대표를 협박해 호텔경영권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또다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 씨는 2005년 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채무가 있던 기업대표를 협박해 호텔경영권을 빼앗은 부분은 범죄의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5월 6일자 5면에 게재된 『여○○ “난 조폭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여○○ 씨는 채무가 있던 기업대표를 협박해 호텔경영권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05년 2월 18일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2005년 6월 17일까지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16일자 3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연기군이 한국노총연기지부 복지관 신축공사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충북중재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연기군 (군수 이 기 봉)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양일보 : 『한국노총 연기군 지부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05년 5월 16일자 3면)

내 용 : 충남 연기군이 한국노총 연기지역 지부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중인 복지관 공사에 5억여 원의 민자보조금을 지원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여서 거액의 지원금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연기군 지부는 오는 7월말 목표로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284-5 일대에 연면적 492㎡에 지상 3층 규모로 복지관을 건축중에 있다. 그러나 신축되고 있는 이 부지는 연기지부의 소유가 아닌 개인명의 토지로 밝혀져 군이 개인의 명의로 된 토지에 어떻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또 이 부지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한도액 1억 4천여만 원의 담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기군은 이처럼 특정 단체에 대해 투명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3월 30일 선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 지원 논란과 함께 각종 의혹이 제기돼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동양일보 지난 5월 16일자 사회면 『한국노총 연기군 지부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지상 3층 규모로 복지관을 신축중에 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연기군 지부의 소유가 아닌 개인명의 토지로 밝혀져 군이 개인명의로 된 토지에 어떻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기군에 확인한 결과 한국노총 연기군 지부는 1994년 2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청남도 지역본부로부터 인준을 받은 단체로 임의단체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건축물 신축부지가 개인명의로 할지라도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16일자 3면과 5월 24일자 10면에 『한국노총 연기군 지부 특혜의혹』 제하의 보도와 관련, ‘지상 3층 규모로 복지관을 신축중에 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연기군 지부의 소유가 아닌 개인명의 토지로 밝혀져 군이 개인명의로 된 토지에 어떻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기군은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한국노총 연기군 지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청남도 지역본부로부터 1994년 2월 6일 인준을 받은 단체로서 보조가 가능하며 또한, 건축물 신축부지가 개인명의로 할지라도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축비에 따른 보고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단체에 보조금이 부풀려졌다”라는 보도는 본 복지관 건립공사는 보조신청시 정부의 품셈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공인된 건축설계사가 작성한 설계서를 연기군의 전문직공무원의 설계검토·검산을 거쳐 보조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양일보 2005년 6월 22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크기는 부제목(연기군, 임의단체...)과 같게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본문 활자체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양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청소년위원회가 이름만 있을 뿐 활동하지 않는 부실위원회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05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최 영 희)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정부 위원회’도 부실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8일자 1면)

내 용 :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 산하 위원회의 36%는 2년간 회의를 거의 열지 않은 ‘부실 위원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4개 위원회는 설치 목적이 해소된 만큼 폐지하거나 위원장 등 간부의 직급을 낮추라는 감독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올해 초 현재 행자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재경부의 독립공채상환위원회, 교육부의 직업교육훈련심사위원회, 국방부의 군인연금기금운용심의회 등 44개 위원회는 폐지 혹은 위원장 직급 하향 결정을 받았으나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꾸로 최근 들어 각종 위원회의 직급이 격상되고 있다. 교육부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위원장

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총리실 소속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도 1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6월 8일 제1면에 보도한 『‘정부 위원회’도 부실 투성이』 제하의 기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기사에서 거론된 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 산하의 비상설자문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차관급 행정부처로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위원회는 교육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 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6월 8일자 1면 『‘정부 위원회’도 부실 투성이』 제목의 기사와 관련,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정부 각 부처 산하의 자문위원회와는 다른 청소년 전담 행정위원회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에 2005년 6월 24일까지(토요일제외)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업체가 감염성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5경기중재2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주)○○○ (대표이사 허 ○)

피신청인 : 현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현대일보 : 『감염성 폐기물 처리 허술』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7일자 1면)

내 용 : 용인시 ○○면 소재 감염성 폐기물 처리
업체가 특정용기에 담아야 하는 병원 적출물 등을
일반용기에 담은 채 운반하는 등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병원 등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액상혈액이나 인체적출물 등을 상온에 보관하는 등
부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감염 우려는 물론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용인시 ○○면 ○○리 M업체는
경인지방 환경청으로부터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아 지난 1992년부
터 수도권 인근의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
거 소각 처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수집한 감염성 폐기물을 보관
하는 과정에서 냉장보관해야 할 폐기물을 상온에서
수일간씩 보관, 적출물 등의 부패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밀폐용기에 담겨져 운반되어야 할 치료과정의

혈액 등이 비닐과 종이박스 등 일반용기에 담겨져
반입, 이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핏물이 떨어져 하역
장 곳곳에 핏물이 고여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2005년 6월 7일자 1면에 『감염성 폐기
물 처리 허술』 제하의 기사에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특정용기에 담아야 하는 병원 적출물
등을 일반용기에 담은 채 운반하는 등 제대로 처
리하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였
으나, 사실 확인결과 (주)○○○ 및 관련 운반업체
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대로 배출기관에서 수거된 전용용기 그대로 운
반하고 있으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소각처리시설
에 투입하고 있어 일반용기에 담은 채 운반하는
일은 전혀 없으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업체는 수집한 감염성 폐기물을 보관하
는 과정에서 냉장보관해야 할 폐기물을 상온에서 수
일간씩 보관, 적출물 등의 부패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주)○○○는 법률에 따라 부패·변질
의 우려가 있는 액상혈액이나 인체적출물을 전용 냉
동창고에 보관하여 정상가동하고 있고, 또한 폐기물
이 반입되는 즉시 바로 소각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일씩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설사
보관한다 하더라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5일을 넘
겨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밀폐용기에 담겨져 운반되어야 할 치료과
정의 혈액 등이 비닐과 종이박스 등 일반용기에 담
겨져 반입, 이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핏물이 떨어져
하역장 곳곳에 핏물이 고여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
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염성폐기물은 배출기관에
서 전용용기에 담겨져 밀폐포장되어 반입되며, (주)

○○○에서는 용기에 담겨진 상태로 자동투입장치를 통해 소각처리시설에 투입하고 있어,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현대일보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4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5년 6월 7일자 1면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허술』 제하의 기사에서 용인시 소재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용기에 담아 운반하고 상온에서 수일간 보관하는 등 병원 적출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주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해당업체인 (주)○○○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처리절차 및 보관기준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을 적법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는 일반용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배출기관에서 수거된 전용용기 그대로 운반하여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를 통해 소각처리시설에 투입하고 있어 일반용기에 담은 채 운반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액상혈액이나 인체적출물은 전용의 냉동 창고에 보관했다가 소각시설로 반입하여 바로 소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현대일보 2005년 7월 4일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용인시 중간처리업체 일반용기...)과 같은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본 사건기사에 대해 이후 법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 회사가 수익증권 회수를 위해 변제공탁한 것을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공탁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2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2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법원, 공탁금 42억 사기당해』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0일자 A8면)

내 용 : 광주지방법원이 허위 서류에 속아 공탁금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공탁금 회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광주지법으로 42억 8천만 원의 공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황모(38·서울 구로구)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일당 김모(43) 씨를 포함해 인감과 서류위조 등 사기행위 가담자 10여 명을 쫓고 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아파트건설 시행업자인 이모(67·K건설대표) 씨와 임모(40·Y건설대표) 씨 등 2명이 사기 혐의로 피소돼 법원에 거액을 공탁한

사실을 알고, 허위 공탁금회수신청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 42억 8천만 원을 받아챤 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먼저 공탁금을 낸 이씨와 임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개인인감을 발급받았다. 이어 개인인감을 이용해 서울 상업등기소와 경기도 포천등기소에서 각각 임씨와 이씨의 법인인감 변경신청을 낸 뒤, 변경된 법인인감을 발급받았다. 광주로 내려온 이들은 이 법인인감을 이용해 공탁금 회수신청서를 작성, 광주의 중견 법무사에게 대행업무를 맡겨 공탁금을 받아챤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6월 20일자 8면 『법원, 공탁금 42억 사기 당해』 제하의 기사에서 아파트건설 시행사인 K건설 대표가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법원에 거액을 공탁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수익증권 회수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것이지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음이 밝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6월 20일자 A8면 『법원, 공탁금 42억 사기당해』 기사에서 'K건설 대표 이모 씨와 Y건설 대표 임모 씨 등 2명이 사기혐의로 피소돼 법원에 거액을 공탁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두 회사 측은 'Y건설이 광주 모 건설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수익증권을 K건설이 회수하기 위해 공탁금을 걸었던 것일 뿐 피소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5년 7월 4일까지 2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바로잡습니다)는 중재대상 기사의 제목(서류위조해...)크기로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9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소유한 토지 주변도로 포장공사와 개인 공적비 건립에 수해복구 공사비를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25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석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KBS 스페셜」 프로그램 (2005년 5월 28일 20:00)

내 용 : ▷ 성우 : ○○시에서도 이상한 수해복구 공사가 눈에 띈다. 인적이 드문 밤밭 주변으로 도로가 잘 닦여져 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수해복구 비

용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문제의 밤밭은 ○○시의원인 석○○ 씨의 개인 소유지였다.

▷ 취재기자 : 어떤 공사들을 하셨던거예요?

▷ ○○건설토목기사 김씨 : 공사 여기 수해복구라 해 가지고요.

▷ 취재기자 : 여기?

▷ ○○건설토목기사 김씨 : 요 주위에 하고 밤밭을 전체적으로 포장을..., 순환도로. 이 길로 돌아가지고 저 뒤로 한바퀴 순환하는 도로.

▷ 취재기자 : 한바퀴 돌아온다 말이지요?

▷ ○○건설토목기사 김씨 : 예. 개인적으로 볼때는 뭐 안 맞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 취재기자 : 예. 요 밤밭은 전체가 지금 시의원 땅이고요?

▷ ○○건설토목기사 김씨 : 그렇죠. 개인의 땅에 개인이 용도로 썼다고 그리 보면 되죠.

▷ 성우 : ○○시의원을 두 번이나 지낸 석○○ 시의원. 왜 석 의원은 자신의 밤밭에 새로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수해복구 비용을 사용했을까?

▷ 취재기자 : 거기 수해복구비는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 석○○ : 어느 것에?

▷ 취재기자 : 밤밭에.

▷ 석○○ : 수해복구비?

▷ 취재기자 : 예.

▷ 석○○ : 그것은 모릅니다. 도량을 만드는 수해복구비는 모르고, 제가 개인으로 십전 포장한 것은 2천 3백만 원 들었습니다.

▷ 취재기자 : 그러니까 그 둘레 다 이렇게 하신 거죠?

▷ 석○○ : 예, 2천 3백만 원 들었습니다.

▷ 성우 : ○○시청을 찾아가 그 지역의 수해복구 목록을 직접 확인했다. 석○○ 시의원의 밤밭 공사를 확인 결과 밤밭 도로공사 사진이 명확히 나와

있었고, 수해복구를 한 위치도 석의원의 밤밭 주변과 일치했다. 이때 지출된 총 공사비는 1억 6천만 원을 넘는다.

▷ 석○○ :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좀 선처를 여려가지로 해 주이소.

▷ 취재기자 : 그러면 이 공사하면서도 공적비를 만들고 그랬어요?

▷ ○○건설토목기사 김씨 : 그렇죠, 이거 끝나고 저거...

▷ 취재기자 : 요것 공사하면서?

▷ ○○건설토목기사 김씨 : 예, 이거 거의 끝날 무렵에 했죠.

▷ 성우 :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석○○ 시의원의 공적비. 여기에는 그의 생활지도자로서의 공적이 적혀 있다. 이 공적비의 기초를 조성하는 공사에도 수해복구 비용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 석○○ : 내 일생에 해는 될는지 모르지만 세운데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5월 28일 「KBS스페셜」 '나는 왕이로소이다' 제하의 보도에서 ○○시 석○○ 시의원이 정부의 수해복구 공사비로 자신의 밤밭 순환도로를 포장하고 자신의 새마을지도자 공적비 기초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석○○ 시의원은 수해복구 공사비로 자신의 밤밭 순환도로 포장과 자신의 새마을 지도자 공적비 기초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 자신의 개인사비로 공사를 하였고, 공적비는 1987년 마을주민들이 지역발전에 공헌한 석○○ 시의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주민들의 뜻으로 성금을 모아 세웠으며, 2004년 교량 설치공사 구간에

공적비가 위치하고 있어 비석이설비(지장물이설비) 지급받아 현재의 공적비를 이설 준공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8일 「KBS스페셜」 ‘나는 왕이로소이다’ 프로그램에서 〇〇시 석〇〇 시의원이 수해복구 공사비로 개인의 밤밭 순환도로 포장과, 새마을지도자 공적비 기초공사비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석〇〇 시의원은 밤밭 순환도로 포장공사는 개인 사비로 공사한 것이고, 새마을 지도자 공적비는 사지마을 교량 공사의 지장물 이설을 위해 밀양시로부터 지장물이설비를 지급받아 이설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BS-1TV ‘시청자세상’ 프로그램 말미에 7월 16일까지 방송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을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TV비평 시청자데스크」 프로그램 (2005년 7월 16일 11: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직장상사에 의해 살해된 신청인들의 딸이 가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청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2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1. 황 ○ ○

2. 유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연합뉴스 : 『직장상사가 20대 여직원 살해』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일)

내 용 :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2일 직장 내 여직원을 목줄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37·경기도 안산시) 씨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구 소재 모 기업 과장인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30분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6번 국도 위 차량 안에서 직장 동료 황모(22·여)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이에 격분, 목줄라 살해한 뒤 3km 떨어진 도로변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조사결과 유부남인 이씨는 숨진 황씨와 같은 직장 내에서 알고 지내면서 지난 10개월여 동안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이씨는 범행 하루 뒤인 지난 1일 오후 원주경찰서에 자수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보 지난 6월 2일자 『직장상사가 20대 여직원 살해』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살해된 황모 씨가 직장상사와 10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연합뉴스가 지난 6월 2일 송고한 『직장상사가 20대 여직원 살해』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살해된 황모 씨가 직장상사와 10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황씨의 유족 측은 숨진 황씨가 직장상사인 이모씨로부터 “안 만나주면 죽여버리겠다”, “이혼할테니 결혼해달라”는 등의 스토킹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 2005년 7월 4일까지 사회면에 송고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4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 ‘자동차용 반도체’ 기술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3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산업자원부 (장관 이 희 범)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경제 : (1) 『‘車 반도체’ 개발무산』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13일자 2면)

내 용 :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해 온 ‘자동차용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갈등으로 사실상 좌초됐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연간 시장규모만 20조원에 육박할 만큼 성장한 캐시카우이지만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불협화음 탓에 핵심기술 국산화는 이미 물 건너간 셈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지난 2003년부터 정부의 주선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동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자동차 기술 유출 및 투자 리스크 문제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공동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는 최근 1년여 동안 공식적인 회의조차 갖지 않는 등 공조체제를 전혀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2) 『상호불신에 성장동력 ‘물거품’』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13일자 11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공동개발을 포기함에 따라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 프로젝트는 핵심기술을 갖추지 못한 ‘쪽정이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10년 후 한국경제를 먹여살리겠다는 야심찬 구상은 결국 ‘물거품’으로 변해버린 셈이다. (중략)

이처럼 삼성전자 없이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 핵심칩 기술의 기반을 제외한 채 주변기술 개발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책사업에 참여 중인 한 업체는 차량용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차량 새시컨트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반도체업계에서 먼저 개발해야 할 핵심칩 기술 국산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모비스 역시 차량용 반도체 중 최대 시장을 자랑하는 범용 핵심품목인 마이크로컨트롤러(MCU)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시스템은 칩(SoC)의 일부 특화 기술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6월 13일자 2면, 11면에 『‘車 반도체’ 개발무산』 제하의 기사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해 온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해 삼성전자-현대자동차간 공동개발에 따른 갈등으로 개발이 사실상 좌초되었고, 성장동력사업이 마이크로컨트롤러(MCU) 등 핵심품목 개발은 뒤로 하고 시스템 온(SoC)칩 등 특화기술 중심으로 개발 진행되어, ‘썩정이 사업’으로 전락하여, 개발 지원방향에 재검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사업은, 현재 차세대반도체 성장동력 사업단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양 사는 공동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과제에 대한, CAN(Controller Area Network) IC(삼성전자 주관), UWS(Ultra Warning System, 현대모비스 주관) 등 5개 세부과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車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이 양 사의 갈등으로 사실상 좌초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 6월 13일자 2면, 11면 『‘車 반도체’

개발무산』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사업은, 현재 차세대반도체 성장동력 사업단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공동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과제에 대한 CAN(Controller Area Network) IC(삼성전자 주관), UWS(Ultra Warning System, 현대모비스 주관) 등 5개 세부과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경제 2005년 7월 7일자 2면 하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경제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빅수먼 패션쇼’에 참가한 여섯을 ‘통통미인대회’ 1등 수상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3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 영 숙) 외 2인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2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SBS-TV : 「진실게임」 프로그램 (2005년 6월 7일 20:55)

내 용 : (전략)

▷ 유재석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각 미인대회에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한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과연 이분들 가운데 진짜 미인대회 그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신 단 한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들과 함께 진실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석 :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통미인대회 1위분 소개해주세요.

▷ 정○○ : 네 시작은 삐쩍 꼬랐으나 나중은 비대하리라.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통통미인대회 1등 정○○ 입니다. 통통미인대회가 있을까 정말 의심하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55사이즈는 가라 88, 99, 100 빅 사이즈를 입는 미인대회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재석 : 과감히 얘기하셨습니다. 55사이즈는 가라. 과연 이분이 말씀하신 통통미인대회가 있는지.. 자 다음!

-각 참가자 소개 후

▷ 유재석 : 박찬민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 박찬민 : 개인적으로는 연변아가씨가 맘에 들고요. (웃음) 누가 진짜일 것 같으냐면 제가 똥똥한 사람들의 미인대회를 본적이 있어요. TV에서... 근데 저 분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 특징이 다들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자신감이 있어 보이세요. 그래서 저분 같은데요. 통통미인대회.

▷ 유 : 그래서 박찬민 아나운서는 통통미인대회 1위 저분이 오늘의 진짜일 것 같다.

▷ 박 : 가장 자신감 있어보여서요.

▷ 유 : 일단 원미연 씨가 오늘의 첫번째 질문을 해주시지요.

▷ 원미연 : 미스코리아나 라운드걸 대회, 연변아가씨 대회, 온갖 토산물 대회는 뭔가 지금 많이 들

어본 미인대회잖아요. 근데 다른 대회는 지금 처음 들어본단 말이죠. 어떤 미인대회인지..?

▷ 유재석 : 어떤 대회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

▷ 원미연 : 네.

▷ 정○○ : 올 4월에 열린 대회입니다. 88 이상 빅 사이즈 여성 400명이 모여서요, 그중에서 미를 경합하여 최종적으로 20명이 뽑혔구요. 최종적으로 뽑힌 20명은 한국 빅우먼 패션쇼에 참가하였습시다.

▷ 유 : 아~ 그렇군요.

▷ 정 : 네.

▷ 원 : 얼마전에 패션쇼를 했죠.

▷ 정 : 네.

▷ 원 : 그분들이..

▷ 정 : 네.

▷ 원 : 그 무대를 어디서 했었어요.

▷ 정 : 음.. 삼성동.

▷ 유 : 원미연씨가 뭔가 알고 계신다는 듯이..

▷ 송은이 : 적어놔 적어놔.

▷ 정 : 이번에 대회 나왔을때요. 장기자랑으로 했던 것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략)

▷ 유재석 : 과연 이분들 가운데 어떤분이 과연 미인대회 1위를 하신 수상자일지 지금부터 진실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연변아가씨 대회 1위를 하신 이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 유 : 지금 통통미인대회 일등을 차지하신 저분 5분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저분이 과연 진짜일지 자~! 통통미인대회 1위!!! 저분을 한번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함께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실의 종아 울려라를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과연 오늘의 진짜일지. 셋!

▷ 전원 : 진실의 종아 울려라~! (진실판정)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6월 7일 「진실게임」 프로그램 ‘진짜 미인대회 수상자를 찾아라’ 제하의 방송에서 ‘통통미인대회 1등’으로 출연한 출연자가 진실의 종을 울리며 진실로 판명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빅우먼 패션쇼의 기획 취지를 왜곡하였기에 정정보도합니다.

‘빅우먼패션쇼’ 기획취지는 미의 기준에 순위를 매기지 말며,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문제제기를 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갖춘 미의 가치관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통통미인대회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지난 6월 7일 “진짜 미인대회 수상자를 찾아라” 편에서 진실로 판명된 ‘통통미인대회 1등’은 제작진이 임의로 명명한 명칭인 바, 존재하지 않는 대회였습니다. 출연자는 한국여성재단 등이 주최한 ‘빅우먼 패션쇼’ 모델이었습니다. 명칭과 성격이 취지와 달리 방송된 데 대해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유감을 표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 ‘진실게임’ 2005년 7월 12일자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화면에는 동 보도문의 제목(통통미인대회 관련 정정보도)과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진실게임」 프로그램 (2005년 7월 12일 20:56)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생산한 형광열대어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37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채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5. 7. 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 (2005년 6월 2일 08:00)

내 용 : (전략)

▷ 정○○ :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형광물고기. 반짝이는 물고기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형광열대어인데요. 이렇게 일반 물고기와 색깔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반짝반짝 빛을 내는 신기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모으고 있는데요.

▷ 남자1 : 수족관을 한 10여년을 해 봤지만 이런 고기는 지금 처음입니다.

▷ 정○○ : 이처럼 신기하기만 한 녀석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이 물고기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종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한 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형광열대어는 산호초에서 추출한 형광유전자를 일반 열대어의 수정란에 주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자 조작 생명체입니다.

▷ 심○○ : 형질 전환된 물고기를 만든다는 자체

는 생태계에 없는 것을 만든 거니까 기술보다는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정○○ : 하지만 정식 시판을 앞두고 그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형광열대어 도입이 자칫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박○○ : 물고기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과연 물고기에만 그냥 있을 것인지 이것이 물을 타고 어떤 먹이사슬을 타고 퍼져나가지는 않을지, 그것이 그 생명체의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자극이, 반응이 올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고요.

▷ 정○○ : 이 형광열대어처럼 빛을 쬐면 적색, 보라색 등으로 변하는 물고기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어종이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 박○○ : 유전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생산하는 거죠. 문제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경우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드러날 정도로 발견했다는 것은, 이때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정○○ : 또한 안정성의 검증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불안요인 중 하나인데요. 유전자 조작 식품들의 경우 2002년부터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상어의 경우 아무런 검증절차가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 : 저희 해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관상어인 경우에 어떻게 하라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략)

▷ 김○○ :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것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유전자 조작 곡식을 먹은 가축들이 기형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저도 접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 언제 올라 두려웠던 굉장히 큰 일들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

게 보면 재앙으로까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유전자 조작 물고기 역시 생태계와 자연계를 망가뜨릴까 봐 사실 이것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 정○○ : 정말 보기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서 예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행동들이 과연 환경에 유해성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멀리 내다보고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브리핑 정○○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6월 2일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에서 국내 시판을 앞둔 형광열대어가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든 것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형광제브라가 만들어 내는 형광 단백질은 자연의 산호초에서 추출한 형광단백질을 삽입하여 만들어 낸 것으로, 산호초는 많은 해양어류의 주요한 먹이이므로 자연 생태계에 아무런 해가 없으며, 형광제브라가 자연 생태계로 흘러가더라도 이를 포식한 물고기나 새 등에게 유전자 변형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자연생태계로 흘러간 형광제브라는 수온이 19도에 이르면 활동이 저하되며, 10도에 이르면 죽으므로 자연 생존할 수도 없고 대만, 미국 등지에서는 이와 같은 형광제브라의 안전성이 입증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FDA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3년 12월 9일 형광 제브라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하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2일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에서 국내시판을 앞둔 형광열대어가 일반 열대어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든 것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광열대어를 생산하는 신청인은, 미국 FDA가 유전자 조작을 거친 형광열대어가 그렇지 않은 열대어에 비하여 환경에 더 많은 위협을 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MBC-TV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 말미에 7월 22일까지 방송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을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 (2005년 7월 18일 08: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지체장애인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경기중재3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서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5. 7. 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일보 : 『“나도 빌려준 돈 못받았다”』 제하의 기사
(2005년 5월 23일자 19면)

내 용 : 평택S중, 현직 교사 금전문제로 장애인들 학교 정문에서 시위 보도가 나간 후 문제가 된 평택 S중학교 이모 교사가 지난 2003년에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1급 중증 장애인 김모 씨에게도 3년여간 악성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밝혀져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략)

19일 평택 S중학교 정문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의 시위가 있은 후 이 교사는 자신의 교과목 수업시간에도 장애인이 나눠준 호소문 전단지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의 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교사에게 수업을 듣고 있는 S중학교 1학년 K 모군에 의하면 “이 선생님은 수업은 안 하고 계속 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자신의 사건을 전단지를 보여주며 조작이 됐다고 하며 수업은 20분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하고 있다”며 특히 “자신의 정당성을 부모님들에게 알릴 것”을 종용하였다고 말하고 있어 더욱 파장이 커지는 중이다.

한편, 이 교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자신은 고리의 이자를 주다가 형편이 안 되어 갚지 못하는 중이다”라고 일축하며, 모든 사건은 학교재단 측의 조작이며 채무이행을 주장하는 장애인들을 법적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교사는 S중 재직중 3년 전인 2001년 담임을 맡고 있을 때 학부모 3명으로부터 금전

을 차용하여 갚지 못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진정을 받은 사실이나, 동료 교사들도 이 교사와 채무관계가 존재함을 밝히는 등의 사실이 돌출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교사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이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를 놓고 갈수록 양 측의 주장이 팽배해지고 있어 향후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23일자 사회면에 『“나도 빌려준 돈 못받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평택 S중학교 L교사가 장애인에게 빌린 5천만 원을 3년간 갚지 않고,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부모님에게 알릴 것을 종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되지 못하며, 또한 학부모·동료교사에게도 장기 채무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1인 시위를 하던 Y씨는 고리사채업자이며 과도한 채무상환요구로 인하여 현재 L교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업권 침해 부분도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학부모·동료교사에게 장기 채무가 있다는 것도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23일자 사회면에 『“나도 빌려준 돈 못받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평택 S중학교 L교사가 장애인에게 5천만 원을 3년간 안 갚고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부모님에게 알릴 것을 종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되지 못하며 또한 학부모·동료교사에게도 장기 채무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L모 교사는 현재 2천 5백만 원 이상을 상환한 상태이며 채권자가 과도한 채무상환을 요구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수업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학부모·동료교사에게 장기 채무가 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일보 2005년 7월 20일 19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장애인에 5천만 원 3년간 안 갚은 평택 S중 L교사)과 같은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20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언론사에 대한 평가나 논평이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법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자 판결 (2004가합72896)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사가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양정철 청와대 국내언론담당 비서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수도이전계획 자체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의 대비와 검토라는 실질적이고 정책평가적인 접근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를 많이 게재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 양정철이 작성하여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의 수도이전 계획에 대한 보도 태도가 종전에는 비판은 하되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및 당위성도 긍정하고 행정수도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방안까지 제시하였던 반면, 동일한 정책에 대하여 왜 현 정부 아래에서는 균형성을 상실하고 비판 일변도의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지적하

면서, 언론사로서의 원고의 보도태도를 분석·비판하고자 함이 그 주된 것으로서, 결국 피고 양정철의 언론사인 원고에 대한 평가, 논평의 영역에 해당한 다할 것이고, 그 표현에 있어 다소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에 대한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수사(修辭)적인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언론기관 자체가 비판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이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고 언론기관 스스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비판이 그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그것이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법적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언론기관에 대한 비평에 있어 최대한의 비평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개의 언론기관이 공급하는 다양한 의견을 그 언론 기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접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 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특수성은 이 사건의 경 우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 양정철 등이 청와대 홈페이지(www. president.go.kr) 내 ‘청와대 브리핑’에 2004년 7월 9일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당장 집어치워라』 제하 의 기사와 2004년 7월 14일 『‘당보(黨報)’인지 ‘신문’ 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 동아에 답한다』라는 제 목, ‘동아여, 자기 기록마저 왜곡하는가’, ‘표변의 진 수’, ‘확인하고 싶거든 눈을 들어 동아를 보라’ 등의 소제목의 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원고 의 기사를 논평하면서 원고의 보도내용을 선별적으 로 인용하고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보도내용의 실제 취지와 다르게 오인되도록 유도하거나 보도내용의 취지를 왜곡해석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또한 정 당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넘어 ‘저주의 굿판’, ‘입장 을 수시로 바뀌가며 줄타기’, ‘낯부끄러울 정도의 적 극적 지지입장’, ‘표변의 진수’, ‘한나라당의 구렁에 맞춘 청기·백기 게임’ 등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한 악의적인 비방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72896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이 병 삼
피 고 : 1. 김 우 식
2. 이 병 완

3. 양 정 철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우
담당변호사 전 태 구

변 론 종 결 : 2005. 7. 8.

판 결 선 고 : 2005. 8. 12.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호증의 1, 2, 강제2호증의 1, 2, 강제6호증의 1, 3, 강제9 호증(가지번호 포함), 강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0, 을제5호증의 4, 을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일간신문인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언 론사이며, 피고 김우식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수 석비서관들의 업무에 대한 감독자, 피고 이병완은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으로서 휴일을 제외하고 청 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매일 게재되 는 ‘청와대브리핑’의 총괄책임자, 피고 양정철은 홍 보수석 휘하의 국내언론담당비서관으로서 2004. 7.경 별지 1, 2의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위 ‘청와 대브리핑’ 란에 게재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된 당시에는 정부의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추진으로 각계 각층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던 상황이었는 데, 특히 원고는 기사나 사설 등을 통하여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하여 비용의 과다, 외국의 사례,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왔다.

다. 이에 피고 양정철은 2004. 7. 9. ‘청와대브리핑’ 기사의 하나로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당장 집어치워라』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과거에 동아일보를 통하여 실행정수도 이전에 관하여 보도한 내용을 분석한 다음, ‘균형성 포기…비판일변도…1977년 이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적극 지지, 반대, 암묵적 동의, 적극 반대 입장을 수시로 바뀌가며 줄타기를 해온 것…행정수도 건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외에 역대 정권이 늘상 거론하던 해묵은 과제였다…김영삼·이회창 후보에겐 들이대지 않았던 노무현 후보만의 검증이 뒤늦게 시작됐다…똑같은 대선공약인데 누가 하면 찬성하거나 침묵하고 누가 하면 반대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별지1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라. 피고 양정철의 별지1의 기사가 게재된 이후 원고는 2004. 7. 10.자 동아일보 A4면에 「청와대 ‘동아—조선은 저주의 굿판 견어치워라’ 수도이전반대 확산—輿지지울 하락, ‘언론과 전쟁’으로 국면전환 노리나」라는 소제목으로, 원고를 포함한 행정수도이전계획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어왔고 이에 의도적으로 원고를 표적삼아 별지1의 기사를 피고들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고, 그 바로 옆에 「청와대 주장과 本報 ‘수도이전’ 보도내용 비교」라는 소제목으로 원고의 1977년도의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보도태도와 2004년도의 보도태도에 관하여 스스로 비교·분석하면서 피고들의 별지1 기사에 대한 반박기사를 게재하였으며, 나아가 2004. 7. 12.자 동아일보 A2면 사설란에 『盧정권, 이성 되찾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피고들의 별지1 기사를 ‘특정신문 때리기’로 규정하면서 ‘노정권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집단에 더는 대립각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체제는 불구화(不具化)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라는 취지의 비평기사를, A6면 「기자의 눈」란에 『‘청와대 브리핑’의 선동적 독설』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사를 ‘정부기관 매체의 선동적인 독설’, ‘논리의 비약, 반지성적인 태도’라고 지적하는 등의 반박기사를 게재하였고, 다시 2004. 7. 13.자 동아일보 A5면에 『靑 ‘저주의 굿판’ 주장 사실왜곡, 本報 1977년 보도내용—朴正熙 ‘백지계획’ 때도 수도이전 조목조목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별지1 기사 내용에 대한 각 항목별 반박기사를 게재하였다.

마. 이에 피고 양정철은 다시 2004. 7. 14.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브리핑’란에 『“黨報”인지 “신문”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동아에 답한다』라는 제목으로, ‘동아여, 자기 기록마저 왜곡하는가’, ‘豹變의 眞髓 - 확인하고 싶거든 눈을 들어 동아를 보라’ 등의 소제목 하에 행정수도 건설, 국민적 의견수렴, 대통령 결정, 서울과밀, 서울의 미래, 외국사례, 충청권 반응 등의 항목별로 동아일보의 1977년도 보도태도와 2004년도의 보도태도를 그 기사문언을 따와서 비교하여 양 시점의 보도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치부를 둘러싼 검증은 부당한 전쟁이고, 자신들이 벌이는 편파적인 공격과 시비는 언론자유라는 논리는 오만이고 독선일 뿐이다…구여권 혹은 한나라당이 찬성할 때엔 동조하거나 침묵하면서 유

독 참여정부가 같은 사안을 추진할 때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특정정당의 당보(黨報)라는 오해를 계속 살 것인지, 정도를 걷는 신문인지 입장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반박하는 별지2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바. 원고는 2004. 7. 16.자 동아일보에서 『청와대브리핑—과거수도이전 공약 땀 침묵의 허구—兩金은 '일부기관 이전' 공약 '사실상 천도'와 비교는 억지』라는 제목으로 '본격적인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없었다...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내용이 다른 만큼 동아일보를 비롯한 대부분 신문기사도 박-노 대통령의 행정수도에 대한 기사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김영삼 후보의 일부 외청 이전과 사실상 천도 개념인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은 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취지로 별지1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를 재차 게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보도내용의 실제 취지와 다르게 오인되도록 유도하거나 보도내용의 취지를 왜곡해석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또한 정당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넘어선 악의적인 비방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들이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의 균형성과 일관성을 결여한 보도태도를 비평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그 표현의 정도 역시 공적인 존재인 원고가 수인할 한도 내의 비평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비평의 기초가 되는 1977년 당시의 동아일보 기사와 2004년 현재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을 왜곡한 적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이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하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 족하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그 기초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의견 또는 논평의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부분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 사실을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언론기관이 국가권력이나 사회제 세력에 대해 비판자의 역할을 충분하고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언론기관 고유의 가치관에 따른 다양한 시각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한편 언론기관 자체가 비판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이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고 언론기관 스스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고, 그 비판이 그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그것이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쉽사리 법적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언론기관에 대한 비평에 있어 최대한의 비평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개의 언론기관이 공급하는 다양한 의견을 그 언론기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접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특수성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7, 8, 9, 10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2.경 기획성 기사 ‘새서울 예진’을 7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게재하면서 수도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수도가 이전된 이후에도 서울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고(首位都市機能은 不變), 그러나 수도가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서울의 교통지옥은 면하기 어려우며 중앙권력과의 거리감 때문에 범죄증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강원 영동·춘천 지역 주민들은 수도이전계획으로 인하여 좌절감을 표출하였으나 충청권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위 기획성 기사의 마지막회에 수도이전에 따른 여러 장·단점 및 부작용을 종합·정리하면서도 결국에는 ‘施行錯誤있어선 안 될 百年大計’로서 ‘民心低流 깊이 把握을’이라는 당부성 문구로 위 시리즈를 마무리하였던 사실, 또 하나의 기획성 기사인 ‘인공수도 브라질리아’ 시리즈에서는 ‘건설 3년의 대역사’, ‘구상에서 착공까지, 오랜 찬반논쟁…쿠비체크가 이전결단’, ‘인플레·경제파탄 들어 거센 반발’ 등의 기사에 이어 ‘황무지에선 기적—천도 후도 한동안 수도 기능 못해, 수도권 투자로 92%의 물가상승’, ‘그러나 결국 새로운 수

도건설은 리오와 사울과울루 중심의 경제권에서 탈피, 지방과의 격차를 줄였고 아마존 횡단도로를 건설, 이 지역 일대 개발에 박차를 가해 목축, 쌀, 콩의 생산을 증대시켰다’는 기사로 시리즈를 마무리하였던 사실, ‘행정수도—전문가들의 좌담회(1977. 2. 12.)’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새행정수도건설 구상발표로 국민들에게 충격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줘, 국민들의 호기심·궁금증을 충족시키는 취지에서 전문가들의 좌담을 게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다른 면에서 ‘투자재원, 시설이동 서울의 공소화 등 난제—천문학적인 재원마련문제, 관련 공무원의 집단이동문제, 기존 서울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마스터플랜만 작성되면 건설은 3년 안에(1977. 2. 12.)’라는 등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평가를 제시하였던 사실, 반면 2003년, 2004년경 원고의 사설 제목이나 기사의 소제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행정수도 개발 밑그림 정부부담 11조…당초예산액 2배로(2003. 11. 17.)’, ‘서울 50만명 줄이려 수도이전 45조 쓰나 원로학자 74명 반대 서명(2003. 11. 20.)’ 등 구체적인 정책비판 영역에서는 비용부담의 증가가 주로 강조되었고, 기타 ‘서울시 행정수도 이전 원점서 재검토(2003. 11. 1.)’, ‘천도,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하다(2004. 6. 12.)’, ‘수도이전, 국회가 전면 재검토하라(2004. 6. 19.)’, ‘수도이전, 국회열고 재론하라(2004. 6. 22.)’, ‘노정권, 이성 되찾아야 한다(2004. 7. 12.)’, ‘수도 이전하자고 아무 말이나 하나(2004. 8. 6.)’, ‘참여정부, 여론 뱉고 수도이전 할 건가(2004. 8. 12.)’ 등 수도이전계획 자체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의 대비와 검토라는 실질적이고 정책평가적인 접근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가 많이 게재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양정철이 작성하여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동아일보의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보도태도가 종전에는 비판은 하되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및 당위성도 긍정하고 행정수도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 방안까지 제시하였던 반면, 동일한 정책에 대하여 왜 현 정부 아래에서는 균형을 상실하고 비판 일변도의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언론사로서의 원고의 보도태도를 분석·비판하고자 함이 그 주된 것으로서, 결국 피고 양정철의 언론사인 원고에 대한 평가, 논평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표현에 있어 ‘저주의 굿판’, ‘입장을 수시로 바꿔가며 줄타기’, ‘낮부끄러울 정도의 적극적 지지입장’, ‘표변의 진수’, ‘한나라당의 구렁에 맞춘 청기·백기 게임’ 등 다소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에 대한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수사(修辭)적인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기사에서 그러한 논평의 전제된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보도 태도에 대한 입장변화를 지적하는데 있어 세부(細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

가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적인 의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양정철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게재한 행위는 그 일부 표현방법이 국정의 최고기관에서 공표하는 자료에 사용하기에 적절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언론기관인 원고의 보도태도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는 논평에 해당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위법할 정도로 모멸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 양정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

판결 2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의 사생활 침해에 비해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한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자 판결 (2004가합4722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

장판사)는 이○○(본명 : 이○○) 전 ○○ 대표이사가 일요신문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일요신문사가 2004년 6월 6일자 『처녀 갑부 이○○ △△ 대표의 과거』, 『이○○은 누구』 제하의 기사와 2004년 6월 13일자 『이○○ “사기 결혼”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가 이미 결혼한 전력이 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출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아들을 전 시댁에 맡겨 둔 채 사실상 방치하는 등 양육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해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경영관, 인생관, 결혼관, 가족관 등이 이미 언론매체 또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른바 사회 저명인사라 할 것이고,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가 된 경위, 언론매체들과 행한 원고의 인터뷰 내용, 그로 인해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한 일반 대중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전에 언론매체,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중 밝고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하여 더욱 유명해진 사정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원고는 자신의 개인 정보 중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결과적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의 사생활 침해에 비해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한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일반 대중들로서는 원고가 임의로 공개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다른 내용의 정보에 관하여도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도내용의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일부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평가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작용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위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각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도한 것은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으로서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보도 등의 목적의 공공성, 내용의 진실성, 표현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47227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 ○ (일명: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 우
담당변호사 최 정 환, 강 호 성,
이 도 형, 박 진 식, 김 재 용

피 고 : 1. 장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갈복성
2.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14층
대표이사 신 상 철
3. 이 ○ ○
서울 중구 정동 22, 14층
4. 감 ○ ○
서울 중구 정동 22, 14층
피고 2, 3,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평
담당변호사 박 영 주

변 론 종 결 : 2005. 7. 8.

판 결 선 고 : 2005. 8. 12.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1984년 세종대학 무용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무용을 전공하고 1994년 미국 뉴욕대에서 예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까지 10여 년 동안 발레리나로 활동한 경력의 소유자로, 2000. 5.경 온라인 게임개발 업체인 ○○을 창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2. 11.경부터는 여성 포털사이트 ○○클럽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2) 원고가 최대주주인 ○○이 2003. 5.경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 주식이 협회중개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기 시작하자, 원고는 ○○의 최대주주로서 수백억 원대의 주식평가차익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언론매체를 통해 발레리나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30대 독신의 여성 벤처기업가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처녀갑부’, ‘벤처 신데렐라’, ‘30대 미혼여성 갑부’ 등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이하 ‘피고 일요신문사’라 한다)는 주간신문인 ‘일요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이○○은 피고 일요신문사의 편집국장, 피고 감○○은 피고 일요신문사 사회부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 경위

(1) 원고는 2004. 초경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뉴욕시 부장검사가 되어 화제가 된 정○○과 결혼할 계획임을 전격 발표하여 또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2004. 3. 22.경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위성방송인 KBS코리아의 “김동건의 한국, 한국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동안 능력이 안 되어 가족을 가지지 못했지만, 정○○ 검사로부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와 닿았다’는 취지로 정○○과 결혼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세종대학교 재학 시절 임○○(1994. 1. 경 사망)을 만나 연애를 한 끝에 1986. 9.경 임○○과 혼인을 하였고, 이듬해 4.경 아들 임△△을 출산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과거 결혼 및 출산 전력을 잘 알고 있던 피고 장○○은 2004. 5. 4.경 위 “김동건의 한국, 한국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벤처 신데렐라 이○○ 씨가 말하는 가족의 의미는?”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경위

(1) 피고 감○○은 이 사건 게시물을 읽어본 후 피고 장○○을 찾아가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한 경위를 취재하게 되었고, 2004. 5. 27.경 피고 장○○의 소개로 임○○의 부친인 임□□을 만나 원고가 임○○과 혼인한 사실, 임○○과의 사이에 임△△이 태어났다는 사실 및 임△△의 현재 부양관계 등을 취재하였다.

(2) 피고 감○○은 2004. 5. 28.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피고 장○○ 및 임□□을 상대로 취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장○○을 잘 알지 못하며 자세한 대답은

이 사건 게시물을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 곧 자신의 자서전이 출간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자서전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3) 피고 갑○○은 원고로부터의 연락이 오지 않자, 원고에게 수 차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는 등 원고와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모두 무위로 그쳤고, 2004. 5. 31. 당일 발간된 원고의 자서전 '나는 이기는 게임만 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결혼한 사실이나 아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자, "처녀갑부 이○○ △△대표의 과거"라는 제목의 별지 제1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및 "이○○은 누구"라는 제목의 별지 제2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4) 피고 일요신문사의 편집국장인 피고 이○○은 편집회의를 주재하여 이 사건 제1, 2기사를 각 보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 일요신문사는 2004. 6. 6.자 일요신문을 통해 이 사건 제1, 2기사를 각 보도하였다.

(5) 이 사건 제1, 2기사가 보도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제1, 2기사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에 피고 갑○○은 원고의 반박 내용과 임□□의 재반박 내용을 담은 별지 제3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3기사는 2004. 6. 13.자 일요신문 제12면에 보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가 1호증의 1, 을 나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녀갑부' 등으로 유명해진 원고가 사실은 이미 결혼을 한 전력이 있고, 전 남편인 임○○과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출산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아들을 전 시택에 맡겨 둔 채 사실상 방치하는 등 양육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 3기사는 위와 같은 주된 내용 외에도, 전 남편인 망 임○○과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망 임○○과의 미국에서의 결혼생활, 망 임○○과 이혼을 하게 된 경위 및 이혼 후의 경과 등과 관련하여서도 임□□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예컨대 원고는 망 임○○의 기망으로 결혼을 한 후, 미국에서 합의이혼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기사에는 원고와 망 임○○이 뜨겁게 연애를 한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보도하고, 이 사건 제3기사는 협의이혼 사실은 간과한 채 원고가 망 임○○과 사별한 것처럼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혼인과 이혼 경위에 관하여 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이 사건 각 기사의 주된 내용에 부수한 정황적 사실에 불과하고 그것과 독립된 사실의 적시로서 별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위와 같은 주된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2.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주된 내용은

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1) 공공성

사업가의 경우 비록 자신의 업계에서 빼어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욱이 사업가의 결혼, 자식 양육 등과 같은 사생활은 일반적으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사업가 중 국민 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드러진 일부의 경우에는 공적 인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어느 사업가의 사업활동 및 이와 관련된 사생활이 다른 어느 사업가들과는 구별되는 남다른 점이 있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주 소개되거나, 사업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사업활동, 사생활 등을 언론을 통해 선전·공표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 이른바 사회 저명인사로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그의 사업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생활은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이 성공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수백억 원 대의 재산을 가진 성공한 기업가로서 뿐만 아니라, 발레리나 출신으로 30대의 독신 여성이라는 자신의 특이한 경력이 특히 주목을 받아 언론매체를 통해 ‘처녀갑부’, ‘벤처 신데렐라’, ‘30대 미혼여성 갑부’ 등으로 널리 알려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나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벤처사업가로 성공한 후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수많은 언론매체들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배경에 관한 내용, 세종대 무용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사실, 예술가로 활동한 내용, 무용학 대학교수로의 안정된 길을 버리고 벤처기업 ○○을 창업하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자신의 의, 식, 주와 취미생활 등 사생활 영역에 관한 내용을 스스로 언론에 공개한 사실, 더욱이 결혼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일에 미쳐 일과 결혼했다’, ‘능력이 없어 혼자 산다’ 등으로 대답하여 자신을 미혼으로 묘사한 사실, 2004. 초경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

상형이 정○○ 검사라고 밝히고, 그 후 정○○ 검사와 결혼 계획까지 발표하여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실, 2004. 5. 31.에는 자신의 인생관, 경영관, 결혼관, 연애관, 가족관 등을 자세히 저술한 자서전을 출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여성기업인에 대한 많은 장벽과 편견이 존재하는 현재 우리의 사회·경제·문화적인 환경에서 원고가 일구어 낸 기업가로서의 성공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원고가 널리 알려졌다면 원고를 사회 저명인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서전까지 출간하고, 그 이전에 언론매체와의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의 상당 부분을 노출시켰다는 점, 언론매체의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가 단순히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여성기업인의 삶을 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역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배경, 학력, 발레리나로서의 특이한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남다른 자신의 경영철학 및 기업가로서의 성공에 큰 밑거름이 된 것으로 설명한 점, 더욱이 원고는 30대의 독신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았는데, 기자들의 결혼에 관한 질문에 우회적으로나마 자신이 결혼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대외적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생활 중 상당부분은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 저명인사로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의 사생활 부분에 관하여, 기존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원고를 미혼으로 잘못 알고 있고, 또한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인생관, 가족관, 사업관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받은 일반 독자들은 원고가 과거 결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들의 공공성은 인정된다.

(2) 진실성 및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발간한 자서전 서문에 임△△의 존재를 명시하는 등 과거 결혼 전력이나 아들의 존재를 감춘 사실이 없고, 한편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임□□에게 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더구나 임□□은 임△△으로 하여금 고모를 엄마로 부르게 하고, 임△△이 원고의 집에서 생활하던 2000.경 가출하여 임□□의 집으로 갔을 때에도 임△△을 돌려 보내지 아니한 채 원고 몰래 임△△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원고와 임△△의 접촉을 막았는바, 이러한 사정 등으로 원고는 아들을 양육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일 뿐, 아들의 양육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처녀갑부’, ‘미혼여성 갑부’ 등으로 소개되었고, 또한 원고 자신도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은 가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과거의 결혼 전력이나 아들의 존재를 감추어 왔음이 분명하고, 임□□이 원고가 미국유학 후 귀국한 무렵 임△△을 원고에게 곧바로 보내지 아니한 것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수입이 없는 원고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임△△이 사춘기에 접어들자 1999.경 원고에게 임△△을 보내었고, 임△△이 원고의 집에서 나와 임□□의 집으로 왔을 때에도 임□□은 원고에게 임△△을 데려갈 것을 수 차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임△△을 데려가지 않았으며, 이에 임□□은 임△△의 장거리 통학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부득이 전

학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① 원고는 1986. 9.경 세종대학교 무용학과에 재학 중 당시 대학입시에 실패하여 재수를 준비 중이던 임○○과 혼인하였고, 이듬해 4.경 아들인 임△△을 출산하였다.

② 임○○은 1990.경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사회 신문사에 취직을 하였고, 원고도 곧이어 임△△을 시부모인 임□□ 등에게 맡긴 채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나, 미국에서의 임○○과 원고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와 임○○은 1992. 7.경 미국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③ 임○○은 1993. 말경 위암말기 진단을 받고 귀국하여 이듬해 1.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2.경 미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1995.경 귀국하였다.

④ 원고의 전 시부모인 임□□ 등은 원고가 귀국한 후에도 계속 임△△을 양육하다가, 1999. 1.경 임△△을 서울 잠원동 소재 원고의 집으로 보내었는데, 임△△은 2000.경 원고로부터 성인 만화책을 본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고 가출하여 다시 원고의 전 시댁인 임□□의 서울 구로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⑤ 임□□은 원고에게 임△△을 다시 데려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을 다시 데려오지 않았고, 이에 임□□은 임△△이 서울 구로동에서 서울 잠원동까지 먼 거리를 통학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임△△을 구로동 근처의 중학교로 전학시켰다.

⑥ 임□□은 2003. 3.경 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그 무렵 원고가 성공한 미혼의 여성 벤처사업가로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기 시작하자, 임△△의 양육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에 따라 2003. 8.경 원고의 남동생인 이△△을 만나 논의한 끝에 임△△을 마산에 살고

있는 외할아버지에게 보내기로 합의하였는데, 다만 임□□은 원고가 직접 임□□의 집을 방문하여 임△△을 데려갈 것을 요구하였다.

⑦ 원고는 임□□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임□□의 집을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임□□은 2003. 10. 4.경 재차 원고에게 직접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임△△을 데려갈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자, 같은 해 11. 3.경 임△△의 외할아버지에게 원고가 직접 임□□의 집을 방문하여 임△△을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었고, 이에 대하여도 원고 또는 임△△의 외할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⑧ 임□□은 원고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2004. 초경 원고가 정○○과 곧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2004. 3. 22.경에는 원고가 한국방송공사 위성방송인 KBS코리아의 “김동건의 한국, 한국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동안 능력이 안 되어 가족을 가지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가 임△△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2004. 4. 10.경 원고에게 그동안 임△△을 양육한 데 따른 양육비, 왜곡 보도의 중단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었다.

⑨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가 게재되고 보도된 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한편 피고들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중 임△△은 검찰청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임□□ 등이 자신이 원고에게 가는 것을 막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가 1호증의 1, 을 나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나 제6호증, 을 나 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결혼을 한 전력이 있고, 아들을 출산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아들을 전 시대에 방치한 채 양육에 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과거의 결혼 전력 및 아들의 존재를 감추어 왔다는 취지의 표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처녀 갑부’ 등으로 소개되어 왔고, 더구나 각종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에 미쳐 일과 결혼했다’, ‘능력이 없어 혼자 산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미혼임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정○○과의 재혼을 앞두고 방송에 출현하여서는 ‘그동안 능력이 안 되어 가족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은 그동안 미혼이었고, 따라서 혼인으로 인해 맺어진 가족도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오래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혼인하여 아이를 낳은 과거를 언론매체를 통해 세세히 밝힐 의무는 없고 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를 접한 일반 독자나 청취자들로서는 원고를 처녀 또는 미혼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에게 고등학생인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은 일반 독자나 청취자들에게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가 과거 결혼을 한 전력이 있고, 아들을 출산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감추어 왔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그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고, 다만 원고의 태도를 두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듯한 일부 표현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피고들

의 원고에 대한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고, 이러한 의견 내지 평가는 그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는 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작용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과거의 결혼 전력 및 아들의 존재를 감추어 왔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은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아들을 사실상 방치하여 양육책임을 회피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약 1년 동안만 임△△을 양육하였을 뿐, 그 나머지 기간은 물론 지금도 원고의 전 시부모인 임□□이 임△△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임△△을 전 시대에 맡긴 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것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한편 임□□이 2003. 8.경부터 원고 측에 수 차 임△△을 데려갈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아니한 채 임△△을 데려가지 아니한 점, 임△△이 검찰청에 제출한 진술서(을 나 제6호증)에 비추어 보면 임□□ 등이 원고와 임△△의 접촉을 막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그러한 행동을 실제로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들을 사실상 방치하였다고거나 양육책임을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내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표현 역시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보도내용의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일부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평가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작용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위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생활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은 원고의 결혼과 이혼의 전력, 결혼 생활 그리고 출산과 자식의 양육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것임에 의문이 없고, 한편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이 사건 각 기사들을 보도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 의문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은 이미 다른 언론매체들을 통해 보도되었거나 원고 스스로 공개한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제3기사는 이 사건 제1, 2기사에 대한 원고의 반박 또는 해명 내용을 임□□의 재반박 내용과 함께 보도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기사와 비교하여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기사만이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어떤 보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므로,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衡量하여 그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할만한 한도를 넘었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생활 공표의 위법성은 공표된 사생활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표현 목적의 공공성),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표현 내용의 진실성),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제와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주로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표현 방법의 상당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2) 그러므로 살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혼인을 하였으나, 전남편의 거짓말과 무능력으로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주로 전 시댁의 보호 아래 자랐으며, 원고가 아들과 함께 생활한 기간은 아들이 이미 사춘기에 접어든 이후의 불과 1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전 시댁 부모님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회피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비록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나 함께 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에 아들과 속 깊은 정을 나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무조건적인 모성애만을 강조하여 다른 보통의 부모와 동일한 잣대로 원고의 가족관계를 함부로 파헤치고,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원고는 전 시댁 부모님들의 진심을 오해하여 필요 이상의 감정 대립을 일삼아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고, 전 시댁 부모님들의 경우 역시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여 원고가 손자에게, 손자가 원고에게 서로 의지하고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워야 할 것인데, 오히려 원고에 대한 불신과 편견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오해로 인해 원고와 손자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와 같이 원고와 전 시댁 부모들 사이의 대화부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오해에 기인한다고 여겨지는바, 이와 같은 개인적으로 불행했던 과거사 그리고 원고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재의 왜곡된 가족관계가 일일이 외부에 밝혀지는 것은 원고로서는 결코 바라지 않는 일임이 분명하고, 일반 독자로서도 원칙적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특수한 개인사를 속속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자신의 경영관, 인생관, 결혼관, 가족관 등이 이미 언론매체 또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른바 사회 저명인사라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가 된 경위, 언론매체들과 행한 원고의 인터뷰 내용, 그로 인해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한 일반 대중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전에 언론매체,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중 밝고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하여 더욱 유명해진 사정이 엿보이는바, 비록 원고는 자신의 개인정보 중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결과적으로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의 사생활 침해에 비해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한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일반 대중들로서는 원고가 임의로 공개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다른 내용의 정보에 관하여도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 상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기사의 주된 내용 중 원고가 과거 결혼한 전력이 있고, 사망한 전남편과의 사이에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으며, 아들은

현재 전 시택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기사의 표현 방법의 상당성에 관하여도 보건대, 원고를 미혼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목적으로 원고의 과거 결혼 경력과 아들이 존재함을 전 시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밝히고,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원고의 전 남편과의 혼인 경위, 미국 유학 생활 중의 혼인생활, 전 남편의 사망 경위, 귀국 후의 아들의 부양관계 등을 적시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달리 흥미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기사는 피고들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의 사생활 영역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된 내용을 상당한 방법으로 게재 또는 보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도한 것은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의 것으로서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보도 등의 목적의 공공성, 내용의 진실성, 표현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

판결 3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의
반론을 허용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는
반론보도의 요건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9.자 판결 (2005카기5171)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경인방송(ITV)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지난 2005년 4월 18일 방송된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그램의 '미디어 이슈' 코너에서 '경인지역 새 방송,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법인이 여전히 존속중임에도 불구하고 "ITV가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자

막을 표시하여 진실을 왜곡했고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토론자들이 “2004년 12월 31일 폐업을 단행한 신청인이 불과 4개월 만인 2005년 4월 1일 영업을 재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4년 12월 31일자 폐업은 신청인의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론보도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 도중 ‘iTV가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자막을 화면에 표시한 사실은 맞으나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 도중 수차례에 걸쳐 ‘iTV 법인이 남아 있긴 하지만 TV 사업권이 없고, TV 방송을 할 수 없다’는 등 신청인의 법인이 존속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2005년 1월 1일자로 ‘iTV’의 방송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막 중 ‘iTV가 없어진 것’이라는 표현의 취지는 ‘iTV’의 방송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자막의 취지를 신청인 법인 자체가 소멸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4년 12월 31일자 폐업이 신청인의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발언에 대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반부에서 신청인의 폐업이 위장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신청인으로서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는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원문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

의 반론을 허용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는 반론보도의 요건이 아니다”라며 “신청인의 2004년 12월 31일자 폐업이 위장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한 이익의 존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카기5171 반론보도심판

신 청 인 : 주식회사 경인방송

인천 남구 학익동 587-46

대표이사 이 춘 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길

담당변호사 김 옥 신, 양 중 관

피 신 청 인 :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 서초구 우면동 92-6

대표자 사장 권 영 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룝

담당변호사 장 주 영

변 론 종 결 : 2005. 7. 15.

판 결 선 고 : 2005. 7. 29.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주 월요일 23:40

부터 화요일 00:30 사이에 방송되는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그램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반론보도문 내용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금 일백만 (1,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주 월요일 23:40부터 화요일 00:30 사이에 방송되는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그램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2 반론보도문 내용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신청인에게 1일 금 이백만(2,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제출된 소명자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방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7. 1. 7.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인천, 경기 일원을 방송권역으로 한 지상파 TV 채널 'iTV', FM 라디오 채널 'iFM'을 각 운영하여 왔는데, 2004. 12. 21.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결정으로 인해 2005. 1. 1.부터 TV 채널인 'iTV'의 방송 중단이 예정되자, 2004. 12. 31.자로 폐업을 단행하여 'iTV'와 'iFM'의 방송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에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였으나, 그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05. 4. 1.자로 영업을 재개하여 아직 방송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 FM 라디오 채널인 'iFM'의 방송을 다시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신청인은 2005. 4. 18. 방송된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미디어 이슈' 코너에서 "경인지역 새 방송,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iTV'의 방송 중단 이후 경인 지역의 새로운 방송 설립 움직임을 보도하였는바, 그 보도 과정에서, ① 시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화면에 "iTV가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자막을 표시하였고(이하 '보도사실 ①'이라 한다),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토론자들은 2004. 12. 31. 폐업을 단행한 신청인이 불과 4개월 만인 2005. 4. 1. 영업을 재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2004. 12. 31.자 폐업은 신청인의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보도사실 ②'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은 비록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결정으로 인해 'iTV' 방송을 중단하게 되었지만, 신청인 법인은 여전히 존속 중에 있고, 디지털 TV 방송과 FM 라디오 방송은 아직 그 허가 기간이 남아 있으며, 방송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으로 그 당부를 다투고 있는 만큼, 피신청인의 보도사실 ①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신청인의 2004. 12. 31.자 폐업 결정은 'iTV'의 방송 중단으로 인해 신청인의 주 수입원인 광고 영업이 중단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위장 폐업 의혹을 제기한 보도사실 ②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지 2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도사실 ①의 내용은 신청인 법인이 소멸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상파 TV 채널인 'iTV'의 방송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도사실 ②는 신청인의 폐업 및 영업 재개의 경위를 살펴볼 때, 위장폐업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 'iTV'의 방송 중단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역방송의 설립에 관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상 이 부분 보도는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을 결하였다고 다룬다.

나. 판 단

(1) 보도사실 ①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 도중 "iTV가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자막을 화면에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상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진행자 및 토론자들이 그 진행 도중 수차례에 걸쳐 "최근 폐업을 선언했던 경인방송 법인이 라디오 방송을 재개하였다", "iTV 법인이 남아 있긴 하지만 TV 사업권이 없고, TV 방송을 할 수 없다", "돌발적으로 폐업을 하겠다고 했던 iTV 법인이 다시 사업재개를 했다"고 발언한 점, ㉡ 신청인은 방송사업자로서 지상파 TV 채널인 'iTV' 이외에 FM 라디오 채널인 'iFM'도 함께 운영하여 왔던 점, ㉢ 2004. 12. 21.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결정으로 인해 2005. 1. 1.자로 'iTV'의 방송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막 중 'iTV가 없어진 것'이라는 표현의 취지는 2004. 12. 21.자 방송위원회 결정에 의해 신청인이 운영하던 방송 채널 중 하나인 'iTV'의 방송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 도중 수 차례 걸쳐 신청인 법인이 존속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점을 고려할 때, 위 자막의 취지를 신청인 법인 자체가 소멸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자막의 내용이 신청인 법인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오인한데서 비롯된 보도사실 ①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그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2) 보도사실 ②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공표된 보도사실 ②의 내용으로 인해 신청인으로서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폐업 및 영업 재개 경위를 살펴볼 때,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크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상 위장 폐업인지 여부는 지엽말단적인 사항이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반론보도 청구는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원문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반론을 허용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는 반론 보도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2004. 12. 31.자 폐업이 위장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한 이익의 존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기록상 소명되는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반부에서 신청인의 폐업이 위장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신청인의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가 단순히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3) 반론보도문의 범위 등

결국, 문제가 된 피신청인의 보도 내용과 이로 인하여 침해된 신청인의 법익, 신청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정하고, 그 보

도 방법은 TV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하기로 하며, 아울러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주문 제2항의 간접강제명령을 함께 발령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 2항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태 운
판사 전 휴 재
판사 이 효 제

〈별 지1〉 반론보도문

본 프로그램의 2005년 4월 18일 방송 내용에 대하

여 주식회사 경인방송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반론 보도 판결이 있어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방송 도중 진행자와 토론자는 작년 말 경인방송의 폐업은 경인방송의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방송의 폐업결정은 방송위원회의 TV 재허가 추천 거부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려진 조치일 뿐 위장 폐업을 한 것은 아니며, 최근에 경인방송은 사업을 재개하였는데, 이는 회사의 직원, 주주 그리고 회사의 채권자들과 시민들이 현재 허가기간이 남은 FM 방송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정상화시키기를 강력히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주식회사 경인방송의 반론 내용이었습니다. □

판결 4

사생활 침해에 있어 수인해야 할 범위가 큰 공인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 또는 밀접한 관련자에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 진실성이나 진실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자 판결 (2004가합8252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선흠 부장판사)는 유명 연예인 전지현(본명 : 왕지현)과 그녀의 소속 매니지먼트사 (주)○○○(대표 정○○)가

뉴시스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뉴시스와 소속기자 민○○은 각자 3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피고 최해운이 대표이사로 있는 뉴시스와 소속기자 피고 민○○이 지난 2004년 9월 29일자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 왕지현이 소속사 사장과 결혼한다는 허위 내용을 적시, 이를 뉴시스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게재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입었고 이 기사로 원고는 물론 원고가 소속된 회사의 명예도 훼손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자 ‘스타’로서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일 수 있으며 이 사건 기사의 경우 그 내용이 일반인들로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라 말하고 “그러나 원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과 결혼할 예정이었거나 예정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원고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등을 상대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 등을 한 다음에 보도해야 함에도 피고 민○○은 특별히 원고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취재 없이, 단지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듣고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민○○ 및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민○○은 원고 왕지현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이 사건 기사의 직접 작성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민○○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피고

최해운이 대표이사로서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82527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1. 왕 지 현(예명 : 전 지 현)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 ○

원고들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88

삼보빌딩 1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우

담당변호사 표 종 록

Ⅱ 고 : 1.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51-8

대표이사 최 해 운

2. 최 해 운

3. 민 ○ ○

피고 2 3의 주소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1

서원빌딩 7층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일

담당변호사 임 홍 중, 정 성 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상 현

변 론 종 결 : 2005. 6. 22

판 결 선 고 : 2005. 7. 6.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 민○○은 각자

원고 왕지현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9.부터 2004.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왕지현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최해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왕지현과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 민○○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왕지현이, 나머지 1/2은 위 피고들이, 원고 왕지현과 피고 최해운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왕지현이,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왕지현에게 7억 원,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3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왕지현은 ‘엽기적인 그녀’, ‘내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화 등에 출연하였고, 광고모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며, 원고 회사(원래 상호는 ○○○○○○○○였으나 2004. 8. 2.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원고 왕지현에 대한 매니지먼트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터넷을 통한 뉴스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

여 피고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newsis.com)에 기사를 게재하면 그와 동시에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kr.yahoo.com) 등에 자동적으로 기사가 전송되는 형태로 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기사제휴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피고 최해운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민○○은 피고 회사 연예부 소속의 기자로 아래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2004. 9. 29.자 기사

피고 회사는 2004. 9. 29. 제목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이라는 제목 하에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영화배우 전지현(24)이 올 11월 결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지현 측근에 따르면 “전지현은 자신의 소속사인 ○○○○ ○○의 사장 정○○(37)씨와 11월께 결혼하기로 일정을 잡았으나 정씨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씨의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일정을 다시 잡아 결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혼은 전지현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결혼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지현은 신랑 후보자인 정○○ 씨에게 중학교 재학 시절 발탁되어 연예계에 입문했으며 오늘날 톱스타로 성장했다. 특히 전지현의 결혼은 톱스타의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화제지만 배우자가 소속사 사장이란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97년 패션지 ‘에폴’의 모델로 데뷔한 전지현은 프린터 CF에서 테크노 댄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배우. 또 지난 1999년 ‘화이트 발렌타인’으로 영화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전지현은 이후 ‘시월애’(2000년), ‘엽기적인 그녀’(2001년), ‘4인용 식탁’(2003년),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2004년)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연예계는 김정수-신은경 커플에 이어 또 한 쌍의 톱스타와 매니지먼트

트사 사장의 결혼이 성사될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ewsis.com)에 게재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kr.yahoo.com) 등에 전송하여 게재되게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왕지현의 사생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의 기사임에도 피고들은 그 내용 등에 관하여 원고 왕지현 등에게 사실 확인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바 없이 보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왕지현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명예가 훼손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자 인터넷상에는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원고 왕지현을 비난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왕지현이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인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도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되었다.

(3) 나아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왕지현의 광고모델로서의 활동 등 연예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되어 원고 왕지현 및 원고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유명 연예인인 원고 왕지현의 결혼 여부에 관련된 것이므로 일반 대중의 중대한 관심사에 관한 것임은 물론 원고 왕지현의 결혼에 관련된 사실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었던

것이고, 피고 민○○이 그에 관한 사실 여부에 관하여 여러 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연예인 매니저 등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또 2004년 8월말 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왕지현의 결혼 상대방으로 보도된 정○○과 친분관계에 있던 ○○기획 주식회사 대표인 김○○로부터 “전지현이 소속사인 당시 ○○○○ ○○의 사장 정○○과 결혼하기로 했으나 정○○의 개인사정 때문에 연기되었고, 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일정을 다시 잡아 결혼한다는 것” 등의 얘기를 들은 후에 기사화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기사의 작성·보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원고 왕지현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그러한 법적 이익을 이하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이라 한다)이다.

한편, 언론 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필요가 있는 등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상의 또 다른 권리인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치의 이익형량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프라이버시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란 언론 기관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위 대법원 96다11327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언론 보도라도 그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론 기관이 그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왕지현이 ‘2004년 11월경에 소속사 사장과 결혼할 것’이라는 제목 하에, 그 내용에서 ‘원고 왕지현의 측근’을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 왕지현이 ‘2004년 11월 경 결혼 예정이었는데, 상대방인 정○○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한편 그와 같은 결혼 일정은 원고 왕지현 측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은 원고 왕지현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왕지현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바와 같은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프라이버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한 이상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왕지현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기사에 위법성이 없는지는 뒤에 서 판단한다).

(3) 한편, 원고 왕지현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최해운에 대하여, 피고 최해운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401조에 근거하여 피고 최해운도 다른 피고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최해운이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피고 최해운에게 이 사건 기사의 작성·보도와 관련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 최해운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이외에 더 나아가 그에게 이 사건 기사의 작성·보도와 관련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왕지현의 피고 최해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의 여부

(1)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이므로, 어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려면 그 보도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왕지현의 결혼 상대방이 그녀의 소속 매니지먼트사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정○○이 원고 왕지현을 발탁하여 이른바 ‘스타’로 키웠고, 원고 왕지현의 결혼은 ‘톱스타’인 그녀의 결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회사의 사장과의 결혼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적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 왕지현이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결혼 상대방인 정○○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외에는 원고 회사에 관하여는 별다른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고 있고, 그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된 것은 원고 왕지현의 결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위한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물론 미혼의 유명 여자 연예인이 결혼을 함에 따라 ‘인기’가 종전에 비해 떨어진다거나, 이 사건 기사를 접한 일부 독자들이 그 연령대나 연예분야에의 관심 정도, 원고 왕지현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정도 등에 따라, 청순한 이미지를 가진 원고 왕지현이 그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사장과 결혼한다는 사실과 그 내막 등에 대한 막연한 추측 등으로 갑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 왕지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으나, 비록 미혼의 여자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여부에 관련된 사실적시’만으로 그 대상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 회사의 목적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이

직접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나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의 직접 당사자인 원고 왕지현의 소속사이자 정○○이 경영하는 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피고 회사, 피고 민○○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여부

원고 왕지현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로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 왕지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의 경우 미혼의 유명 여자 연예인인 원고 왕지현의 결혼 예정 사실 등을 보도하고 있어 그 내용이 일반인들로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기사 내용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

(가) 우선,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을제4호증, 을제5, 6호증의 각 1 내지 7, 을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이 원고 왕지현이 2004년 11월 경 또는 그 이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과 결혼할 예정이었거나 예정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피고 민○○ 및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4호증, 을제5, 6호증의 각 1 내지 7,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소문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 왕지현의 결혼 예정 여부에 관한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할 정도로 신빙성 있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신속한 보도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원고 왕지현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등을 상대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 등을 한 다음에야 보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민○○은 특별히 원고 왕지현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취재 없이, 단지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로부터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소문을 들었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른 매니지먼트사의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을제7호증(검사 작성의 피고 민○○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소문이 퍼져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도 언론 기관인 이상 막연히 이를 기사로서 보도해버리면 단순히 연예계 내부 등에서 떠도는 소문이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문’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인터넷 언론의 광역성, 유포의 신속성 및 편의성 등의 특성상 한번 잘못된 보도를 하면 그 오보를 돌리기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민○○ 및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민○○은 원고 왕지현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이 사건 기사의 직접 작성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민○○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왕지현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원고 왕지현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 피고 민○○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금전으로나마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원고 왕지현의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특별히 제약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가 원고 왕지현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특별히 악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미혼의 유명 여성연예인인 원고 왕지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사생활에 관하여는 일반인들에 비하여는 더 넓은 범위에서 수인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사 내용, 원고 왕지현과 피고 회사의 지위, 이 사건 기사에서의 표현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 왕지현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왕지현의 광고모델 등으로서의 활동 등에 지장을 미칠 것이 명백하여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 외에 재산상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3억 원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왕지현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위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 결

결국 피고 회사, 피고 민○○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왕지현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게재일(불법행위일)인 2004. 9. 29.부터 원고 왕지현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2004. 11. 17.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왕지현의 피고 회사 및 피고 민○○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왕지현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최해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선 흠
판사 강 재 원
판사 김 윤 정 □

미국 판결

**공무원 급여의 지출은 공적지출이고 그 총액과 수령자 이름은
공적 기록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은 자신의 급여 정보를
비공개로 할 사생활 보호 이익을 갖지 못한다**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ROFESSIONAL AND TECHNICAL
ENGINEERS v. SUPERIOR COURT】

캘리포니아 제1항소법원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ROFESSIONAL AND TECHNICAL
ENGINEERS(항소인) 對 SUPERIOR COURT(피항소인)

2005년 4월 18일.

캘리포니아주 Alameda 카운티 제1심 법원의 Brick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한 항고임.

신문사 발행인이 캘리포니아주 공문서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 (CPRA))에 의거하여 시를 상대로 2003-2004 회계연도까지 사이에 적어도 10만 달러 이상을 번 市공무원 전부의 이름, 직업, 총 급여 내역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을 강제하는 영장 발부를 법원에 신청함. 제1심법원은 위 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소송참가인인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항고함.

위 항고를 기각함.

항소심 재판장 McGuiness, 배석판사 Parrilli와 Corrigan.

【판시 요지】

(1)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市공무원은 자신의 급여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생활보호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2) 치안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경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Parrilli, J.

개인의 재정 상태에 관한 사생활보호권 때문에 고소득 공무원의 이름과 급여 내역의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당원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내린다.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는 한 그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사생활보호권의 정도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다. 그러나 공무원 급여의 지급은 공적 지출이고, 그 총액과 수

령자 이름은 공적 기록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즉 특별한 사정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공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적 기록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이 사안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Contra Costa 신문사(CCN)가 발행하는 2개의 신문의 기자들이, 캘리포니아주 공문서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 (CPRA))에 의거하여, 오클랜드(Oakland)시를 상대로 2003-2004 회계연도까지 사이에 적어도 10만 달러 이상을 번 시공무원(기본급여가 10만 달러 미만이라도 초과근무수당이나 기타 수당을 포함하면 10만 달러를 넘는 자를 포함함) 전부의 이름, 직업, 총 급여 내역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시는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시는 그 거부 근거로,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구성할 수도 있는 개인신상 파일의 공개를 금지한 주법령 6254조 (c)항, 정당하게 보호받는 기록에 대한 면책조항을 규정한 주법령 6254조 (k)항, 비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보다 클 때 구체적 사안에 따른 면책을 규정한 주법령 6255조, 치안공무원의 개인적 기록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형법 832.7조, 사생활보호에 관한 주 헌법상의 권리, 2개의 항소심 결정(급여에 관한 정보 중에서 시공무원의 신분을 포함시키지 말도록 명한 가처분결정을 인용한 'Teamsters Local 856 v. Priceless' 사건과, 치안유지공무원의 급여기록은 형법 832.8조 (f)항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다고 판시한 'City of Los Angeles v. Superior Court(2003)' 사건)을 들었다.

신문사(CCN)는 CPRA법을 근거로 법원에 제출명령 영장을 신청하였다. 그 신청서에서 신문사는 '시가 종전부터 계속 급여내역을 공개하여 왔었고, 시 스스로 제정한 햇빛 조례(Sunshine Ordinance)에 의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 정보는 '시공무원의 급여 내역과 자질', '과도한 초과근무 문제', '있을지도 모를 정실이나 친척등용', '시가 건축제정 기간동안 세금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일반 대중에게 알려주는 신문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심법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인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rofessional and Technical Engineers, Local 21'(Local 21)과 'the Oakland Police Officers Association'(OPOA)의 소송참가를 허가하였다. Local 21 노동조합은 소송참가서를 제출하면서 "시공무원의 급여에 대한 과거의 신문보도를 보면, '시공무원들이 탐욕스럽고, 그만한 급여를 받을 가치가 없으며, 과도한 봉급을 받고 있다'는 부당한 암시가 기사에 내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riceless' 판결은 공무원들의 사생활보호권을 인정하는 판례법상의 경향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주장하였다. OPOA 노동조합은 변론요지서에서 '신문사의 공개요구는 치안공무원인 경찰관에게 해악적이고 부당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법 832.7조뿐 아니라 Priceless' 판결과 City of Los Angeles 판결의 판시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심문절차를 마친 후 제1심법원은 신문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그 인용결정을 하면서 'CPRA법에 의하여 시나 노동조합은 공개에 대한 면책사유를 주장할 입증책임을 지게 되고, 그 면책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는 시공무원은 종전부터 그들의 급여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왔던 관행에 비추어 급여내역에 관한 사생활보호권을 가

지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급여내역의 공개가 당사자에게 곤혹스러움이나 신분도용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또 '급여 내역에 관하여도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이익이 있을지라도, 공무원 급여에 대한 공적 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비효율성, 정실, 친척등용, 부정행위 등을 감시하는 공적 이익이 사생활보호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결론내렸다.

법원은 형법 832.7조 위반이라는 OPOA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경찰관의 급여내역은 위 형법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사기록(personnel records)'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OPOA 노동조합은, "형법 832.8조 (f)항의 포괄조항을 보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다른 市공무원들이 제기한 사생활 침해주장을 배척한 것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제1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불문하고 자신들의 직업이나 급여내역이 언론매체에 공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오클랜드에서는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높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다. 이 사건에서의 공개신청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아니며, 그 공개에 의하여 추구되는 공공의 이익은 비공개에 의한 이익보다 더 크다".

Local 21 노동조합은 당원에 항고를 하면서 제1심법원의 결정의 중지를 구하고 있다. 당원은 이 중지신청을 기각하지만, 이 사건 항고의 쟁점은 공적 이익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원인을 입증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고, 더 심리를 하였다. OPOA 노동조합도 별도의 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市는 위 항고에 참가하지 않았다.

검 토 (DISCUSSION)

당원은, 확실한 증거에 기초한다면 그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제1심법원의 판시를 독자적으로 검토한다. 이 사건에서의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이유와 결론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당원은, 신문사 측의 공개요구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제1심법원의 견해에 동의한다. 노동조합은 '市가 과거에 공무원의 봉급내역과 이름을 관행적으로 공개하여 왔었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오클랜드에서는 높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그들의 봉급내역에 관하여 사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당원은 사생활보호 문제에 관하여 제1심법원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신문사의 공개요구라는 국지적 상황을 뛰어넘어 새로운 분석을 하고자 한다. CPRA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과 우리 대법원이 밝힌 사생활보호권의 연혁을 검토한 결과 당원은, "공무원의 이름과 급여내역은 '금전적인 사생활보호영역'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공공정책과 미국 공공고용의 확립된 규범"이라고 결론짓는다. 당원은 이러한 결론을 Part 2에서 설명하고, Local 21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무원의 권리'에 관련된 반론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노동조합은, "City of Los Angeles 판결과 Priceless 판결에서는 다른 접근방식을 보여주었는데, 그 판결은 市가 과거의 관행을 변경하도록 동기유발을 하여 왔다"는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 하지만 당원은, City

of Los Angeles 판결이 이례적이고 설득력이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당원은 Priceless 판결의 판시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위 판결들은 Part 3에서 다룬다. Part 4에서는 “형법 832.7조에 의하여 치안공무원의 신분비공개권리가 보장된다”는 OPOA 노동조합의 주장을 검토하고 이를 배척하기로 한다.

당원은, 판시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당원은, 오로지 ‘높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과 ‘그 이름 및 총 급여 내역’과 관련하여서만 판단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만일 10만 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만 해당하는 주장이 있다면, 당원은 그러한 주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당원은, 공무원들의 세부적인 재정상태에 관한 사생활보호권에 대하여도 의문을 던지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의 이름이나 급여내역에 대한 사생활보호 이익이 부족하다고 하여 공무원들이 ‘비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보다 클 때 구체적 사안에 따른 면책을 규정한 주법령 6255조’ 하에서 그 비공개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1. CPRA법과 사생활보호권(The CPRA and Privacy Rights)

당원이 종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생활보호권’과 ‘공개’ 사이의 갈등은 CPRA법에서는 본질적이고 명백한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보호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국회가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활동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은 이 주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가진 근본적이고도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는 점을 천명하였다”.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법령 6254조 (c)항의 CPRA법 면책조항은 “그 공개가 개인의 부당한 사생활침해를 구성할 수도 있는 개인적 자료, 진료기록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의 비공개를 인정하고 있다.

의회는, 공적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정부기관 측에 면책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공개 쪽에

유리하도록 가중치를 두어왔다. “정부기관은, ‘문제가 된 이 장의 명문 규정에 따른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또는 ‘기록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법령상의 공개 면책조항은 엄격하게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사생활보호권을 가진다. 공적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익명성은 보장받을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공무원의 사생활보호권’에 양보하여야 한다.

우리 주 대법원은, 사생활보호라는 주(州)헌법상의 권리침해를 구성하는 3가지 요건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 (1) 적법하게 보호될 수 있는 사생활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2) 그 상황에서 사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을 것, (3)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것 등이다. 이 사건에서 당원은, 정보적 사생활(informational privacy), 다시 말해 감시나 간섭 없이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이익(자율적 사생활, autonomy privacy)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민감한 정보의 공개를 막아야할 이익’에 관심이 있다. 정보적 사생활(informational privacy)은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보호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핵심 가치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침해소송’을 평가하는 기준은, ‘공문서의 공개가 주법령 6254조 (c)항 하에서 개인의 사생활보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할 때 적용된다.

특정사건에서 적법하게 보호받는 사생활보호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판단문제이다(Hill v.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n., (1994) 7Cal4th 1, 39-40, 26 Cal.Rptr.2d 834, 865 P.2d 633). “특정종류의 정보는 ‘확립된 사회규범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개인의 통제를 극대화할 필요성을 인식할 때 또는 당혹감이나

모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 사적(개인적)인 것이 된다". "확립된 사회규범이 특정 종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법의 근거, 즉 보통법의 발전, 헌법의 발전, 법령의 제정 그리고 사생활보호 주도권에 수반하는 투표토론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2. 공무원의 이름과 급여내역에 관한 사생활보호이익

보통법의 발전은 Hill 사건의 판결법원이 '특정상황 하에서 확립된 사회규범이 정보적 사생활보호권을 정당화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시한 첫 번째 근거이다. 'City of Los Angeles' 판결과 'Priceless' 판결 전의 캘리포니아 판례법은 공무원급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샌디에이고 유니언 판결(San Diego Union v. City Council (1983) 146 Cal.App.3d 947, 196 Cal.Rptr. 45)의 사안을 보면, 신문사는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비공개로 비선출직 시공무원의 급여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일'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시의회는 정부법령 54957조(브라운 법안의 일부)에 규정된 '인사기록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하였다. 시의회는, '인사기록 면책조항'이 인사문제에 관한 토의 중 대중으로부터의 부당한 당혹감으로부터 피용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4항소법원은 시의회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급여와 수당에 관한 협정은, '공개토론과 궁극적인 선거 인준'을 보증하는 실질적인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시예산문제의 구성요소가 된다. 공적 가시도(可視度)는, '정치적으로는 공적 실천주의를 기르고, 공적 존재물로 하여금 토론과정에서 공적 참여를 하도록 장려하는' 공적 인식을 낳는다. 정부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시는, '공적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결정할 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제안법안

13(Proposition 13)의 통과 이후 극적으로 감소되어 왔던 공적 자금에 대한 욕구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급여체제의 성안(成案)을 포함한 예산결정과정에서의 비공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게 되었다. 특정한 피용인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1982년 개정된 54957조에 비추어보면 '인사기록 면책조항'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이다. ; 그러나 특정한 공무원이 급여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전에 여러 가지 요인들 예를 들어 이용가능한 자금정도, 다른 시의 자금우선권, 그리고 그 시의 다른 관할 구역에서의 비슷한 직종의 상대적인 보수액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요소들은 첨예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

당원은, "예산상 투명성에 대한 공공의 이익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급여내역에 대한 사생활보호권을 가진다는 관념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한 샌디에이고 유니언 판결의 내용에 동의한다. 정부예산에 대한 압력은 위 판결이 선고된 1983년만큼이나 현재도 중대한 관심사임이 분명하다. 그들의 급여내역을 공중의 관심밖에 두려는 공무원의 권리는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Braun v. City of Taft 판결"에서 대두되었다. Braun은 'Polston이라는 운송행정관이 부적절하게 임명되었다'고 믿는 시의원이었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Braun은 Polston이 임명되었음을 보여주는 급여내역서 복사본을 손에 넣었다. 그 임명은 취소되었고, Polston은 원래의 직책인 소방관으로 원위치되었다. Braun은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편지복사본의 존재를 부인하였지만, 그 편지를 급여내역서와 함께 기자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운송행정관임명을 지우고 대신 그 자리에 '소방관'이라고 기재해 넣어 변조한 것이었다. Polston은 Braun에게 그가 개인인사기록의 내용에 관한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였다는 항의성 편지를 보냈다. 시의회는 Braun을 견책하였지만, 그는 '그 서류의 공개가

CPRA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근거를 들어 그 견해를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Braun이 ‘문제의 인사기록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제5항소법원은, ‘CPRA법은 다른 연방정보자유법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정보공개정책을 촉진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인사기록의 공개를 둘러싼 연방사건과 구별하였다.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구성할 수도 있는 인사기록자료의 공개에 대한 면책조항인 U.S.C. 552(b)(6)조는, 사업적 판단이나 대인관계가 아닌 ‘개인사생활이나 가족사생활의 은밀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법원은, ‘Braun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급여내역서 부분은 변조된 직책부분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제1심법원은, 다른 정보 즉 Polston의 전화번호, 생일, 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번호, 급여를 제외시켰는데, 항소심은 ‘몇 개의 개인적 자료가 급여내역서의 앞면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제한된 근거를 들어 파기하지 않았다. 법원은, 급여체제는 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급여내역서를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실인정한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Braun 사건의 판결법원은, 사생활보호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별개로 언급하면서 ‘주정부법령 6254조(c)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공공의 이익’에 상충하는 Polston의 사생활보호권 역시 캘리포니아 헌법하에서 침해된 것이 아니라는 제1심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판시하였다.

Braun 사건에서는 이름과 급여 내역의 공개가 더 문제되었는데, 그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문제가 아니라는 명제를 보여주었다. 당원이 다른 주의 판례법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의 이름과 급여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압도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Local 21 노동조합은, ‘연방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개인의 재정문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노동조합이 들고 있는 판례 중 1개만이 연방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내용이고, 그 판례조차도 공개 요구한 것이 이름과 급여 뿐아니라 이보다 더 당혹스러운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었다. 연방법원 판례들은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와 사적 계약을 체결한 일반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연방법원은 ‘그 공개가 정부의 활동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청구를 기각해 왔다.

Local 21 노동조합이 ‘연방공무원의 급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 판결’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의 제1심법원이 적시한 바와 같다. 즉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조항은 현직과 전직 연방공무원의 이름, 보너스 기타 수당을 포함한 급여내역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살펴보는 것은 CPRA법을 해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법령의 변천은, ‘사회적 규범이 공무원의 급여내역의 비공개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당원이 이미 언급하였듯이 CPRA법이나 정보자유법은 ‘공적 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공공정책’을 입법화한 것이고, 오직 개인인사기록의 공개가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구성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법은 공무원의 이름과 급여 내역을 비공개로 하도록 보호하는 데에 적용되어 온 것이 아니다. 연방공무원의 이름과 급여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조항들은 1989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국회나 연방인사관리청은 이 규정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Braun 판결에 응수하지 않았고, 1984년 CPRA법의 공개규정 중에서 이름과 급여를 보호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하였다.

사실 1975년부터 CPRA법은, “‘주나 그 대리인과 공무원 사이의 계약’은 6254조와 6255조의 면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적 기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왔다. 이 사건에서 Oakland시는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공무원과 계약을 체결한바 없다. : 제1심법원은, 市가 그러한 계약의 복사본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적시하였지만,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당원은, 공무원의 고용이 전형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법령 6254.8조는 ‘의회는 공무원과의 고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이름과 급여내역을 포함한 정보)는 사회적 규범이나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서 비공개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당원은 또한, 브라운법(Brown Act)의 공개회의 규정이 ‘공무원 급여내역의 비공개는 사회적 규범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입법의도에 관한 위 법령의 선언은 위와 같은 생각을 맞아바친다. : “이 주의 주민들은 그들의 주권을 자신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넘기지 않았다. 위임 권한을 가진 주민은, ‘그들이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알지 않아도 되는지’를 결정할 권리를 공무원에게 준 바 없다.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기를 고집하고 그 결과 자신들이 만든 정부조직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의회는, 조건부로 공무원 고용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조항을 삽입함으로써 ‘San Diego Union v. City Council’ 판결의 판시내용을 입법화하였다”. : “이 장에 따라 열린 폐회 기간 중에는 견책에 따른 감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 관한 토론이나 의결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제1심법원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와 수당의 공개’를 규정한 오클랜드시의 햇빛조례(Sunshine Ordinance)를 따랐다. Local 21 노동조합은, ‘지급될 수 있는(available)’ 급여와 수당

이 ‘실제로 지급된’ 급여와 수당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례의 다른 조항은, ‘법에 의하여 그 기밀이 보장된 지출 내역을 제외하고는 실지출기록, 지급받은 자의 이름 및 지급목적에 관한 기록을 포함한 모든 급여지급기록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시공무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원은 또한, “성별, 나이, 인종, 과거 경력 등을 포함한 직업정보의 공개를 규정함에 있어 시조례는 ‘그 공개가 특정개인의 신원확인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름에 의한 신원확인을 금지하는 이러한 조항은 급여와 그 지출에 관한 조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Local 21 노동조합은, ‘최근 연방과 주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입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급여정보는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Gramm-Leach-Bliley법과 캘리포니아개인재정보호법(1983년)은 오로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에만 적용이 되고, 일반 공중에게의 공개가 금지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공무원들의 급여내역 비공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다. 공무원 급여내역은 단순히 개인적인 재정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다. : 공무원 급여는 공공의 지출에 관한 것이다. 물론 공무원들도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경우 그 거래정보는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사생활로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국회나 캘리포니아 의회나 오클랜드 시의회는 ‘어떠한 사회적 규범도 공무원의 급여내역을 사생활의 문제로 본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어떤 주의회는 오히려 공무원의 이름과 급여내역의 공개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여 왔다.

헌법의 변천도 또 다른 근거가 되는데, 주대법원은 ‘사회적 규범이 특정한 정보에 대하여 사생활보호권

을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언을 구하도록 권고하여 왔다. CCN 신문사는, "2004년 11월 2일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수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법령, 법원 규칙 또는 이 조항의 효력발생일 현재 효력이 있는 다른 법권원(法權原) 등은, 만일 그것이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넓게 해석되고, 만일 그것이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엄격하게 해석된다". 이 사건에 대한 위 수정안의 영향력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규정은 '사생활보호권의 수정'이나 '법집행기록의 비밀성의 무효화'에 대한 제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변천을 살펴보면, 정부의 사업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Hill v.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n. 판결에 나타난 마지막 요인은, '사생활보호권을 캘리포니아 주 헌법상의 권리로 만든 첫 조치'에 수반하는 투표논쟁이다. 관련된 투표논쟁은 Hill 판결에 인용되어 있다. : 정보적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정부나 이권세력이 '우리 자신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거나, 어떤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또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단순하다. 공무원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공무원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를 대중이 알도록 용납하는 것이다.

[1] 당원은, '공무원이 자신들의 이름과 급여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사생활보호권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확립된 사회적 규범이 없다고 결론내린다.

San Diego Union 판결은, '공무원 급여가 공개토론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Braun 판결은, "피용자의 급여내역이 주 법령 6254조 (c)항에 의하여 비공개로 인정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오클랜드 시의회, 주 의회, 다른 주의 의회, 국회 등은 '적극적인 입법' 또는 '공개를 규정한 법령이나 법원 판결에 대응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된 급여내역은 공문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왔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최근에 정부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헌법수정안을 승인하였다. 당원의 결론은 또한, '유권자들이 우리 주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의 확대를 승인하였을 때' 그들이 고려한 투표논쟁과 일치한다.

당원은 'City of Los Angeles' 판결과 'Priceless' 판결의 내용과 반대의 결론을 내기 전에 Local 21 노동조합이 제기한 주된 이의내용을 언급하기로 한다. Local 21 노동조합은 '이름과 급여를 공개하면 공무원들이 신원도용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름과 급여의 공개만으로 어떻게 신원도용의 위협성이 커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주식중개인과 같은 사람들로부터의 원치 않는 호출 등을 예로 든다. 하지만 그러한 호출이 심각한 사생활침해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당원은 '이러한 텔레마케터(telemarketers)들의 귀찮은 호출을 막기 위한 제도(스팸메일방지등록제)가 연방통신위원회와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신설되었음'을 안다. 당원은 또한 '지난 8년간 오클랜드시가 공무원의 이름과 급여를 공개하였지만, 신원도용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Local 21 노동조합도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2] Local 21 노동조합은, '급여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급여에 개인의 이름을 연계시키지 않

고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반국민은, 급여로 얼마가 지출되는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지출되는지를 알 권리를 갖는다. 급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은 급여내역만을 준다면 일반 국민으로선 친척등용, 정실인사, 비효율성, 부정행위 등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Local 21 노동조합은, '고소득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규범에 반한다'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는 '공무원 고용계약이 비공개대상이라고 규정한 법령을 제정할 당시' 급여내역뿐 아니라 이름의 공개도 고려하였다. 이웃 주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방정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급여뿐 아니라 이름까지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왔다. 오클랜드 시의 햇빛조례(Sunshine Ordinance)의 규정을 보면, 급여내역의 공개시 개인의 신원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당원은, '공무원 고용이 사생활보호권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당원은, 공무원들도 급여를 받은 이후에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정상태에 관한 사생활보호권이 있음을 이미 강조하였다), 다만 공무원은 일반국민의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성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Braun 판결에 동의한다. 일반 국민은 고소득 공무원의 급여뿐 아니라 이름도 알 자격이 있다.

3. 'City of Los Angeles' 판결과 'Priceless' 판결

로스엔젤레스市에서, 경찰관의 아내가 이혼소송 중에 남편의 급여내역을 제출하라는 영장발부를 신청하자 그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경찰관은 그의 아내가 "Pitchess v. Superior Court 판결(주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공개요건에 따라 제정된 증거법'에 따라 치안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신청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4항소법원 제3부는, "치안공무원의 급여기록은 관련된 법령의 정의규

정 즉 '그 공개가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구성할 수도 있는 정보'라는 포괄조항 하에서 '개인적인 기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City of Los Angeles' 판결에서 "급여정보는 개인적인 것이다.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을 붙잡고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신의 급여정보가 공개되기를 바라는지'를 물어보라. No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공무원의 급여등급은 일반적으로 공적기록에 해당하는 문제이겠지만, 다른 사람의 급여, 연금선택, 장래의 퇴직연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보다 더 개인적인 기록은 없다.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기록 중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가장 크게 입힐 수 있는 것이 급여기록의 공개이다".

[3] 급여기록에 개인적 이익에 관하여 한 이러한 언급은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통분모가 무엇이든 간에 사생활보호이익은 문맥상에서 독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최상의 것이다". City of Los Angeles 판결은, 공적자금의 공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권리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의 실체발견권을 고려하였다. 나아가 경찰관의 아내가 요구한 것은 경찰관의 급여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다른 수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금융정보는 여기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독특한 요소들을 제쳐두고라도, 'City of Los Angeles' 판결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설득력이 없다. 위 판결은, '적법하게 보장되는 정보적 사생활의 보호이익'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기준을 설정한 Hill 판결을 전혀 참조하지 않았다. 위 판결이 인용한 유일한 근거는 'Braun v. City of Taft'이었는데, 그 판결은 '공무원 급여의 공개가 사생활보호의 부당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City of Los Angeles' 판결은 "급여기록에 사생활보호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상대방은 Pitchess 판결에 언급된 요건을 충족함이 없이 급여공개정보의 청구원인을 변함없이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는 판시까지 내렸다. 따라서 법률문제로서 보면, 이혼소송절차에서는 형법 832.7조에 해당하는 부당한 사생활침해가 없게 된다. 앞에서 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원은 ‘City of Los Angeles’ 판결의 판시를 따르기를 거부한다.

Priceless 판결은 ‘City of Los Angeles’ 판결과는 달리 요점이 있다. 그 판결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은, ‘신문사 기자들이 CPRA법에 따라 5개의 해안지역 자치구 市공무원의 이름, 직책, 급여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대항하여 법원에 이를 금지하는 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급여내역의 공개는 허용하지만, 개인의 신원의 노출은 허용하지 않는 가처분을 발령하였다. 이 법원의 제1부는, “노동조합이 ‘피용자 이름과 급여의 공개가 사생활보호권의 침해’가 되기 위한 3가지 요건(Hill 판결에서 제시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원심의 가처분결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이 아직 예비적 단계에 있고, CPRA법 규정에 따른 심리절차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더 제출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Priceless 판결은 San Diego Union 판결을 인용하였지만 검토하지는 않았다. Priceless 판결은 Braun 판결을 검토하면서 “Braun 판결이 생일, 사회보장번호, 신용번호와 같은 개인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보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정보의 공개를 명한 명령’을 반복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당원은, ‘최근 신원도용의 급증과 함께 그렇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명령을 지지한 Braun 판결의 자발성은 오늘날 어느 법원에 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 Priceless 판결에 동의한다.

[4] 그러나 당원은, Priceless 판결이 Braun 판결과의 차별을 시도한 근거에 대하여는 혼란스럽다. “이

사건과 달리 Braun 판결은 ‘개인의 이름 공개가 공개된 정보 그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서의 개인 한사람의 조사에 관한 것이었다. 나아가 법원은 시의회의원의 정보공개를 인정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였는데, 개인정보의 변경을 명하는 결정도 지지하였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였다. 모든 공무원의 이름과 급여내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제1심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되었다”.

Braun 판결은 한 개인의 급여기록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러 사람의 급여와 이름이 공개되는 것보다는 한 사람만 조사를 위하여 추려내는 것이 더 큰 사생활보호의 침해가 될 것이다. ‘어떤 정보는 공개된 자료로부터 변경되어왔다’고 Braun 판결이 지적하였다고 하여 ‘급여정보의 공개가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Priceless 판결의 1심 법원이 급여공개로부터 이름을 제외하도록 명하였다고 하여 항소심에서의 중요 문제점 즉 CPRA법 하에서 공개정보의 변경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Priceless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여기서의 쟁점들은 기본적으로는 적법하고, 따라서 제1심법원의 결정에 특별히 경의를 표할 필요는 없다.

Priceless 판결은 Braun 판결과는 사안이 전혀 다르다고 하여, 공무원이 ‘개인의 신원이 포함된 급여정보’에 관하여 적법하게 보호받는 사생활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Priceless 판결은 처음으로 City of Carmel-by-the-Sea 사건에서 ‘개인의 재정적 문제는 사생활보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주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은 공무원의 봉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대법원은 ‘모든 공무원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1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한 경우 그 투자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였다. 고등법원은 “개인의 재정문제에 대한 침해는 ‘제4수정 헌법이

부여한 사생활보호권'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판시하였다. 개인의 재정상태에 관한 자세한 공개 문제는 Priceless 판결이나 이 사건에서는 관련이 없다.

다음으로, Priceless 판결에서는 'Hill 판결에서 확립된 사생활침해의 3가지 요건'에 주목하면서 주법령 6254조 (c)항에 따라 인사기록에서의 사생활보호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령은 절대적인 사생활보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즉 법령은 인사기록에서 그 공개가 사생활보호권의 부당한 침해를 구성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을 보호한다.

Priceless 판결은, 인사기록의 사생활보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 중 몇 개를 검토하였는데, 그 판결 중 어느 것도 이름과 급여의 공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당원이 언급한바와 같이 연방법규정은 일반적으로 연방공무원의 이름과 급여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Priceless 판결은, 당사자들이 '인사기록의 급여내역은 비공개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지적한 다음 "이러한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여 '사생활보호이익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제1심법원의 판단이 지지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그 정보에 '대외비'라고 써붙이는 방법으로 CPRA법의 요건을 피해갈 수는 없다.

당원은, 제1부의 우리 동료 판사들이 'CPRA법에 따른 공개를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부과된 부담'과 '이름이 거명된 공무원의 급여내역이 공개됨에 의하여 야기된 개인 재정상태에 대한 침해의 제한된 본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4. 형법 832.7조

형법 832.7조 (a)항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주나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치안공무원 또는 관리공무원의 인사기록 혹은 이러한 기록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기밀사항이고, 증거법 1043조와

1046조에 의한 증거조사절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민사소송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서도 공개될 수 없다". 형법 832.8조에서는 '인사기록'이란 '고용기관에 의하여 개인의 이름을 적어 관리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 즉 (a) 결혼 여부, 가족수, 교육 및 직장 경력, 집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적 자료, (b) 건강 진료 내역, (c) 고용연금 선정, (d) 직장에서의 승진, 평판, 징계내역, (e) 참가하거나 인지했던 거래나 사건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태도와 관련한 불평이나 불평의 조사, (f) 그 공개가 사생활보호의 부당한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보 등에 관련된 기록을 포함한 모든 파일(file)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5] OPOA 노동조합은, "치안공무원의 급여기록은 형법 832.8조 (a)항과 (d)항에 규정된 '개인적 자료', '고용경력', '직장에서의 승진 내역'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당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당원은 City of Los Angeles 판결에 동의한다. 의회는 법령상 정의를 내리면서 급여기록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급여기록은 (a)항에 규정된 '개인적 자료와 유사한 종류'로 볼 수도 없다. 또한 급여정보는 위 법 (a)항에 의하여 기밀로 취급되고 있는 '직장에서의 승진 내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급여내역은, 만일 그 공개가 형법 832.8조 (f)항에 의하여 사생활보호의 부당한 침해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보호를 받아야 한다.

위 법령에 대한 OPOA 노동조합의 해석은 제3항 소법원에서 나온 최근의 판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California 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 Training v. Superior Court (2005) 판결에서, Los Angeles Times는 캘리포니아 치안공무원 규범 및 훈련 위원회(POST)가 보관 중인 치안공무원의 고용기록의 공개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위원회에 치안공무원의 이름, 부서, 임명 종류 및

날짜, 고용만료일 등의 제출을 명하였다. 항소심은 위 원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CPRA법에 따른 신문사 측 의 요청을 기각하도록 원심법원에 명하였다. 법원은, '문제의 기록이 경찰관서가 보관하고 있는 인사기록 으로부터 얻은 것이고, 따라서 형법 832.7조 (a)항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기밀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 당원은 이런 관점에서 위 판결은 사안이 다르다고 본 다. : Los Angeles Times가 구하는 임용내역은 CCN 신문사가 구하는 급여내역과는 달리 인사기록에서만 나타나는 종류의 정보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 면책특권이 형법 832.8조에 열거 된 내용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을 하는 한' City of Los Angeles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California Commission 판결은, '보호되는 것은 위 법령에 열거된 내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중 에서 위 법령 (a)-(f)항에 열거된 내용과 관련된 기록 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당원은, 법령의 이러한 해석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의회가 구체적으로 특 정한 종류의 정보뿐 아니라 기밀정보와 관련된 내용 을 포함한 파일로부터 얻은 정보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기밀이 되고 만다. 당원은, 의회의 입법취지가 그렇게 넓게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 법 832.8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종류의 정보와 '관 련된'이라는 말의 의미는 '법령에 열거된 내용을 실 질적으로 반영하는 기록에의 관련'이라는 의미로 보 다 합리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만일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포함한 모 든 기록이 위 법령상의 정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버 린다면, 보호받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한계는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목적 때 문에 모든 자료는 '개인적인 자료'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California Commission 판결이 언급한 바와 같 이 Los Angeles Times가 신청한 정보는 형법 832.8조

(a)조에 규정된 '고용 내역'의 범주에 포함된다. City of Los Angeles 판결의 이러한 상식적인 법령분류접 근법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치안공무원의 급여기록은 '공개가 금지된 인사기 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공개가 형법 832.8조 (f)항에 따라 사생활보호를 부당하게 침해하 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가 금지된 인사기 록' 자체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CPRA법이 나 치안공무원기밀보호법 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형 법 832.7조에 의하여 기밀이 보장되는 기록은, '연방 법이나 주법(면책에 관한 증거법의 조항을 포함하 여)에 따라 그 공개가 면제되거나 금지된다'고 규정 한 CPRA법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보다는 더 비중이 있는 '치 안공무원 특유의 요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법 령 6254조 (c)항에 규정된 사생활보호의 부당한 침 해'를 구성함이 없이 공개될 수 있는 기록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형법 832.8조 (f)항의 범주 밖 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OPOA 노동조합은 '앞서의 Part 2에서 전개한 논 리를 치안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청 구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원은, 형법 832.7조의 규정 때문에 1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 는 오클랜드시 경찰관이 그의 이름과 급여 내역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다.

주 문 (DISPOSITION)

노동조합 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CCN 신문사 는 제1심법원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출 처 : Media Law Report Vol.33 No. 24 PP.1779 ~ 1793

번 역 : 윤 경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출판물에 개인의 사생활을 묘사하고 정당한 공중의 이익이 없는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게재해서는 안 된다

해당조문 :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민법전 제823조 제1항, 제1004조,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1호.

판결요지

출판물에 개인의 사생활을 묘사하고 공개가 위법한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공중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BGH) 2004년 10월 19일자 판결 - VIZR 292/93 (주 상급법원 Frankfurt am Main)

원고, 항소인, 항고인 : Anke, S

피고, 피항소인, 피상고인 : SUPER ILLU의 편집인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인이 발행한 잡지 “SUPER ILLU”의 보도내용을 고소하였다.

원고는 2001년부터 여배우 Uschi Glas의 당시 남편인 B. T.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잡지사 편집장은 2002년 11호에서 “여배우 Uschi Glas의 라이벌 Anke S., 그녀의 출생지는 P”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원고의 인물사진(이하에서는 사진 1)과 함께 “작센주의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찬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이 사진은 잡지에서 “작센여성, 아주 특별한 여자”라는 표제로 다시 한 번 크게 게재되었다.

사진에는 “휴가의 추억”이라는 해설이 쓰여 있었다. 친구들은 Uschi Glas의 라이벌인 Anke S.를 스포티하고, 부지런하고, 명랑하고, 사업수완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 지면에는 “뮌헨의 광경”이라는 해설과 함께 1996년 뮌헨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있는 원고의 또 다른 사진(사진 2)이 공개되었다. 기사의 한 가운데에는 원고가 B. T.와 함께 Deininger Weiher라는 도시에서 산책하고 있는 사진(사진 3)이 게재되었다. 사진 아래에는 “2월 초 사진촬영 무렵에 Anke와 B. T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졌다”라는 해설이 있었다. 그리고 기사의 제목 아래에는 “Uschi Glas의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젊은 여성라이벌의 출생지는 P”라는 소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 기사에는 원고의 이름이 짧게 쓰여 있었다.

원고는 앞서의 사진과 그에 따른 해설을 다시는 반복하여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B. T.가 2003년 1월에 그들의 관계를 스스로 언론에 공표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보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출판물의 간행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주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였다. 주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하였지만, 상급법원(2심법원)은 논란이 많은 판결문에서 이를 기각하였다.

즉 “뮌헨의 광경”이라는 해설과 함께 공개된 사진 2에 대한 원고의 금지청구를 지지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처음부터 위법하게 전파된 사진의 반복되는 공개로 제기되는 금지청구가 어떠한 전제조건 하에서는 사후에 이루어질 수 없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 때문에 상고를 허용하였다.

결정이유

I. 상급법원(2심법원)은 사진공개에 대한 명확하고도 단호한 동의표명을 거부하였다. 원고가 B. T.와의 관계로 인하여 사회의 저명인사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소의 시각이다(이하 항소심판결문).

본건에 대하여 부수되는 판결로부터는 아무것도 도출해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원고를 Uschi Glas의 라이벌로 유명하게 만들었고, 이는 Glas와 T.의 부부관계 파탄을 공중의 관심사로 만든다는 목표를 추구한 똑같은 종류의 보도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호기심과 센세이션얼한 사건에 목말라하는 공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보도에는 무엇보다도 공공의 정보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의 사진공개에 대한 위법성 확인이 아니라, 반복되는 사진공개의 금지에 관한 사안이다. 이러한 연유로 사진 1과 사진 3에는 위험이 되풀이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진을 반복하여 공개하더라도 원고의 인격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원고는 2003년 1월에 개최된 독일비디오대상 시상식에 B. T.와 함께 참석하였으며, 당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사생활과 사회활동에 관하여 공표하였다. 원고가 가지는 익명성의 권리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녀의 사생활이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입증된 지금까지의 권리청구를 원고는 더 이상 관철해 낼 수 없다.

하지만 원고의 사진출판에 대한 피고의 이익을 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의 행위에는 시간상·내용상의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Glas와 T.의 부부관계 파탄에 대하여 여전이 공중이 정보이익을 가지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경우에 그와 같은 사진공개는 시간상 합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사이에 이들의 부부관계가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정보를 갈망하는 대중의 관심이 점차로 약해질 때, 결과적으로 원고는 그녀를 묘사하는 사진에 대하여 시간상 무제한적인 출판을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원고가 가지는 허가되지 않은 사진공개의 금지이익은 이 단계에 위치하는 현실로 인하여 정보이익의 배후에 있는 제한된 시간동안 포기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어떠한 경우에도 가능한 모든 사진의 출판물 게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보호받는 사생활 영역에서의 사진들, 특히 과거의 생활에서 비롯되었거나, 현재 B. T.의 연인으로서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까지 과도하게 공개할 수 있는 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중립적 인물사진인 사진 1에 대한 금지청구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그들 관계를 공개한 이후의 사생활 영역으로부터의 사진 3(Deininger Weiher 도시사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 2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진은 Glas와 T.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 발생했던 사건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중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원고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진해설보도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사이에 B. T.와의 관계를 원고 스스로 공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지될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II. 위의 상급법원판결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상고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웠다.

1. 상급법원(2심법원)은 주 법원과 마찬가지로 사진공개에 대하여 원고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상고는 이를 의연하게 받아들인다. 이 평가에는 문제가 없다.

2. 상급법원의 판결 이후 이루어진 피고의 사진공개는 위법이다.

a) 결과적으로 상고도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상급법원이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의 체계를 잘못 판단하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전제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3조 제2항을 고려하였다는 것을 상고에서 비판하는 한, 상고소송은 본 사건의 발단이 된 초상사진이 근본적으로 시사적(Zeitgeschichte) 문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제5항 제1조 사이에서 충돌하는 기본권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이익이 제기될 수 없다.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제22조의 동의의 필요조건과는 무관하게 시사적 문제의 초상사진 공개를 허용한다. 동법 규정은 입법자의 의도와 규정의 의미·목적에 따라 공공의 정보이익과 출판의 자유를 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요건상의 특징을 해석할 때 공공의 이익은 지켜져야 한다. 기본권의 영향을 지속적·직접적으로 받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정당한 이익이라는 구성요건상의 특징은 처음부터 시사적 의미를 지닌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그 인적 범위를 주의하지 않고 제한하면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이익은 충분히 수용되어질 수 없게 된다(BVerfGE 101 S. 361 [391 f.] = AfP 2000 S. 76; BVerfG, AfP 2001 S. 212 = NJW 2001 S. 1921 [1922 f.]). 그러므로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의 충돌되는 두 기본권이 시사적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출판의 자유와 동시에 인격권 보호를 충분히 고

려하는 규범적 기준이 판결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BVerfG, NJW 2001 S. 1921 [1922]). 이와 관련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관련된 기본권에 대한 이익형량이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1995년 12월 12일자 Senatsurteil - VI ZR 223/94, AfP 1996, S. 138 = NJW 1996 S. 985 [986] = VersR 1996 S. 341 f.; 2004년 3월 9일자 판결 - VI ZR 217/03, AfP 2004 S. 267 = VersR 2004 S. 863, 2004년 9월 28일자 판결 - VI ZR 305/03, 출판을 위하여 sub II 2 a에 규정됨; 그 외에도 Wenzel/von Strobl-Albeg,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5. Aufl., Kap. 8 Rdn. 4 ff. 참조).

b) 2004년 6월 24일자 유럽연합인권재판소 판결을 고려해 볼 때 상급법원이 Glas와 T.의 부부관계위기가 공공의 이익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시사적 단계에 있다고 한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사적 문제의 대상이 되는 절대적·상대적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원고가 공중들 앞에 공식적으로 출현하기 이전의 시기(자세한 내용은 3c 이하)에 대해서는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절대적인 정보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가 부부위기와 함께 이어진 Uschi Glas와 B. T.의 이혼관련 보도에 대하여 특정시기동안 참아야 하기 때문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현저히 미약하다고 주장한 상급법원의 판결은 상고의 법적 심사에서는 일부분만 유지되었다.

a) 상급법원의 논리는 행위의 금지선고가 과거의 권리침해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오히려 미래에 권리침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예견할 때 그러한 선고가 가능하다. 본 사건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위험이 반복될 것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위험의 존재와 지속적

인 침해에 대한 우려는 모든 금지청구의 구성요건상의 특징이고(독일민법 제 1004조 제1항 제2문), 실질적인 금지청구의 전제조건이 된다(연방대법원 1987년 5월 13일자 판결 - I ZR 79/85, NJW 1987 S. 3251 [3253]; 1992년 1월 16일자 판결 - I ZR 84/90, GRUR 1992 S. 318 [319], 1994년 2월 10일자 판결 I ZR 16/92, NJW 1994 S. 2096; Bamberger/Roth/Fritzsche, BGB, § 1004 Rdn. 78; MuenchKomm-BGB/Medicus, 4. Aufl., § 1004 Rdn. 97; Staudiger/Gursky, BGB, Neubearbeitung 1999, § 1004 Rdn. 208; Teplitzky, Wettbewerbsrechtliche Ansprueche und Verfahren, 8. Aufl., Kap. 6 Rdn. 7; Wenzel/Burkhardt, a.a.O., Kap. 12 Rdn. 7). 이는 결국 금지청구의 법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던 자가 그 사이에 위법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청구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반복되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소송상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MuenchKomm-BGB/Medicus, aa.O., 그리고 Teplitzky, aa.O., Rdn. 6).

b) 위험의 반복이 중단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제기된 상고는 위험의 반복이 상이한 상황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형벌의 효력을 지닌 금지통보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종종 사용되는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추측 가능한 권리침해에 대한 미래의 행태에 관한 것이 아닌 위험의 반복이 법적 이유로부터 변화된 상황을 근거로 부인될 수 있는가가 문제될 때, 권리침해가 이미 발생하여 위험의 반복이 예견되고 그 예견에 대한 반박에 강화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c) 상급법원은 원고의 독일비디오대상 시상식 출

현 이후 미래의 사진출판에 예술저작권법 제23조를 어떤 전제 아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심사했다. 이러한 의문은 당연히 상급법원이 그 출판을 허용하였지만 논란이 있는 사진 1과 사진 3을 위하여 당연히 여러 측면에서 답변되어질 수 있다.

aa) 상급법원은 원고가 시사적 문제에 해당하는 단계에 출현하여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생활과 익명성의 권리를 내세워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법적문제는 없다. 연방헌법재판소나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여러 번 강조되었던 바와 같이, 누구나 스스로 공공에게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생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BVerfGE 101 S. 361 [385] = AfP 2000 S. 76; BVerfG, NJW 2000 S. 1021 [1022 f.]; 연방대법원 2003년 12월 9일자 판결 - VI ZR 373/02, AfP 2004 S. 119 = VersR 2004 S. 522 [524] = NJW 2004 S. 762, 그리고 - VI ZR 404/02, VersR 2004 S. 525 [526] = NJW 2004 S. 766). 누군가가 스스로 특정되고 일상적인 용무의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 사생활은 공공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아니한다. 주위사람들이 부분적인 개인의 일과 관리방법을 제한한다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상황 결정적 또는 지속적으로 표명되어져야 한다(BVerfGE 101 S. 361 [385] AfP 2000 S. 76; BVerfG, NJW 2000 S. 1021 [1023]; 문제점에 대해서는 Wenzel/von Strobl/Albeg, a.a.O., Kap. 8 Rdn. 75; Neben, Triviale Personenberichterstattung als Rechtsproblem, S. 230 f.; Seitz, NJW 2000 S. 2167 참조). 이는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예술저작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통용된다. 즉 동법조항은 단계적 보호개념으로 인격권과 공공의 정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미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된 때 이익형량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bb) 논란이 있지만 상급법원은 가까운 미래에 단계적으로 초상사진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것이 예술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허용된다고 보았다.

상고에서 구체적으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상급법원 판결 이후에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사생활이 출판물을 통한 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면 상황 결정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하나의 사례가 있다. 원고는 스스로 나중에 공중 앞에 공개적으로 출현하였고, B. T의 새로운 연인으로써 그녀의 정체성과 역할을 공표하였으며, 이는 그녀가 동의한 파트너의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그녀와 B. T.와의 사진과 함께 출판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급법원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특정 시기의 중립적 초상사진이 시사적 단계(zeitgeschichtlicher Vorgang)에 해당되는 사진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하자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가 독일비디오대상 수상식 개최와 관련하여 허가했던 사진촬영으로 발생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미 외관상 동일인임이 증명되어 원고의 사생활 영역은 알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신문보도에서 중립적 사진의 사용은 묘사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의 야기와 관련을 가진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BVerfG, AffP 2001 S. 212 = NJW 2001 S. 1921 [1924 ff.]; 연방대법원 2004년 3월 9일자 판결 - VI ZR 217/03, AffP 2004 S. 267 = VersR 2004 S. 863 [864]; Wenzel/von Strobl-Albeg, aa.O., Kap. 8 Rdn. 26 ff.). 이 사례에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사진 1과 관련된 상급법원의 판결이 해당한다.

cc) 이와는 반대로 상급법원은 원고가 B. T.와 함

께 Deininger Weiher시에서 산책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 3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상급법원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사진공개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적하자 없이 부인하였다. 그러나 연인관계에 대하여 원고가 명시적으로 고백하였고, 그녀의 동의 하에 제작된 연인관계를 묘사하는 초상사진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되어도 좋다는 상급법원의 판단은 적절하지 못하다. 사진을 통해서 원고의 사생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여기에 관하여 Senatsurteil BGHZ 131 S. 332 [338 ff.] = AffP 2000 S. 76). 사진은 그녀가 사생활의 일부분을 포기하지 않았고 정보이익이라는 정당성의 결여로 그 공개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시기에 나온 것이다.

그러한 사진의 공개는 상황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설명되지 않은 특별한 전제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사진에 묘사된 당사자가 공공에게 그 사이에 그의 사생활의 포기된 일부분을 설명하는 사진은 적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보도가 더 이상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공식석상에 나오는 자는 공중이 원칙적으로 본인의 인격권의 침해 하에 접근할 수 있는 사진과 그에 관하여 허용되는 보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공중의 우선적인 정보이익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시기로부터 공개되는 초상그림 자료는 이러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후 허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4.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피고가 보도목적으로 하는 표현 때문에 제기되는 한, 이에 관한 상고는 상급법원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상급법원은 처음에 위법하게 전파된 사진을 반복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금지청구가 어떠한 전제조건 하에서 사후에 고려되지 않을

수 있는가에 관한 법적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만 상고를 허용한다고 명백하게 표명했다. 상급법원은 판결주문에서 그러한 금지청구의 제한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정이유에 그러한 제한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BGHZ, 48 S. 134 [136]; 153 S. 358 [360]). 상급법원이 여러 독립적 소송청구를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상고를 허용하게 된 법적 의문이 그들 중 하나에 대하여 중대한 경우에, 허용이유에는 규칙적으로 이러한 청구에 대한 상고의 허용이 명확하게 제한된다고 언급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BGHZ 48 S. 134 [136]; 153 S. 358 [361 f.]).

판결에서처럼 상급법원은 법적으로 독립하고 분리할 수 있어 당사자 스스로 상고를 제한할 수 있는 논쟁거리(Streitstoff)의 일부분으로 상고허용을 제한하고 있다(Senatsurteile BGHZ 76 S. 397 [399]; 그리

고 2003년 12월 9일자 판결 - VI ZR 404/02, AfP 2004 S. 267 = VersR 2004 S. 525). 여러 청구 이유들 중에 하나 또는 특정한 법적 의문에 근거하여 상고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BGHZ 101 S. 276 [278]; 111 S. 158 [166], jeweils m.w.N.). 허용이 된다고 알려진 소송거리(Prozessstoff)의 부분은 나머지 소송거리로부터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 환송의 경우에 부분의 변화가 모순의 위험 속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까지 빠뜨리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연방대법원 2003년 6월 4일자 판결 - VIII ZR 91/02, AfP 2003 S. 1399 [1401]; 2003년 9월 23일자 판결 - XI ZR 135/02, NJW 2003 S. 3703 f.). 이 사례에는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놓여있다.

출 처 : AfP 35. Jahrgang Heft 6 -2004 SS. 540 - 543.

번 역 : 권 형 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영국사례 1

범법행위를 파헤치기 위한 공익 목적이라면 범법자에게 돈을 지불했더라도 보도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신청인 Mr. Clive Soley가 Evening Standard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위 신문이 지난 2005년 3월 23일 게재한 “우리는 총리의 여권을 2,000파운드에 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범법자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취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도윤리강령 제16장 ‘업무 규약(code of practice)의 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기사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세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기 위해 가짜 서류에 돈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위 신문사가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범법에 대해 경찰에 먼저 알려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경찰에 연락하기보다는 그보다 앞서 범법자에게 돈을 주고 위조 여권을 발급받았

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보도윤리강령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vening Standard는 불만신청인이 규약의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신들이 지불한 돈은 유죄로 명백하게 죄가 인정된 범법자에게 지불된 것이 아니며 기사 역시 이 범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범죄라는 개념을 찬미하거나 미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사는 이 기사가 쓰여진 첫날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경찰도 함께 사건을 처리해 만족스러웠다고 강조했다. 신문사 측은 누가 먼저 연락을 취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 기사는 명백히 중요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을 다룬 것이고 지불된 돈은 기자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범법행위를 파헤치는데 쓰여 졌기

때문에 보도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도윤리강령 제16조는 범죄를 이용하거나 범죄의 개념을 찬미·미화시키는 사진이나 그림 혹은 정보를 위한 돈의 지불을 금지시키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돈이 그 개념과 명백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위원회는 이 돈이 정당한 공공의 이익과 관심이 쏠려 있는 신분증 위조에 대한 증거물을 구하는데 쓰였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돈의 지불은 중요한 증거물을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였고 유죄를 선고받은 범법자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를 도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이 신문사 측이 경찰에 먼저 통보해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규정에는 이것에 대해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신문사에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불만신청인이 기사가 담고 있는 사회적인 관심사를 생

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법자들과 그들이 만드는 위조 서류에 대한 이슈는 이미 사회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며 신문사의 행동은 경찰에게 범법의 행위가 있음을 알림으로 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정당화 될 수가 있다.

위원회는 신문사가 경찰에 정보를 넘기게 됨으로 해서 범법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의를 주고 있는 등 공익에 부합되는 정당한 언론 활동이라고 판단,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신문사는 불만신청인의 사무실에서 당사의 사진기자에게 불만신청인이 직접 전단지를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어 신문사는 50부의 전단지가 만들어졌고 그 중 35부가 가족, 친구, 지역 상점에 배포됐기 때문에 이 정보는 공공의 것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문사는 공공의 정보라고 판단했음에도 원고와의 제대로 된 접촉없이 기사화된 것을 불만신청인에게 직접 해명하고자 했으며 편집장이 기사화에 대한 사과의 편지를 불만신청인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만신청인은 이 편지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하고 사진기자가 아닌 신문사의 한 리포터가 불만신청인의 사무실에서 전단지를 가져가 미안하다고 불만신청인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3번째 조항을 어겼다고 결론지었으나 신문사에 책임을 묻지 않았고 1번째와 10번째 조항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3번째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 기사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사적인 것이 아니지만 몇몇의 것 - 특히 불만신청인의 전화번호 - 은 사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불만신청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는 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은 규약을 어긴 것이라고

영국사례 2

고지(告知)의 목적으로 제작된 전단지는 정보를 공공화 시킨 것이므로 그 안에 포함된 사생활 정보는 사적정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Coleraine에 거주하는 Ms. Merlyn Brown이 Ballymoney Chronicle 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신문사에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Ballymoney Chronicle지가 지난 2005년 2월 16일에 게재한 “베를린의 마라톤 노력”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부정확하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보도윤리강령 제1장 ‘정확성’, 제3장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정보를 얻은 것에 대해 제10장 ‘은밀한 장비 및 속임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선기금을 모으기 위해 런던 마라톤 대회에 출전키로 하고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가족과 친구에게 줄 적은 소량의 작은 전단지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 전단지의 정보가 불만신청인의 동의없이 위 신문사 1면 기사에 인용되었고 따라서 10번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동의없이 게재된, 불만신청인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불만신청인의 사진을 삽입한 기사가 독자들로 하여금 불만신청인이 인터뷰에 응했다는 듯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불만신청인은 집 전화번호를 기사에 삽입한 것이 장난전화로 이어졌고 불만신청인 가족의 건강문제에 대한 정보를 기사에 집어넣은 것도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allymoney Chronicle지는 이 기사의 취지는 이번 자선기금 마련을 장려하는 것이고 지역의 따뜻한 사연을 부각시키는 것이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불만신청인이 마라톤에 참가하여 자선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한 전단지에는 비록 한정된 수량이라도 정보를 공공화 시킨 것이라고 간주하고 이 사실은 편집장으로 하여금 불만신청인이 전화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정황이 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신문사의 행동은 기사의 긍정성을 고려할 때 비록 불만신청인의 의도와는 어긋났지만 후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그다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불만신청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면서 규칙을 위

반한 것은 무심코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 신문사에게 3번째 조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편 위원회는 첫번째 조항에 대해서는, 물론 불만신청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신문사가 전단지의 내용을 정확히, 사실만을 기재하였으므로 마라톤에 대한 정보는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신문사에서 전단지를 어떻게 획득하였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나 위원회가 이 증거물에 대해서 수사할 법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10번째 조항은 결론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A Business News 측은 SOS의 견해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전 신문에 그러한 견해들이 소개됐다고 밝혔다. 또 신문사 측은 3월 17일자 기사와 관련해 SOS에 접촉했더라도 그 기사 내용에 있어 별다른 변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기사에는 정부 조사 결과를 비판한 Scarborough Beach Association으로부터 취재한 사항만 포함됐다.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한 기사에 해당 이슈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 중의 하나다. 이 신문은 연안 개발 포럼을 지원했고 2004년 10월에는 연안 개발에 대한 4 페이지짜리 특별 기사에서 SOS 행동 그룹을 언급하고 인용하기도 했다.

신청인은 WA Business News의 편집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WA Business News가 편향된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WA Business News가 진정한 신문이 아니라 생각없는 기업인들을 위한 선전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이전에 SOS 그룹의 견해를 담은 기사가 이미 나갔다는 항변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은 그 기사를 읽지 못했으며 아마도 3월 17일자에 실린 것처럼 고층 지지자들에게만 균형을 맞춘 기사였을

호주사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기사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WA Business News가 2005년 3월 17일자에 게재한 ‘Scarborough 시(市)의 건물 고도 제한’ 관련 기사에 대해, Ben Grummels가 제기한 불만신청을 기각했다. 부동산 섹션에 실린 문제의 기사는 “Stirling 시가 의뢰한 보고서가 Scarborough 시의 고도 제한을 추천한 주(州) 정부의 조사 결과를 비판했다”고 기록했다.

기사에서 지목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신청인은 그 기사가 (신청인의 표현으로는) ‘부정적인’ 부동산 개발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재한 발언만을 실었기 때문에 일방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은 충분히 계획되지 못한 개발에 반대하는 Save Our Sunset Coast Group(SOS) 대표자들과의 인터뷰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WA Business News가 이론(異論)이 분분한 연안 계획 관련 이슈의 모든 관련 진행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도해 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호

주신문평의회는 신문이 나올 때마다 모든 이해관계자와 이익단체들의 목소리를 다 담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호주신문평의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뉴질랜드사례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했더라도 언론사의 책임이 완전히 면해진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신문평의회는 Ashburton Guardian이 지난 2005년 1월 26일 “빨간 테이프는 행진의 취소를 알린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2005년 1월 27일 “지역사회의 반대함은 살아있고 훌륭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한 노동부의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위 신문사는 행사 취소의 이유를 애쉬버튼 스코틀랜드인 동호회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이하 OSH : 직업적 안전 및 보건부)이 행사를 위해 요구한 자격에 미달되었다고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신문사가 파이프 밴드 페스티벌 취소의 책임을 잘못 된 쪽에다 돌려 명예가 훼손되었고 오보로 인해 독자가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기사가 나온 후 불만신청인은 OSH는 행사 취소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편지와 성명문을

신문사에 보냈고 책임이 있다면 지역 도로 관리 공단이나 지역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성명서는 다음호의 신문 마감시간이 지난 후에 신문사에 들어갔다. 아쉽게도 신문사에서는 이어질 사실을 준비하였고 다음호 신문에 지체없이 보도되었다. 이 사실은 전날의 기사와 같은 느낌을 유지하였다.

갓 부임한 편집장은 담당 기자가 행사 조직위원회의 설명만 취재하고 OSH에는 어떠한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편집장의 대리인은 잘못된 정보를 발표한 것에 대해 불만신청인에게 사과를 했다. 또한 파이프 밴드 도로 행진은 주말에 열렸고 월요일자 신문에는 “도로 행사에 대한 규칙이 바뀌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편

집장은 정정보도가 앞서 발생한 오보를 충분히 만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문사는 Land Transport Safety Authority(도로 교통 안전 기관)의 조건을 지역 기관에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행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불만신청인의 말대로 이 조건을 강요한 것은 Ashburton District Council(애쉬버튼 지역 의회)이었다는 것 또한 확인했다. 신문사는 기사 끝부분에 “노동부의 OSH는 도로 행사 규칙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언론평의회에서 판단해 볼 때 불만신청인의 회답은 확실히 정당한 것이었다.

편집장이 기자가 OSH의 입장을 취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후에 정정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평의회는 사실에 대한 실수가 생겨났고 그 결과로 후에 쓰여진 사실 또한 같은 실수를 범했으므로 이것은 신문사가 당연히 오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고 판단, 불만신청인의 불만신청을 인정하였다.

이 소송을 판결한 언론평의회 멤버들은 Sir John Jeffries (의장), Suzanne Carty, Aroha Puata, Ruth BAuddicom, Alan Samson, Murray Williams, Denis Mclean, Keith Less, Terry Snow, John Gardner 이다. □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저주의 굿판 게재 청와대 비서관, 동아일보에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16일 동아일보가 '청와대가 지난해 7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자사의 보도를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완 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양정철 당시 국내 언론비서관 등 3명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양정철 당시 국내 언론비서관이 작성·게재한 청와대 브리핑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

지는 원고의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보도 태도를 종전과 비교해 비판하고자함이 주된 것"이라며 "비록 '저주의 굿판' 등 다소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적인 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양정철이 기사를 작성·게재한 행위는 전반적으로 언론기관인 원고의 보도태도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 논평에 해당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위법할 정도로 모멸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지난해 7월 청와대 브리핑의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걸어치워라', '당보인지 신문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등의 기사를 통해 "피고들이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내용의 실제 취지와 다르게 오인되도록 유도하거나 보도내용의 취지를 왜곡 해석해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정당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넘어서 악의적인 비방을 해 원고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데일리 2005년 8월 16일

병풍보도 인터넷매체에 또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12일 전태준 전 의사령관이 이른바 '병풍사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신기남 의원, 김대업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씨 등은 모두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2년 5월 신 의원과 오마이뉴스에 '전씨가 한나

라당 이회창 총재 아들 정연 씨의 정밀 신체검사서류(신검부표)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제보했고,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했는데 문제의 정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씨는 당시 오마이뉴스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또 다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이

오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당시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도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의원에 대해서는 "문제의 정보를 근거로 방송 등에서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5년 8월 13일

김성호 전 의원, 월간조선 상대 손해배소

김성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9일 월간조선과 조갑제 전 대표 등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월간조선이 자신을 재미동포 여성을 성추행해 자살로 몰고 간 파렴치한 인간으로 보도해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추행 의혹은 전혀 사실

과 다르며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생활 영역에 대한 악의적 비난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월간조선이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한나라당 대변인실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무책임한 황색저널리즘 보도의 전형"이라며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명예회복이 부족한 만큼 정정보도문도 1회

게재하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의 성추문 의혹은 지난해 2월 한나라당 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제기됐으며, 월간조선은 지난해 3월호의 '낙선운동 벌이는 총선연대 그들은 과연 공정한가?'라는 기사에서 이를 인용 보도했다.

경향신문 2005년 6월 9일

“조선일보, 총선관련 시민단체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흥 부장판사)는 17일 2004 총선시 민연대(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 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선일보가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은 동’이라는 기사를 써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 “총선연대에 1천 5백만 원, 18개 시민단체에 3백만 원씩 모두 6천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는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실과 낙선·언론운동을 하는 단체들 중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다는 점을 교묘히 연결해 시민단체의 중립성·도덕성을 훼손했다”며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5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명예보호 전담검사제’ 시행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연예인 X-파일’ 사건 등 인터넷과 사실정보지의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명예보호 전담검사’를 지정

해 관련 범죄를 심층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사상 처음 실시되는 ‘명예보호 전담 검사’에는 형사 1부의 신성식(40·사시37회) 검사가 임명됐다. 신 검사는

앞으로 국내외 명예훼손 법률, 판례 등을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중요 명예훼손 사건은 직접 맡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일보 2005년 5월 19일

‘인터넷에 타인명의 저질 글 게재’...명예훼손 첫 기소

남의 명의로 인터넷에 저질스런 글을 올린 사람에게 검찰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음으로 기소했다.

친고죄인 이 법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생 김도 씨는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명의로 ‘유영철 같은 의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 ‘더러운 직업의 여자들은 토막살해 해야 한다’, ‘유영철이 무슨 죄냐. 더러운 안마사 청소해서 잘한 사람이지’라는 등 저질스런 글이 170여 개나 게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영똥한 비난을 뒤집어쓰게 된 김씨는 경찰에 범인을 처벌해달라며 진정했지만 경찰도 쉽게 범인을 찾지 못해 사건은 1년 가까이 내사(內査) 종결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올 7월 경찰이 서울대 도서관 등에서 상습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손모(32.무직)씨를 수사하다 손씨가 다

른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이름이 여럿 적힌 수첩과 남의 신분증 여러 장을 갖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손씨는 “남의 ID로 인터넷 채팅하려고 그랬다”고 둘러댔지만 경찰이 과거 인터넷 ID 도용피해 접수사례 중 김씨 사건을 발견해 추궁하자 “김씨가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맡아두곤 하는 게 알기워서 골탕을 먹이려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손씨를 일단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씨의 피해 사건은 내부 법률 검토를 위해 기소를 유보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손씨가 김씨를 비방한 게 아니라 유영철 사건 피해여성들을 비방한 것이고 그 내용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과 손씨가 직접 김씨를 비방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네티즌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인식시켜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모두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과 형사부장 4명, 사건 주임검사와 명예훼손 전담검사

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의 판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6일 손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씨가 ‘김씨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김씨가 저질스런 글을 쓴 것처럼 네티즌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번 공소제기와 별도로 이번 사건처럼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저질스런 글을 게재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입법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타인 명의를 닮네임(별명) 형태로 표시하고 저질·외설스런 글을 게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들을 엄중처벌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법원의 판례를 받아보기 위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5년 8월 16일

현직 판사들이 정리한 언론 판례

언론 보도를 둘러싼 분쟁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언론중재법이 28일부터 시행되는 등 언론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분쟁에 관한 판례를 정리한 실무 해설서가 나왔다.

서울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지낸 윤재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함석천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는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분쟁과 법」(청림출판)을 펴냈다.

이 책은 언론분쟁의 모든 법적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을 압축해 법리를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정리, 해설한 현장 실무용의 저

술서. 대법원 판결과 선험적 가치가 있는 하급심 판결들을 골라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쟁점별로 본문과 쟁점정리, 사례해설을 실는 구성방식을 택했다. 에세이 형식으로 읽기 편한 본문은 윤재운 부장판사가 기자회견의 월간지인 '기자통신'에 2년간 연재했던 칼럼을 정리한 것.

저자들은 언론분쟁에는 공공성과 진실성, 상당성 등 세 가지 키워드가 있으며 이중 공공성을 포함해 두 가지만 갖추면 면책된다고 말했다. 언론보도가 공공성이 있고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않

더라도 상당성이 있으면 오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러한 키워드는 언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생에도 사랑과 배려로(공공성) 진실하게(진실성)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상당성) 사는 것이 삶의 기본 지혜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책은 유명 여성 앵커의 사생활 보도사건에서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보호 법익, 만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연합뉴스 2005년 7월 31일

“유명 기업인 사생활 보도, 사실에 기초했다면 정당”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유명 기업인의 사생활을 진실에 기초해 보도했다면 언론사에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여성 벤처기업인 이모(39)씨가 “이혼 경력 등을 다룬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요신문사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이미 언론과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부분 중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해 더욱 유명해졌다”며 “이씨의 사생활 중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됐어도 대중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도하게 된 기초적 사실 관계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표현이 문제되더라도 이는 의견 내지 평

가에 불과하고, 그 평가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작용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일요신문이 “이씨가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능력이 안 돼 가족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등 미혼인 것처럼 밝혀 왔고 아들의 양육을 방치했다”고 보도하자 신문사를 상대로 10억 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중앙일보 2005년 8월 16일

김창룡 씨 유족, 백범 암살배우 보도에 소송

안두희(1996년 사망)씨에 의해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로 지목됐던 김창룡(1956년 사망)씨의 유족은 3일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D사 등 4개 신문사와 민족문제연구소 및 소속 교수 2명 등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매년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된 김씨의 묘 앞에서 “항일조직을 색출하고 백범 선생의 암

살 배후로도 지목된 자가 애국지사들과 함께 누워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묘 이전 촉구집회를 열었고 이들 언론사는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이 집회를 기사화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생존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암살사건이 발생한 1949년 6월 특무대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고 김씨는 제1연대 정보과 소령이었으므로 안씨의 증언은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한 연구소

와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 모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룡(1920~1956)씨는 1940년 일본 관동군 헌병대에 입대한 뒤 조선경비대 소위, 한국전쟁 당시 육군본부 정보원,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 육군 특무부대장 등을 지냈으며 1992년 안씨는 “특무대장 김창룡의 지시로 백범을 암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2005년 8월 3일

“언론사간 소송은 스스로 언론자유 침해”

한 현직 프로듀서(PD)가 우리나라 언론사간 소송현황을 ‘집대성’ 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MBC시사고양국 윤길용 PD는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 언론사간 소송의 원인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언론자유 개념을 중심으로〉에서 우리나라 언론사간 소송현황과 지금까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소송의 원인과 특징 등을 분석했다.

윤 PD는 지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언론사간 소송 건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소송 건수는 모두 67건으로 그중 2001년도가 가장 많은 19건을 차지했다. 소송 형태별로는 민사소송이 81건(87%)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소송은 12건(13%)으로 조사됐다.

매체별로는 신문사와 신문사간 소송이 20건(29.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사와 신문사간 소송은 19건(27.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방송사와 방송사간의 소송은 4건(5.9%)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윤 PD는 언론사간 소송원인을 민주화와 언론개혁 운동에 따른 사회변화로 설명했다. 하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부터 제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제거나 후속 보도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윤 PD는 지적했다.

윤 PD는 특히 언론사들이 충분한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렇다보

니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소를 취하는 일이 잦고, 그만큼 언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윤 PD는 언론사간 소송이 서로의 치부를 묵인해주는 ‘침묵의 카르텔’을 사라지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분쟁의 해결방식을 법정다툼에 의존함으로써 언론 스스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윤 PD는 “언론사간 무차별적인 소송은 상호비평을 통한 건전한 관계를 훼손하기 쉽다”며 “소송의 남발은 결국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언론사간 소송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2005년 8월 10일

“인터넷상 개인 명예훼손 포털부터 책임져야”

K씨·교사 자살사건 등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일어난 인신공격·명예훼손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모임,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포피모·대표 변희재/사무처장 이정훈)’이 6대 포털사이트에 공동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희재 포피모 대표는 “사이버상에서 일반인들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각 포털사이트에 유해성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했으나 포털사들이 이를 ‘방기’했다”며 “사회적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닷컴, 엠파스, 파란 등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겠다. 다음 주 정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미리 나눠준 기자회견문에서 “각 포털 사이트의 피해신고센터는 전화·이메일은 안 되고 오직 방문

접수나 우편접수만 된다. 우편접수용 서류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네티즌들로부터 무차별 명예훼손을 당한 뒤”라며 “실시간으로 수 만 개의 게시물 올라오는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포털사가 게시물 삭제요청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은 것은 페이지뷰를 늘려 돈을 벌기 위한 것 아니냐”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포털사이트 후에 1차적으로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무책임한 보도를 한 언론사가 있는 반면 무책임한 보도를 비판한 언론사도 있어 차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요청은 다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법정대리인을 맡을 정재욱 변호사는 “약관에 의해 게시물 삭제 권한을 부여받은 포털사가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물을 방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를 장려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며 “정보통신이용법 등 법은 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것

을 이번 소송을 통해 포털사에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선례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또 “진실한 내용이어도 대중에 알려질 의무가 없는 개인사적 내용을 그의 실명과 소속, 주소 등을 거론하며 보도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이라며 “무분별한 유포행위를 방조한 가해자가 포털에 있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이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민사상 책임을 물어 승소한 예가 있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유해성 게시물 해결방안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이미 실명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해야 하는가 아닌가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그보다 실시되고 있는 인증제를 제대로 관리·감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05년 7월 8일

7월 28일, 언론중재법 시행

지난 1월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언론중재법 시행과 함께 기존의 중재제도가 조정과 중재로 분리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조정(중재)대상매체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며, 서면 외에 구술 및 전자우편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정권고 대상이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서 방송과 인터넷신문으로까지 확대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시정권고신청도 가능해진다.

한편, 사무처는 새 법 시행에 따라 사무처 조직을 2본부 1센터 9팀으로 개편하고, 관련 규칙과 기준 등을 개정했다. 또한, 사무실과 회의실을 확충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새 언론피해구제제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 준비를 완료했다.

김용주 신임 사무총장 임명



조준희 위원장은 7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김용주 전 중재심의실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김용주 사무총장 이력〉

- 언론중재위원회 입사(1986), 기획부장, 기획실장, 중재심의실장
- 서울지방법원 근무
- 서울시립대 대학원 법학과(언론법 박사 과정)
-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졸
- 경기대 법학과 졸

회지 DB 구축완료

위원회는 최근 회지 「언론중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1981년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언론중재」에 수록된 언론법제 관련 연구논문 및 국내외 판결례 등 다양한 자료를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됐다(창간호부터 1999년 여름호까지는 주요 수록내용, 1999년 가을호부터는 모든 수록내용 검색 가능).



신입직원 채용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시행을 앞두고 상근 변호사 2명을 비롯, 모두 10명의 신입 직원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했다. 이들은 7월 1일부터 약 한 달 간 업무수습 교육을 받은 후 지난 8월 3일자로 각 부서에 인사 배치됐다.

위원회 광고제작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변화되는 언론중재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새로 광고를 제작, 7월 말부터 신문과 잡지를 시작으로 TV, 라디오, 인터넷 배너,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장소 : 프레스센터 15층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전화 : (02)397-3000, 3010, 3100)

위원회 인사 단행

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직개편에 따라 8월 3일 인사를 단행했다.

- | | | |
|--|-----------------------|--------------------|
| • 조정심의본부장 오 광 건(승진) |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본부장 임 병 국 | • 운영본부장 권 우 동 |
| - 조정1팀장 장 원 상 | - 법무상담팀장 양 재 규 | - 기획혁신팀장 심 영 진 |
| - 조정2팀장 이 주 관 | - 교육홍보팀장 박 재 선 | - 예산회계팀장 이 미 경(승진) |
| - 심의팀장 권 오 근 | - 조사연구팀장 김 일 경 | - 총무팀장 강 현 석 |
| • 전문위원 이 진 숙 | | |
| • 부산사무소장(직대) 여 윤 규 | • 대구사무소장 여 종 국 | • 광주사무소장 정 희 성(승진) |
| • 대전사무소장 임 득 상 | • 경기사무소장 황 정 근 | • 전북사무소장 조 남 태(승진) |
| | | • 경남사무소장 손 정 배 |
| • 3급 승진 : 류 석 창(조정1팀), 최 영 훈(조정2팀), 안 백 수(심의팀) | | |

- 강경근(2005). 신문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심재철 국회의원 주최 '신문법·언론중재법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발제논문, 2005. 6. 27.
- 김기태(2005, 5월). 저작권법 개정안과 언론: 방송권과 전송권을 '공중송신권'으로 통합. 신문과 방송, 제413호, 156-159.
- 김병국(2004, 4월).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와 유사 제도의 비교 고찰. 언론과학연구, 4-1, 48-69.
- 김봉철(2005). 방송광고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광고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발제논문, 2005. 5. 26-27.
- 김서중(2005, 여름).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언론중재, 통권 제95호, 19-29.
- 김순기(2005). 신문법 시행령, 제대로 되고 있나: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사례를 통해서 본 바람직한 제정방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신문법 시행령 연속토론회' 발제논문, 2005. 4. 12.
- 김영옥(2005, 7월). 새 언론법 발효: 단기적, 장기적 기획이 먼저 마련돼야 - 새 언론법 발효를 앞두고. 신문과 방송, 제415호, 8-11.
- 김영주(2005, 6월). 방송통신 융합시대 정책기구: 규제 정책·기구 통합의 필요성 - 친 산업적, 친 사회적 융합 선도 위해. 신문과 방송, 제414호, 20-24.
- 김영호(2005, 여름). 신문법 시행 과제: 신문발전위원회 위상과 역할 - 사무국 기능 축소는 안 돼, 위원으로 정치인과 현역 언론인 배제돼야.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14호, 12-21.
- 김종배(2005, 여름).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언론중재위원회 지방토론회 발제논문, 언론중재, 통권 제95호, 70-72.
- 김종천(2005). 언론중재법과 인터넷 신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신문법 제정과 인터넷 신문 법제화의 쟁점' 세미나 발제자료, 2005. 4. 13.
- 김창룡(2005, 7월). 새 언론법 발효: 위원과 위원장 선출이 안착의 최대 관건 -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 신문과 방송, 제415호, 16-19.
- 남형두(2005). 현장에서 보는 퍼블리시티권: 관련소송 실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박찬숙 국회의원 공동주최 '퍼블리시티권 도입 입법방향 세미나' 발제자료, 2005. 6. 23.
- 문재완(2005). 언론중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심재철 국회의원 주최 '신문법·언론중재법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발제논문, 2005. 6. 27.
- 박선영(2005, 7월). 새 언론법 발효: 표현의 자유 위축시켜서는 안 돼 - 언론피해구제법의 쟁점. 신문과 방송, 제415호, 20-23.
- 박태순(2005). EU 및 프랑스의 방송통신융합정책의 본질과 방향.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학회 2005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논문, 2005. 5. 13.
- 성선제(2005). 온라인 뉴스와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주최 '온라인 뉴스의 저작권 보호와 수익성 제고방안' 세미나 발제논문, 2005. 7. 11.
- 송종길(2005). 방송통신융합과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정책.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학회 2005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논문, 2005. 5. 13.
- 송주열(2005). 명예훼손 소송에서 ISP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학회 2005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논문, 2005. 5. 13.

- 양승혜(2005, 6월). 신문법 개정 필요하다: 미디어 정책기능 복원과 다양성 감독 위해. 신문과 방송, 제414호, 137-139.
- 오승중(2005). 퍼블리시티권 도입의 의미와 입법방향. 한국언론재단·박찬숙 국회의원 공동 주최 '퍼블리시티권 도입 입법방향 세미나' 발제자료, 2005. 6. 23.
- 윤경(2005, 여름).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통권 제95호, 30-41.
- 윤재윤(2005). 언론분쟁과 법. 서울: 청림출판.
- 이수형(2005, 6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엄격 적용과 국민의 알권리: 공인의 보도 사실은 공표돼야 한다. 신문과 방송, 제414호, 48-52.
- 이승선(2005, 여름). '알게 할 권리'와 '알리지 않을 권리'. 언론중재, 통권 제95호, 76-81.
- 이승선(2005, 여름). TV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법적 분쟁에 나타난 특성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9호, 233-269.
- 이용성(2005). 신문법 시행령, 제대로 되고 있나: 신문법 시행령의 핵심,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 운영.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신문법 시행령 연속토론회' 발제논문, 2005. 4. 12.
- 이재진(2005, 6월). SBS의 DJ 숨겨진 딸 보도로 본 공인의 사생활 보호: 보도의 대상이 되는지 엄격한 잣대 적용해야. 신문과 방송, 제414호, 44-47.
- 이재희(2005, 여름). 신문법 시행과제: 신문발전기금 조성 과 운용 - 재원 1년에 1천억 있어야, 기금은 신문유통원 경비 등에 지원. 열린미디어얼린사회, 통권 제14호, 22-31.
- 이정호(2005, 여름). 신문법 시행과제: 신문유통원 설립과 운영체계 - 신문시장에 공적 개입 당연, 운영방식 합의 이끌어내야. 열린미디어얼린사회, 통권 제14호, 32-43.
- 이호규(2005). 통신과 방송 융합 현상에 대한 규제 제도 비교 연구: 독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방송통신 융합기구 설치 운영 방안' 세미나 발제논문, 2005. 5. 6.
- 이희용(2005). 미디어 현안과 법·제도: 주요 언론계 현안과 쟁점. 한국언론재단 주최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보좌관 워크숍' 발제자료, 2005. 5. 26.
- 장행훈(2005, 6월). 신문법 시행령안 쟁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프랑스 경우와 비교. 신문과 방송, 제414호, 70-76.
- 정상규(2005, 여름). 사이버 명예훼손의 제 문제(하). 언론중재, 통권 제95호, 52-69.
- 조준원(2005). 언론소송과 판결읽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지성우(2005). 독일의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의 구조와 문제점.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학회 2005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논문, 2005. 5. 14.
- 황근(2005).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규제 정책 및 기구 재정립 필요성.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방송통신 융합기구 설치 운영 방안' 세미나 발제논문, 2005. 5. 6.
- 황성기(2005, 여름).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인터넷 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언론중재, 통권 제95호, 4-18.
- 황용석(2005). 인터넷 신문의 제도화, 그 후 쟁점과 과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신문법 제정과 인터넷 신문 법제화의 쟁점' 세미나 발제자료, 2005. 4. 13.

On-Line 중재 상담실



악속과 달랐던 인터뷰 보도 내용

얼마 전, 성추행 사건으로 방송국에 글을 올렸고 보도하기로 한 날 오후에 방송국 기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때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인터뷰를 해드렸습니다. 인터뷰 내내 저는 목소리, 옷, 뒷모습 등 절대 아무것도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고, 그 분들은 자신있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날 저녁, 저는 경찰서에서 진술조서서를 작성하느라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로부터 오늘 방송뉴스에서 절 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말로는 뒷모습, 습관적인 제스처, 목소리, 말투 등이 '분명히' 저라고 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니 정말 하나도 악속을 지키지 않으셨더군요. 기자분에게 좋게 말씀을 드려 해당 내용을 지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인터넷에 인터뷰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기자 분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화를 내고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한 끝에야 인터넷에서 동영상도 사라졌습니다.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로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허락 없이 귀하의 모습 등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면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방송으로서 이에 대한 구제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명품 월등 복숭아 축제에 관한 기사 정정보도

저는 2006년 순천 명품 월등 복숭아 축제 참석하였던 유○○입니다. 몇 개월간의 치밀한 준비와 홍보 덕분에 많은 홍보와 소득을 거두는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다음날, 지방지 몇 군데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등, 축제가 정치인들의 홍보장으로 변했다는 등 우리 월등면민들에게는 치명적인 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좀 더 품질 좋은 복숭아를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월등면민들의 지를 꺾어버린 기사에 대하여 분노가 치밀어 이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기고했던 기자님들께서 순천의 명품 월등 복숭아가 전국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이번 행사가 얼마나 성대하게 잘 치러졌는지도 아실 겁니다. 몇몇 분들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쓴, 축제가 엉망이라는 기사 때문에 월등면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해당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순천 명품 월등 복숭아 축제를 개최한 단체의 명의로 해야 하며, 조정신청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2006. 7. 28 이전의 보도라면 1월), 보도일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조정신청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해당 보도내용을 준비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Q 사회부 기자의 인권 침해

인터넷 신문 '0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성폭행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O'씨라는 특이한 성씨의 소유자임에도 피해자의 거주지('경기도 00시 00구')와 나이까지 꽤 자세히 소개된바,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A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산하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두어서 국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의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000는 뉴스통신으로서 그 보도내용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의팀에서는 해당 보도내용을 시정권고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 기준과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Q 언론중재법에 관한 질문

이번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기간행물 뿐 아니라 방송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세 가지 매체에 대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차이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심의팀입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대해 자체심의를 통해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년 7월 28일 시행)에 따르면 시정권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됩니다.

1. 심의대상 매체의 확대

현재 심의대상 매체는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으로 되어 있으나 새 법에 따르면 전체 언론사로 범위가 확대되어 인터넷신문, 방송까지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도 시정권고 신청가능

현재 자체심의만 하고 있으나 새 법에 따르면 피해자 및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법익 명시

현재 법상으로는 침해사항을 심의한다고만 되어 있으나 새 법에 따르면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법익을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타인의 법익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심의대상 매체에 따라 시정권고 절차나 효력 등에 있어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Q 이런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당시 취재진에게 아파트 단지배경 및 본인에 대한 인터뷰는 허락하였으나 본인의 초상이 방영되는 TV 뉴스 방송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아파트 이름은 나오지 않고 건물과 주변 배경만 방송됨). 물론 취재진은 피의자 다루듯 신분과 방영시간대만 고지해주었고요. 또한 저간의 사정은 무시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취재진의 일방적 결론으로 본인이 탈법·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본인의 초상을 위주로 방송하면서 무관한 다른 지역의 유사한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저와 단지 주민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지요? 취재기자 및 보도방송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소할 수 있는지요?

A 상대방의 주장과 취재진의 일방적 결론으로 신청인이 탈법,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려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2005. 7. 28. 이전의 보도라면 1월), 보도일로부터 6월 이내이며 방송의 경우 보도내용으로 녹취록과 방송테이프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조정 및 중재 신청과 처리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업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언론(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영

언론중재위원회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상담센터는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률문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객 방문시 상근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며,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하루 24시간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언론사, 대학, 기업,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정 권 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통해 언론의 보도를 심의하여 해당 기사의 내용이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언론사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위원회 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공정치

못한 선거보도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6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80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80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조정 및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6개, 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춘천·청주·전주·창원·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6개 곳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 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 구역

• 조정 및 중재관할권은 조정 및 중재대상이 되는 언론사(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

넷 신문 등)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조정과 중재

청구의 종류

▶ 정정보도청구

• 언론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이 언론사에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그 보도내용과 대립되는 자신의 주장을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

법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언론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무죄판결 등을 받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도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와는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추후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문제의 보도가 있

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및 처리 절차

▶ 조 정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과 언론사 사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제3자인 언론중재위원회가 객관적, 법률적 입장에서 개입,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신청은 피해자 또는 언론사가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 처리결과로는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등이 있습니다.

▶ 조정신청 방법

- 서면에 의한 신청

• 신청인은 신청서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보도문 또

는 손해배상액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문제가 된 보도 본문(방송의 경우 녹음, 녹화물과 녹취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구술에 의한 조정신청

- 신청인은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담당 직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 조정 대상 표현물의 내용, 보도일 및 인지일,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 원하는 보도문, 손해배상액, 작성일 등을 진술하여 담당직원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조서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표현물과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

- 신청인은 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

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부장은 신청인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즉시 이를 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표현물과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정 신청인, 대상 매체, 기간 등

- 조정 신청인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이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 대상 매체

-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기간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처리절차

-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취지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재부는 조정기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합의가 되도록 적극 조정합니다.

-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조정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신

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조정처리결과

• 합의 : 피해자와 언론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가 나가기 되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합의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결정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결정

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신청은 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언론사를 피고로 합니다.

• 조정불성립 결정 :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 절차

▶ 중 재

• 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구적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재신청 방법

- 중재합의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구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 중재신청인은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신청서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보도문 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언론중재위원회 소정 양식).

• 문제가 된 보도본문(방송의 경우 녹음, 녹화물과 녹취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인, 대상 매체, 기간 등

- 중재신청인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이 중재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재대상매체

•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방송·정기간행물(신문, 잡지)·뉴스통신·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재신청기간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재신청 처리절차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중재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신청인은 중재신청시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중재합의(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예 : 합의서)을 첨부해야 합니다.

•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서를 첨부한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로부터 개시됩니다.

• 중재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중재대리허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을 결정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절차는 종국결정 또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하여 중재부가 종료결정을 한 경우 종료됩니다.

•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의 비협조로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중재부가 판단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주장 및 입증을 태만히 하여 중재절

차의 계속적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쌍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부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중재처리 결과

•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는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언론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합의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 정 권 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 심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

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합니다.

- 개인적 법익으로는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지, 형사사건 피의자 및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신고자 등에 대한 신원공개 금지, 성폭력피해자 보호 등이 있습니다.
- 사회적 법익으로는 범죄사건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설명, 성과 관련된 선정적 묘사, 자살

보도에 대한 상세묘사, 마약에 대한 상세보도 금지 등이 있습니다.

- 국가적 법익으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 국가기밀누설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시정권고 신청 가능

▶ 자체심의 이외에 피해자뿐

만 아니라 해당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도 언론 보도가 시정권고심의기준에서 정한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건은 시정권고소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며 강제력은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 행 : 2005. 7. 28

제1조 (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위원이 사임하거나 당연 퇴직할 때에는 사임 또는 당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중재위원회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보상을 받는다.

제5조 (제척·기피신청의 방법 등)

- ① 법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당해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

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부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조정·중재절차 등의 중지)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정처리기

간 및 직권조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예산 등의 협의) 중재위원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보도물의 공개) ①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의 청구를 위하여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언론사는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는 복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당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용여부의 통지방법) 언

론사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전자우편 또는 국내 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문의 내용)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한 협의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크기 외에 정정보도의 회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발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접수일은 중재위원회의 컴퓨터 등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③중재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을 말한다.

제14조 (중재의 개시)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부터 개시된다.

제15조 (중재신청의 취하) ①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②중재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

론보도의 프로그램명·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정기간행물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정권고의 이유

제17조 (시정권고소위원회)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시정권고의 신청) ①법 제3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구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시정권고의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시정권고요구대상인 언론사명, 보도일자, 보도내용 및 시정권고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③시정권고의 신청을 구술로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서류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의 신청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는 신청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①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재심 청구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재심청구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시정권고의 세부적인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과태료 부과)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

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권고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및 지역중재부

■ **사무처 및 서울중재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대표 02)397-3114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담센터 02)397-3089

- | | |
|--|---|
| <p>■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p> <p>■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p> <p>■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p> <p>■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p> <p>■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p> | <p>■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p> <p>■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p> <p>■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p> <p>■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웅호동 73-39 (동산빌딩 302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p> <p>■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p> |
|--|---|